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The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차주영 Tchah, Chu Young

이상민 Lee, Sang Min

( a u r i

AURI-정책-2012-3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

The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지은이: 차주영, 이상민

펴낸곳: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등록: 제385-2008-00005호

인쇄: 2012년 9월 8일, 발행: 2012년 9월 8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시민대로 230 아크로타워 B동 301호

전화: 031-478-9600, 팩스: 031-478-9609

<http://www.auri.re.kr>

가격: 8,000원, ISBN: 978-89-97468-20-1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연구책임          차주영 부연구위원

! 연구진              이상민 부연구위원

! 연구보조원        정민기 연구인턴  
                          현대환 연구인턴  
                          김지애 연구보조원

---

! 연구심의위원     안재락 경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임승빈 서울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박희민 국토해양부 건축문화경관팀 사무관  
                          김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유광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위원

! 연구자문위원     김명수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김용준 서산시청 수산과 주무관  
                          박노섭 제주도청 도시디자인단 단장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윤진옥 한국문화경관연구소 소장  
                          이상형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사 과장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  
                          최형석 수원대학교 도시 및 부동산개발학과 교수  
                          함종범 춘천시청 농정과 계장



## 연구요약

최근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농어촌 경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각 부처별로 농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각종 정책과 사업추진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에서는 「국토경관종합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과 더불어 어촌·어항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한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였다. 농림부에서는 2006년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에 이어 2011년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 경관』 추진대책」을 제시하는 등 농어촌 경관관리 정책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의 경관관리는 농어민 보다는 관광객을 위주로 한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계획수립-사업추진-유지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아름다운 국토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면적상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에 대해 국토관리 차원에서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사업단위의 농어촌 경관관리 제도의 한계를 벗어나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농어촌의 공간적 범위와 연구의 내용적 범위를 규정하고,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경관 특성을 재정립하고, 국내 농어촌

지역의 경관 현황을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농어촌의 경관 개념을 검토하고, 농어촌 경관 유형과 경관 요소를 제시하고, 농어촌지역의 토지이용현황과 경관 관련 사업추진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장답사를 통해서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나는 농어촌 경관의 문제를 검토하여 농어촌 경관의 전반적인 문제점, 농어촌 관련 법제도 및 계획의 문제점, 농어촌 관련 사업의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어촌 경관관리 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동향,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 그리고 중앙부처 및 공기업,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련 행정체계를 조사하였다. 제4장은 제2장과 제3장을 토대로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 전략을 제시하였다.

농어촌지역은 지형, 주요 생산자원 등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 경관이 형성되며 개발 수요 등 주변지역의 영향에 따라 경관 문제점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농어촌 경관의 보전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의 고유한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농어촌 경관상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농어촌 경관과 관련된 문제점으로는 경관 향유의 주체에 대한 고려 미흡, 경관관리 대상으로서 농어촌지역을 구분하는 경계의 모호함, 농어촌지역의 경관비전, 공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경관계획의 부재, 경관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규제, 유도, 지원수단 간 연계성 부족, 경관관리 실행체계로서 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역할 분담 미흡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으로 첫째, 장기적인 비전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둘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수단의 적용, 셋째, 규제·유도·지원 등 다양한 경관관리수단 간의 연계 강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관련주체의 역할 규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실행전략과 개선방안으로는 다음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선(先)계획 후(後)실행’을 위한 종합적인 경관계획을 수립을 위해서 「경관법」,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등에 의한 경관계획의 수립지침을 보완하고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둘째,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관관리 수단의 적용을 위해서 관련법에서 계획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국계법」, 「경관법」, 「건축법」 등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개발행위허가제, 건축허가 및 심의 등 각종 심의제도 등 규제·유도·지원적 수단을 농어촌 지역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을 보완하여야 한다. 셋째, 규제·유도·지원 등 경관관리수단 간 연계강화를 위해서 농촌지구(가칭)를 제도를 신설하고, 경관협정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사업비 상환제도 도입, 사업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관련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Best practice’ 보급 및 경관 관련 교육을 실시, 담당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농어촌의 경관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토경관 향상 차원에서 추진해야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무엇보다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간의 연계가 부족한 현행의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실천과제들을 제시하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농어촌의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농어촌 경관, 농어촌 경관관리,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 차 례

<b>제1장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4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7
4. 연구의 기대효과 .....	17
<b>제2장 농어촌 경관 특성 및 경관 현황</b> .....	<b>18</b>
1. 농어촌 경관의 개념과 경관 요소 .....	18
2. 농어촌 지역의 일반현황 .....	31
3.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	42
4. 소결 .....	48
<b>제3장 농어촌 경관관리 실태</b> .....	<b>50</b>
1.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동향 .....	50
2.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	56
3.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 .....	71
4.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체계 .....	101
5. 소결 .....	106

<b>제4장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b> .....	109
1. 현행 농어촌 경관 특성과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	109
2.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	114
참고문헌 .....	123
Summary .....	129
부록 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 .....	135
부록 2. 농어촌 경관 관련 사업 현황조사 .....	174
부록 3.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조직 .....	200

## 표차례

[표 1-1] 기초현황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9
[표 1-2] 정책·제도제안 관련 주요 선행연구	13
[표 1-3] 사례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16
[표 1-4]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주요 연구내용	17
[표 2-1]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의 범위	19
[표 2-2]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개념	20
[표 2-3]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어촌경관의 개념	21
[표 2-4]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농어촌경관의 개념	22
[표 2-5]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농촌경관 요소	24
[표 2-6]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어촌경관 요소	26
[표 2-7]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농어촌 경관 요소	27
[표 2-8] 농어촌 경관 유형 구분 및 경관 요소	30
[표 2-9] 2010년도 농어촌 인구 현황	31
[표 2-10] 2010년도 농어촌 농·어가 현황	31
[표 2-11]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 분포	34
[표 2-12]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 분포	34
[표 2-13] 농업진흥지역현황 및 도별 경지면적	38
[표 2-14] 농지전용현황	38
[표 2-15] 어항 지정현황	39
[표 3-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 재·개정에 대한 주요내용	58
[표 3-2] 농어촌 관련 법규	60
[표 3-3]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유형별 경관관리 대상과 수단	64
[표 3-4]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규모 규제	68
[표 3-5]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68
[표 3-6]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70
[표 3-7]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그리고 농어촌 경관계획의 비교	74

[표 3-8] 제주도의 기본경관단위 설정기준	77
[표 3-9]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81
[표 3-10] 경관형성계획 수립 사업지역별 계획개요	82
[표 3-11] 경관형성계획 목차 및 내용	85
[표 3-12] 농림수산부분 예산	87
[표 3-13] 농림수산식품 사업 및 경비	87
[표 3-14] 농림수산식품 예산 및 기금	88
[표 3-1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89
[표 3-16] 공사 참여현황	90
[표 3-17]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91
[표 3-18] 사업 추진 현황	92
[표 3-1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92
[표 3-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도별 경관계획 시행 현황	94
[표 3-21] 참여현황	95
[표 3-22] 사업현황	95
[표 3-2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95
[표 3-24] 어촌개발사업현황	96
[표 3-25] 어촌개발사업 총 사업권역	96
[표 3-26] 어촌개발사업 년차별 투자실적	96
[표 3-27] 포괄보조금 세부계획	98
[표 3-28] 고창경관농업지특구예산	100
[표 3-29] 지자체별 관련부서 및 업무내용	104
[표 4-1] 실천과제별 추진방안	121

## 그림차례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5
[그림 1-2] 연구수행도	7
[그림 2-1] 농어촌 경관의 유형 및 요소	30
[그림 2-2] 국토의 읍·면·동 구분	33
[그림 2-3]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35
[그림 2-4]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종합도	36
[그림 2-5] 춘천 인근지역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37
[그림 2-6]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 분포 현황	40
[그림 2-7]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현황 종합도	41
[그림 2-8]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촌	43
[그림 2-9] 농어촌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생산경관	43
[그림 2-10]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농어촌 경관	44
[그림 2-11]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인근의 농어촌 경관	44
[그림 2-12]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성된 농어촌 경관	45
[그림 2-13] 쇠퇴가 심화된 저개발지역 농어촌 경관	46
[그림 2-14]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거대건축물들	47
[그림 2-15] 방치된 농어업 관련 시설물들	48
[그림 3-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의 재·개정 과정	58
[그림 3-2] 공간관리와 농어촌 지원 중심으로 이원화된 농어촌 관련법	61
[그림 3-3] 규제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는 법규	62
[그림 3-4] 사업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법규	62
[그림 3-5] 관련법규별 농어촌 경관관리 대상으로서 경관 요소	63
[그림 3-6] 법·제도에 따른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	67
[그림 3-7] 기본경관단위에 따른 관리지역 구분	77
[그림 3-8] 제주도의 특정경관단위 구역	79
[그림 3-9] 경관형성 계획의 일반적인 구성과 프로세스	83
[그림 3-10] 권역별 건축계획	84

[그림 3-11] 지침 및 가이드라인.....	86
[그림 3-12] 권역별 색체계획.....	86
[그림 4-1] 지형, 주요 생산자원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촌 경관.....	109
[그림 4-2]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의 농어촌 경관.....	110
[그림 4-3]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기본방향.....	114
[그림 4-4] 농어촌 경관 관련 관리수단 구분(안).....	118
[그림 4-5]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안).....	119
[그림 4-6]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안).....	121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4. 연구의 기대효과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의 배경

- 농어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및 경관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득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깨끗하고 풍요로운 농어촌 경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sup>1)</sup>
  - 특히, 농어촌 전원생활을 통한 다양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으며, 웰빙 추구 등의 변화로 농어촌 체험마을 방문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sup>2)</sup>

---

1) 농업진흥청의 '2010 농촌생활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 주민들은 '개밭이 늪더라도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 70%가 찬성함

2) 귀농·귀촌 현황은 2001년 880호에서 2005년 1240호, 2010년 4067호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712만명으로 2010년에서 2018년까지 약 311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농어촌 체험마을의 방문객과 매출액은 2007년 약 4백만명, 784억원에서 2010년 약 770만명, 1121억원으로 증가함

- 농어촌 경관관리 정책 대두 및 농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시도 증가
  - 농림부에서는 2006년 ‘농어촌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농촌 경관의 가치평가 및 관리체계 마련, 신경관적인 농촌개발 기준정립,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 및 농촌경관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세부추진과제를 제시함
  - 2011년에는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5감 경관 추진대책’을 발표하여 주요 추진대책으로 계획중심의 경관 시범사업 추진,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 농어업 유산제도 도입, 농어촌 문화환경·경관관리사업 추진, 농어촌 주택 경관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을 제시함
  - 이밖에도 각 부처별로 농어촌 경관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농림부에서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 등 농촌마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자부에서는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지원사업, ‘아름마을가꾸기사업’ 등의 사업을 진행함
  - 또한 농촌경관평가지표 개발 및 농촌경관맵 작성에 관한 연구, 농촌 경관자원의 가치 평가 연구, 농촌경관계획 수립 업무매뉴얼 개발 등을 통해 농어촌 경관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국토관리 차원에서 농어촌 경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체계 미비
  - 농어촌의 경관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및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경관개선 시도는 시범사업과 정비사업 등 사업단위의 경관계획 수립과 시설중심의 사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대상지에 대한 종합적인 경관계획과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국토의 경관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경관 관련 제도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개별 건축물들에 대한 관리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법」도 규모가 작은 건축행위가 일어나는 농어촌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이처럼 국토경관 관리 측면에서 농어촌의 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사업추진-관리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가 확보되어 있지 못한 상황임

□ 국토경관 관리 측면에서 농어촌 경관에 대한 경관관리체계 마련 필요

- 우리나라 용도지역현황(2009.8)은 도시지역이 16.3%, 관리지역이 24.1%, 농림지역이 47.8%, 자연환경보전지역이 11.8%로, 국토경관의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고려할 때 전 국토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경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사업단위의 농어촌 경관관리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국토경관관리 제도를 활용한 종합적인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농어촌의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로, 현행의 농어촌 경관관리 제도를 조사하여 경관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농어촌 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현행 농어촌의 경관관리 관련 제도를 면밀히 조사·분석하

여 국토경관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① 공간적 범위

- 농어촌 지역은 농업과 어업을 바탕으로 한 농어촌 주민의 생활상이 반영된 취락지와 농경지, 항구 등을 포함한 일단의 지역임
- 농어촌 지역의 공간적인 범위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등 농어촌 관련법과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기반으로 설정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 정비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와 군의 지역 중에 읍·면의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농림수산식품장관이 농촌(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을 포함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상 1차적으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차적으로는 도시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sup>3)</sup> 중 농경지나 항구를 포함한 취락지를 포함함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함

태봉마을(남양주시)*	미리내 마을(안성시)*	아비만전자공정(화성시)**	하회마을(안동시)***
- 자연녹지지역(자연취락지구) - 태봉마을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지구 - 약20가구(약60인)	- 미리내 전통태마마을 건축 디자인개선 시범사업 지구 - 계획관리지역 - 건축물 45동 이상 - 40가구(95인)	- 건축용도: 공장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 규모: 4,481㎡	- 자연환경보전지역 - 일반가옥115호 - 문화재지정가옥: 12호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연구의 범위 →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경기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내부자료,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 내부자료, \*\*\*안동하회마을 홈페이지

## ② 내용적 범위

### □ 연구의 착안점과 내용적 범위

- 본 연구는 한국 농어촌의 상황에 맞는 지속가능한 경관관리체계를 제시하기 위해 ‘한국 농어촌 경관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제까지 시행되어온 농어촌 경관관련 제도의 취지와 한계는 무엇인가?’, 그리고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은 무엇인가?’에 착안하여 진행하였음
- 위와 같은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경관관리체계의 기본틀을 계획과 공간관리수단, 주체로 설정하고, 경관관리 및 농어촌 관련 법제도와 공공을 중심으로 한 운영관리 조직에 대해 조사·분석함
  - 공간 및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 : 「국계법」, 「경관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 농어촌 관련 법제도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등
  - 행정체계 :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및 농어촌 관련 담당부서, 경관 및 농어촌 관련 공공기관 등

□ 주요 연구내용

-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한 농어촌 경관의 개념 및 주요 경관 요소 검토
- 현장 답사 등을 통한 농어촌 경관 현황과 특성 도출
- 관련 법·제도, 계획, 사업, 행정체계를 중심으로 농어촌 경관관리 현황 분석
-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 문헌검토

- 농어촌 경관의 개념 및 경관특성을 결정하는 요소 등 검토
- 농어촌 경관관리의 공간적 범위 및 내용적 범위 검토
- 경관관리와 관계되는 법규, 계획, 사업, 행정체계 현황 조사

□ 현장조사

-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추진 현황 검토를 위해 현장답사, 지방자치단체 관련 담당자 및 지역 전문가 인터뷰
- 농어촌 관련 행정체계 조사를 위한 담당자 인터뷰

□ 외부 전문가 활용

- 현행 농어촌 경관관련 법·제도 추진현황 및 계획내용 검토를 위한 전문가 면담
- 공무원, 실무전문가, 학계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향상을 위한 방향 및 전략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 3) 연구수행도



[그림 1-2] 연구수행도

## 3.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 1) 선행연구 현황

- 농어촌 경관관리와 관련된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농어촌 경관의 개념 및 경관자원요소에 대한 기초현황분석에 대한 연구, 정책·제도의 개선방안에 관련한 연구, 사례분석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농어촌 경관관리에 대한 기초현황분석에 관한 연구는 농어촌 경관 관리의 기본개념과 농어촌 경관의 구성 요소의 도출 및 경관 유형을 분류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함
  - 농어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연구는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 및 관련법체계를 분석하는 연구들과 농어촌 경관관리 사업을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들로,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발전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함

- 농어촌 경관관리 관련 사례에 관한 연구는 농촌과 어촌의 경관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된 곳들을 평가하여 각 정책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함

### ① 기초현황분석 관련 연구

- 농어촌 경관관리의 기초현황분석은 농어촌 경관의 개념과 경관의 구성요소도출에 관한 연구들로 대부분이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경관의 구성요소 및 평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됨
  - 이순혁(1977)은 농촌경관의 시각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현장조사를 통한 자연적·인공적·복합적 요소로 분류하여 문제경관을 분석하고, 기능성, 기술성, 감각성, 전통성의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함
  - 김성근 등(1999)은 농촌 소하천 경관의 어의구별척을 측정하여 농촌 소하천 경관의 유형을 구분하고 이미지 및 시각적 선호 특성을 분석하여 시각적 선호도 결정인자를 도출함으로써 농어촌 경관 조성에 시사점을 제공함
  - 이동근 등(2005)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촌경관을 분류를 위해 경관자원을 공간별·자원별 유형화 및 목록화를 하였으며 농촌경관이 갖는 가치를 자원별로 조사하여 농촌경관과 유형별 경관자원의 가치를 평가함
  - 윤진욱 등(2005)은 농촌경관의 현황분석을 통해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의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 요소별 관리방안을 도출하고 및 현행제도를 검토하여 정책적 지원 방안을 통하여 농촌경관 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김상범 등(2006)은 농촌경관에 대한 개념과 범위를 정립하고 공간별 경관구성요소를 파악을 위하여 농촌공간별 경관 요소목록을 작성하고, 농촌공간별로 유형화하여 경관구성요소를 도출하여 농촌계획에서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함
- 농림부(2007)는 GIS를 이용하여 지역자원의 맵핑과 농촌경관모델을 작성하고 계획기법과 계획지침 등을 제시함
- 노영란 등(2007) 해안지역의 경관관리계획에 있어 바다에서 육지를 바라보는 조망점을 선정, 조망점 별 물리적 구성 현황 파악, 물리적 요소별 만족도 평가 등을 통하여 각 구성요소별 만족도에 의한 명확한 기준을 규명하여 해안지역의 경관관리의 개선방향에 있어 평가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를 제시함
- 정호현 등(2010)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농촌어메니티자원 조사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2008 농촌어메니티 100선 경관사진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농촌경관자원 항목 분류에 대한 시사점 제시와 함께 경관조망점 자원조사 항목표를 제안함

[표 1-1] 기초현황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이동근외, 2005)	농촌경관을 총체적으로 분류하고, 공간별·자원별 유형을 분류하여 농촌경관이 갖는 가치를 자원별로 파악하여 농촌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문헌고찰 전문가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조사	-농촌경관자원 유형화 및 목록화 -유형별로 경관자원을 평가 -농촌자원의 다원적 가치 도출 -농촌경관자원의 총체적인 접근 -물적·인공요소, 물적·자연요소, 비물적·자연·인공요소 분석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윤진욱외, 2005)	농촌경관의 현황 분석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농촌경관관리를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을 마련	문헌고찰 현장조사	-농촌경관 관련 법 현황 분석 -농촌경관 관리를 목표로 하는 경관평가 방법론 검토 -농촌경관현황 및 관리의식조사 -마을단위 경관 요소별 보전 관리 가이드라인 검토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평가 및 관리체계의 검토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주요경관요소에 관한 연구 (김상범외, 2006)	농촌경관의 관리를 위해 공간별 경관 요소를 파악하여 농촌경관계획의 기초자료 제공	문헌고찰 현장조사 주민인터뷰 설문조사	-농촌경관을 분류하고, 공간별, 자원별 유형을 파악 -농촌경관에 대한 개념 정립 -공간별 경관구성요소 분석

## ② 정책·제도제안 관련 연구

- 농어촌 경관관리 관련 정책·제도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는 국토계획 체계에 따른 관리체계를 분석하는 연구와 계획기준에 따른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로 구분되며, 관련 체계, 관련법,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연구들이 진행됨
- 국토계획체계에 따른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송미령(2001)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계획체계를 농촌지역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농촌의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여 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농촌계획의 위상 정립과 체계화 방안을 제시함
  - 김나영(2002)은 해안경관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해안경관관리를 도시계획, 연안관리, 환경보전측면에서 관련법제도를 비교분석하고 외국 연안도시의 해안경관관리제도 및 내용을 분석하여 부산의 해안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함
  - 운영태 등(2002)은 경관관리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연안관리의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행의 연안관련개별법 및 연안관리법을 대상으로 연안통합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연안경관 형성에 따른 제도적 제안을 하였으며 연안경관관리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및 연안경관관리지침을 제시함
  - 변병설(2004) 농촌경관 형성을 위하여 법·제도·계획 및 운영프로그램을 분석하여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에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함
  - 성주인(2005)은 근본적으로 농촌경관관리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수행하였고,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에 대한 진단을 통해 조례, 법체계 등의 개정과 보완을 주장하였으며, 주민 참여 활성화와 경관협약제도의 도입을 제시함
  - 엄대호 등(2006)은 농촌만이 갖는 고유한 지역자원으로써 올바른



가치의 평가의 필요성과 자원의 유지·관리차원에서 농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함

- 박용하 등(2007)은 설문조사를 통해 농촌경관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농촌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체계의 정비를 통하여 농촌경관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를 높이고, 나아가 지역별 농촌경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농촌경관관리에 관한 연구를 수행함
- 주신하(2008)는 농촌경관과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을 중심으로 농촌경관자원의 조사, 농촌경관계획의 작성,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운영 등의 구분과 농촌경관관련 DB의 구축, 경관법 실행수단의 활용 등을 농촌경관의 보존·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 이병기(2009)는 농촌개발정책들이 각 정책별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농촌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관계로 정책 간 중복현상이나 종합적이고 균형된 개발 안목을 갖는데 한계가 드러나고 있어 농촌계획제도의 정립 필요성과 개선과제를 논의함
- 신지훈(2010)은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중심으로 경관법상 경관사업이 농촌경관계획의 실천적 방안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농촌경관관련 연구 및 정책의 동향을 살피고, 경관법 상에 명시된 경관사업의 정의와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경관사업의 운용방법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여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에 적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 계획기준에 따른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윤상호 등(2003)은 해안경관의 경관계획수립에 있어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해안경관의 개념 및 공간적 범위를 살펴보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해안지역의 경관관리 방안으로 중앙정부 및 시·도차원의 관리방안, 지방정부(시·군·구) 차원의 관리방안, 지역주민·NGO 차원의 관리방안, 개발주체·경관 전문가 차원의 관리방안을 제시함

- 김주석(2007)은 농촌경관의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외 경관관련계획 및 사업의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농촌경관 관리 및 경관계획의 틀을 제안하여 농촌경관 관련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함
- 김성귀 등(2007)은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 조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안공간, 어촌공간, 항만 공간 분야의 미래여건 변화와 기존사례 검토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비전과 품격 생활환경 조성, 경관과 건축문화의질제고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하여 사업의 정책방안을 제시함
- 주신하 등(2008)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의 내용을 보완하고 농촌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농촌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 마련을 위해 농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계획이 가능하도록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기준을 제안함
- 김상범 등(2009)은 「농어촌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예산군에 농촌경관계획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통해 농어촌 경관계획을 위한 방안들을 제안함
- 김진환 등(2011)은 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어촌경관의 실태분석, 경관관령 제도 및 사업을 분석하여 어촌지역 경관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이에 적합한 경관형성모델을 위해 추진전략과 경관사업을 제시함
- 서수정 등(2011)은 해안마을의 경관자원 특성과 잠재력을 발굴하여 해안마을의 장소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안마을 기동 문헌 고찰 및 관련법을 분석하고 국내 해안마을 경관자원조사 및 경관관리 문제점 도출을 하여 현황조사하고 국외 해안마을 경관형성 사례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안마을의 경관의 추진전략

과 실천과제 등을 제시하고 시범사업 기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해안마을 경관형성 방안을 제시함

- 강영은(2012)은 근대 이후 농촌경관의 변화양상을 농촌개발사업에 비추어 고찰하여 시기별 농촌개발사업을 분석하여 농촌경관 변화 경향을 밝히고 농촌경관계획 및 관리에 시사점을 제시함

[표 1-2] 정책·제도제한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 (송미령외, 2001)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새로운 국토계획체계를 농촌지역에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문헌 및 법제도검토 현장조사 설문조사	-국토계획체계변화의 개요 -농촌 토지이용의 현황과 과제 -국토계획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농촌계획의 위상 정립과 체계화 방안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방안 (성주인, 2005)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제시	문헌연구 법제도검토 정책집행 검토 설문조사	-농촌경관의 특징 및 경관관리의 필요성 -농촌경관관리법제도 현황과 문제점 -농촌경관관리 실태 및 문제점 -농촌경관관리 정책의 방향과 과제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 및 자원방안 연구 (김주석외, 2007)	농촌경관의 개선을 위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한 방안 모색	문헌연구 국내외 사례분석	-농촌경관관리 및 지원을 위한 기준검토 -농촌 경관계획 관련 사례분석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 제안 -경관보전직불제 성과 및 개선방안 도출 -농촌경관 관리 및 계획수립 관련 참여자의 역할 제안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연구 (주신하외, 2008)	농촌경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관계획 수립하고자 할 때 계획기준 제시	경관관련 제도및정책 사례검토 문헌연구	-농촌경관계획의 체계를 제안 -각 단계별로 포함하여야 하는 계획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 (이병기, 2009)	농촌계획제도의 정립 필요성 진단하고, 현행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농촌계획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농촌계획제도의 발전과제와 개선방안 모색	선행연구 현행제도 분석	-농촌지역 활력증진을 도모하는 조성 기능중심의 농촌계획체계구축이 농촌 계획제도정립의 기본방향임을 제시 및 농촌토지이용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를 제시 -'삶의질법'을 농촌계획의 기본법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담는 계획법으로 재편과 '농촌계획법'으로 개정하는 방향 제안 -토지이용계획 권능을 농촌계획의 틀 속에서 포섭하도록 하고, 각종 사업 추진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필요한 규범들은 농어촌정비법에 담도록 제안

농촌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의 도입 방안 연구 (신지훈, 2010)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적 내용을 살펴보고, 경관법상 경관사업이 농촌경관계획의 실천적 방안 모색	문헌검토 관련법 및 정책 검토 전문가설문	-경관법상 경관사업의 정의와 대상, 운용상 문제점 판단 -농촌경관계획수립기준 검토 -경관사업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로 경관사업의 인지, 종류, 시범사업의 유형, 경관사업의 활성화 방안, 행정체계, 추진방식, 추진협의체를 분석함
---	---	------------------------------	--

### ③ 사례분석 관련 연구

- 농어촌 경관 관련 사례에 관한 연구는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된 곳들을 중심으로 각 정책 및 사업의 효과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경관직불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과 어촌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을 분석하는 연구들이 진행됨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관련 연구
  - 이정원 등(2008)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경관자원이 활용된 사업권역 조사를 통해 사업시행 후의 경관자원 활용 및 경관변화를 분석하고, 사업권역 주민의 경관자원 활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여 지역개발사업 시행 시 경관자원의 활용에 의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 김충식 등(2009)은 경관계획에 필요한 법체계와 개발사업, 수립절차 등을 검토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의 수립 현황과 내용을 분석하여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함
  - 김성학 등(2009)은 지역계획의 대상으로 어메니티자원의 경관적 접근 방법을 모색하고 농촌마을의 경관적 정체성을 도출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내에서 수행되는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 경관직불제도 관련 연구
  - 엄대호 등(2004)은 경관보전직불제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고자 국내외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지급대상, 지급수준, 시행방법 등을

검토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범사업 시행방안을 제시함

- 송미령 등(2005)은 우리나라 지자체등에서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도입, 시행하고 있는 몇 가지 정책 사례들이나 중앙정부의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등을 살펴보고, 유럽, 일본의 농촌경관 정책 사례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함
  - 채해성 등(2006)은 경관보전직불제가 실행되고 있는 7개 지역의 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관개선 효과가 큰 작물의 품목확대, 직불금 지급시기의 조정, 자연재해에 대한 보상책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장효선 등(2007)은 경관보전직불제를 시행한 3개 마을사례를 통하여 시행상의 문제점 분석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함
  - 성주인 등(2007)은 1년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경관 형성 효과나 지역 활성화 기여도 등의 성과를 평가하고, 경관보전직불제의 확대 시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성주인(2009)은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동향 및 실태를 살펴보고,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제약점을 논의하고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안함
  - 김미영 등(2009)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 담당공무원, 마을 현장조사, 경관작물 생산비 조사 등의 방법으로 경관보전직불제의 성과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경관보전직불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농어촌마을 경관관리지원체계를 마련함
  - 강영은 등(2010)은 2005년 이후 경관보전직접직불제 도입으로 확산되게 된 경관농업지의 경관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물리적 경관지표를 도출하고 각 경관지표의 중요도, 선호도 분석을 수행함
- 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연구
- 김성귀 등(2007)은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고흥군 지죽권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일반현황,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개발계획, 투자계획, 개발 및 투자효과 전망을 분석하여 어업

소득이 높은 본 권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권역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이승우 등(2008)은 어촌개발사업 중 어촌관광개발사업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어촌관광개발 사업이 시행중인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의 추진 및 운영실태를 조사·분석 하여 사업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피드백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현황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구축 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함
- 이승우 등(2009)은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이 시행중인 19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추진현황과 운영실태 등을 분석하여 사업평가와 관련된 지표설정의 적정성과 새로운 지표를 제시함
- 이진형 등(2009)은 전라남도의 어촌체험마을을 중심으로 어촌체험마을의 현황을 분석하고 어촌체험마을의 문제점과 성공조건을 제시하였으며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어촌체험마을의 성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함

[표 1-3] 사례분석 관련 주요 선행연구

연구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농촌경관의 보전과 경관관리를 위한 농촌경관계획 수립 및 적용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김상범 외, 2009)	「농어촌 경관계획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농촌경관계획을 적용하여 향후 발전전인 방향 제시	문헌조사 사례적용	-예산군 농촌지역의 경관자원현황과 내용분석 -경관자원도, 경관기본구상, 경관세부계획 등 수립 -농촌지역에적용시나타나는문제점에대한 개선방안 도출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충식 외, 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이 수립된 권역을 대상으로 수립내용과 위상을 진단	법체계검토 관련사업 검토 빈도분석	-농촌경관계획을 규정하는 '경관법'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체계를 절충 -현실적인 방안으로 '기본경관법'과 '특정경관계획' 수립방안을 모색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성주인 외, 2009)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을 포함한 지자체의 농어촌 경관관리사업 추진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문헌연구 설문조사 현장조사	-농어촌의 경관관리정책 현황 분석 -경관보전직불제의 동향 및 실태,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문제점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발전방안 제시

## 2)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별성

- 기존연구들에서 제시한 농어촌 경관의 개념을 토대로 농어촌지역 특성에 따른 경관 유형과 경관 요소를 도출하고, 현장답사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경관현황을 조사함
- 현행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계획, 사업 및 행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농어촌 경관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사례를 조사·분석함으로써 농어촌 경관관리체계의 한계를 고찰함
- 이를 통해 국토관리차원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함

[표 1-4]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 주요 연구내용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배경연구	국토관리차원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경관관리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	- 문헌조사 - 농어촌 경관 특성 파악을 위한 현장조사 - 법제도검토 및 공무원인터뷰 - 전문가 자문회의	- 농어촌 경관관리의 개념 및 주요 경관 요소 검토 - 농어촌 경관특성 도출 -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분석 - 농어촌 경관관리체계의 기본방향 및 실행방안 제시

## 4. 연구의 기대효과

- 농어촌의 경관관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장기적으로 국토경관 향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농어촌 경관관리 개선의 기본방향과 실행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현행 농어촌 경관정책의 실효성 제고
- 「국계법」, 「경관법」 등 국토관리체계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 농어촌 관련 실행법 간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농어촌의 경관관리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수준 높은 농어촌 경관을 형성

## 제2장 농어촌 경관 특성 및 경관 현황

1. 농어촌 경관의 개념과 경관 요소
2. 농어촌 지역의 일반현황
3.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4. 소결

### 1. 농어촌 경관의 개념과 경관 요소

#### 1) 농어촌 경관의 개념

##### ① 농어촌의 개념과 공간적 범위

###### □ 사전적 정의

- 국립국어원<sup>4)</sup>에서는 농촌을 ‘주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마을이나 지역’으로 정의하였으며 어촌은 ‘어민(漁民)들이 모여 사는 바닷가 마을’이라고 정의함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sup>5)</sup>에서는 농촌을 ‘농업을 주요생업으로 하는 농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 어촌은 ‘바다·강·호수에서 어류·패류·조류(藻類) 등 수산 동식물의 채취·포획·양식·가공·제조 행위를 포함하는 수산업에 주로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촌락의 총칭’이라고 정의함

4) <http://www.korean.go.kr/>

5) <http://encykorea.aks.ac.kr/>



□ 관련법에 의한 농어촌의 범위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등 농어촌 관련 법에서는 ‘읍, 면 전지역’을 농어촌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는 별도로 농어촌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과 어업을 주요 생업을 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용도지역과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포함됨

[표 2-1]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의 범위

법명		정의
농어촌 관련법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산어촌 :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와 군의 지역 중에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 : 읍·면의 지역과 그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농어촌정비법	농어촌 : 시의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농촌(어촌) 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에 따라 농촌(어촌)으로 고시하는 지역 <sup>6)</sup>
	어촌·어항법	어촌 :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여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면의 전지역과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관리지역 :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6) 이 법에서는 준농어촌도 정의하고 있는데,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함

## ② 농어촌 경관의 개념

### □ 기존 연구에서 정의한 농촌경관 및 어촌경관의 개념

-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경관뿐만 아니라 역사, 관습, 가치관 등에 의해 형성된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것임
-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개념은 경관의 일반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하지만 범위를 일반적인 주민이 아닌 농업활동에 기반을 둔 농촌주민의 생활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농촌경관’은 농촌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와 관습, 농업기술 등의 문화적인 특징이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농촌 취락지, 경작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일단의 지역환경적인 특성이라 정의할 수 있음

[표 2-2]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농촌경관의 개념

연구자	개념
이상문 (1991)	촌락의 입지와 형태, 가옥의 배열, 가옥의 평면형태, 건축재료, 경지의 형태 등의 모습으로 지각되는 대상임
유장호 (2000)	농촌경관은 사회·역사·문화적 요소인 농촌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와 관습, 농업기술 그리고 자연과 오랜 세월 작용하여 형성된 촌락의 입지 및 형태, 농지의 형태, 건축의 형태 등을 모두 포함
박윤호 (2004)	농촌경관은 농촌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와 관습, 농업기술 등의 문화적 요소가 자연과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것이며, 촌락의 입지 및 형태, 가옥의 형태, 건축재료, 농지의 형태 등을 포함
엄대호외 (2004)	농촌경관은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농지의 형태, 촌락의 입지 및 형태, 가옥 또는 건축물의 형태와 재료 등을 포함함. 흔히 농촌경관을 자연경관과 혼동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연환경을 토대로 오랜 세월을 두고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형성된 것
홍찬선 (2004)	농촌경관은 좁은 의미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정공간의 풍경이라고 정의하고 넓은 의미로는 눈에 보이는 자연물이나 인공물의 경치뿐만 아니라 그 풍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자연생태계의 작용, 분위기, 인간의 생산 및 활동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의미, 심리적 환경 등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종합적으로 포함
주신하외 (2008)	농촌의 공간구성요소가 위치하는 일단의 토지와 그에 부속된 모든 사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연생태과정과 인간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정의함. 즉 농촌경관이란 농촌 취락지 경관을 중심으로 경작지와 주변의 자연

	경관을 포함하고 농촌지역에 산재하고 있는 역사문화경관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함
이정원외 (2008)	농촌경관의 학술적 개념은 농촌을 무대로 펼쳐지는 경관의 한 형태로서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주거, 마을) 등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형태적 요소가 강조된 개념이 있으며, 인간 공동체가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하여 생기는 가시적 물질문화, 가치관, 사회제도, 농업기술 등 문화적 요소가 자연경관에 오랫동안 작용하여 형성된 농촌 특성을 강조한 개념임
김상범 (2009)	농촌경관은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인간 활동의 구체적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산물임
강영은 (2012)	농촌경관(rural landscape)은 농업을 위주로 한 생산활동과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주거생활 및 농업공동체의 문화 및 종교활동이 지표 위의 공간상에 물리적으로 표출된 가시적인 물질들의 집합체이면서 그 집합체의 조직적인 구성물이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농촌경관은 도시경관의 상대개념으로서 농업경관, 촌락(농촌취락)경관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고,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인간 활동의 구체적 모습이 구현되는 경관임

- 기존연구에서 나타난 ‘어촌경관’의 특징은 해안에 접해 있다는 점과 어업을 바탕으로 한 생산활동이 기반이 된 경관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어촌경관’은 어촌 주민의 가치관, 사회제도, 역사와 관습, 어업기술 등의 문화적인 특징이 오랜 세월을 두고 작용하여 형성된 취락지, 어항 및 농지와 바다를 중심으로 형성된 해안경관 등을 포함하는 일단의 지역환경적인 특성이라 정의할 수 있음

[표 2-3]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어촌경관의 개념

연구자	개념
김나영 (2002)	해안경관은 육역에서 보이는 해역의 풍경과 해역으로부터 보이는 육역의 풍경에 의해 구성되는 통합된 경관으로 필수경관 요소로서 반드시 수면을 포함하는 경관이며 해안지역의 개발로 인해 파괴될 수 있는 해안환경의 하나임
김삼능 (2003)	해안마을은 지리적으로 바닷가에 위치하며 생활과 생산활동 그리고 정신적 활동을 위한 모든 요소가 구비된 완전한 주생활의 기본단위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수욕장 혹은 중·소규모 어항을 포함하고 있는 마을을 의미하며,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는 어촌과 농업을 겸하고 있는 어촌 그리고 바닷가에 위치하는 농촌 등이 여기에 포함됨
윤상호 (2003)	어촌경관은 해안경관의 한 요소로서 어촌경관, 자연경관, 해수욕장 경관 등과 같이 해안경관을 형성하는 여러 유형들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기도 함
윤상호 (2007)	해안경관이란 연안의 이용과 개발행위 즉, 건축물 또는 구조물 건설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연안의 상태로부터 인간이 시각적으로 받게 되는 영향력을 의미함. 해안지역은 경관성향으로 볼 때 수평적인 선형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탁 트인 조망성과 연안에서의 인간활동에 따라 일반적으로 육역과는 다른 경관적인 특성을 나타냄. 따라서 해안경관은 바다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경관으로서 육지에서의 일반적인 경관 혹은 도시경관과는 다름

김진환외 (2011)	바다와 가까이 하며 바다를 통해 경제활동을 하는 등 어촌 주민들이 거주하는 생활터전인 마을이 심미적·문화적·경제적인 지역문화, 지역 분위기, 이미지, 마을 정체성 등의 가치를 형성·보전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총체적인 경치계획이라고 정의함
서수정외 (2011)	해안경관을 해안마을을 해안생태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형성되어 온 해안정주지로서 자연환경, 인공환경, 생활환경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상대적으로 동질한 성격을 띠는 일단의 경관단위로 규정함

#### □ 기존연구에서 정의한 농어촌 경관의 개념

- 농어촌 경관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앞서 농촌경관과 어촌 경관에 대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나 어항과 같이 농어업이라는 생산활동에 기반을 두고 형성된 물리적, 문화적 요소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경관으로 정리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농어촌 경관’은 농지나 어항 등 농어촌의 생산환경과 취락지로 이루어진 생활환경 등 물리적·문화적 경관과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룬 지역환경적인 특징으로 정의할 수 있음

[표 2-4]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농어촌경관의 개념

연구자	개념
OECD (2001)	농어촌 경관은 농업, 자연자원,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결과물로서 쾌적함을 비롯해 문화적·사회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임
박동규외 (2004)	농어촌 경관이란 농어촌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경관의 한 가지 형태로 자연, 농업, 인공적 환경 등의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가시적 산물임
성주인외 (2007)	농어촌 경관은 물리적으로 볼 때, 산, 하천, 숲 등 자연적 요소와 농경지로 이루어진 농업적 요소, 주택들로 구성된 마을 등이 한데 어울려서 형성된 경관임
박동규외 (2008)	농어촌 경관은 농어촌의 사회·경제·문화와 결부되어 주민들 일상생활의 산물로서 형성되므로 농어촌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들과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의한 산물임
주신하 (2008)	농산어촌지역을 무대로 해서 펼쳐지는 3차원적 경치를 의미하고 인간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농업, 마을(생활), 자연 등 농촌의 인공적 경관과 배경이 되는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경관
김미영외 (2009)	농어촌 경관은 농어촌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지각되는 대상군으로써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 문화적 요소와 그 주변을 포괄하는 경관임
성주인 (2009)	농어촌 경관은 농어촌의 사회·경제·문화와 결부되며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산물로서 농어촌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들과 복합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윤진옥외 (2009)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인간 활동의 구체적 모습이 구현되어 있는 경관으로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이 함께 어우러져 지역특성이 반영된 경관. 즉, 농어촌이라는 물리적 환경 속에서 지각되는 대상군으로써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물리적, 문화적 요소와 그 주변 환경을 포괄하는 경관임
----------------	--

□ 본 연구에서의 농어촌 경관의 정의

- 앞서 살펴본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촌경관, 어촌경관, 그리고 농어촌 경관을 종합해 보면, ‘농어촌 경관’의 특징은 농어업을 생산 기반으로 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지역 내의 일단의 주거지로 이루어진 마을과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 그리고 지역의 역사, 관습,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경관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경관’을 첫째, 농어업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둘째, 자연환경, 생산환경, 생활환경으로 구분되는 물리적인 환경과 셋째, 문화, 사회, 역사 등 농어민의 생활상을 대표하는 비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나타나는 일단의 지역환경적인 특징으로 정의하고자 함

2)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 기존연구에 의한 농촌 및 어촌의 경관,요소 구분

- 농촌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를 도출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물리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구분한 연구가 대부분임
- 물리적인 요소들은 주요 활동 특성에 따른 공간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들 공간을 크게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환경공간으로 구분하여 해당하는 요소들을 각각 제시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 기타 문화나 역사 등의 비물리적인 경관 요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2005)’를 들 수 있음

[표 2-5]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농촌경관 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이동근 외, 2005)	물적 인공 요소	산업 공간 (일하 는공 간)	농업시설	비닐하우스, 유리하우스, 차양막, 농공단지	
			축사시설	양계장, 양돈장, 양우장	
			농경지	논, 밭, 과수원, 특용작물, 토종 꿀농장, 묘목장 등	
			저장·가공 시설	저온저장고, 건조장, 농산물가공시설, 집하장, 지하저장고, 특산물판매장, 출하시설, 곡물제조창고, 정미소, 미곡종합처리장	
		생활 공간 (주거 를 위한 공간)	주택 시 설	단층	전통가옥, 양옥, 조립식 주택, 폐가
				복층	전통가옥, 양옥, 조립식 주택, 아파트
				담장	생울타리, 돌담, 토담, 벽돌담, 시멘트벽돌담, 철재헨스담, 슬레이트담, 나무펜스
				지붕	스라브눈썹지붕, 박공지붕, 모임지붕, 초가지붕, 기와지붕
				벽채	벽돌, 황토벽채, 석판널, 자연석재마감
				정원	정원
		생활 공간 (주거 를 위한 공간)	교류시설 (휴식공간)	마을회관, 마을공원, 마을마당, 레크레이션 시설, 노인정	
				의원, 한의원, 약국, 보건진료소, 학교, 각급 행정기관, 우체국, 산림조합출장소, 축협출장소, 농협지·출장소, 농조출장소	
				편의시설	잡화점, 슈퍼마켓, 식당, 양조장, 주유소, 복덕방, 목욕탕, 정류소, 비디오가게, 사료취급점, 농약상, 학원, 당구장, 탁구장, 목공소, 철물점, 차수리업소, 농기계수리소, 닭집, 문방구, 오락실, 방앗간, 정육점, 주점, 교회, 미용실, 이발소, 다방, PC방, 철물점, 가스취급점
			혐오시설	쓰레기 처리장, 소각장,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농수로, 용수로, 배수로, 농로	
역사 문화시설 (전통공간)	고택, 사당, 전통구조물, 장승, 비석, 정자, 사찰, 향교, 솟대, 정자목, 물레방아, 사신당, 성황당, 서원, 암자터, 기념공원, 고인돌, 석탑				
물적 자연 요소	자연경 관공간 (자연 공간)		천연자연 요소	국(도,군)립공원, 휴양림, 마을숲, 바위, 목초지, 산림, 하천, 저수지, 초지, 연못, 방풍림, 산책로, 습지, 목논, 약수터, 새벽안개, 계곡, 호수, 지역특징경관, 별, 달, 해, 맑은 물, 맑은 공기, 반딧불이 공간	

			서식공간 (소생활권)	천연기념물, 집단서식지, 생태습지, 생태하천, 생태공원, 생태연못, 철새도래지, 보호수, 야생화 군락지
			계절·시간 요소	설경, 가을논, 익은감, 단풍, 특정 화목류의 개화기, 고추 말리는 경관
	비물적자연·인공 요소	프로그램		관혼상제, 축제, 설화, 사물놀이, 전래동화, 전통놀이 공간
		인간행태		인구구성비, 지도자, 휴먼네트워크, 커뮤니티, 친절도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경관 요소에 관한 연구 (김상범 외, 2006)	농업생산공간	농지		논, 밭, 목초지, 과수원, 마을숲, 수목 등
		농업시설		농업시설 및 설비(축사, 정미소, 비닐하우스 등), 농로, 농업용수로, 농업용저수지 등
	농촌생활공간	생활시설		농가(주택, 창고, 담장 등), 도농교류시설(농촌체험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상점, 공장, 도로, 안내시설 등
		문화시설		사적, 유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및 시설(동제, 축제, 사당, 당산목 등) 등
자연환경공간	자연요소		산, 하천, 호수, 바다, 생태계(비오톱) 등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 기법 및 지원 방안 연구 (김주석 외, 2007)	생활공간	주택시설		출입구, 주택, 담장, 부속사, 정원
		공동이용시설		마을회관,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공동쉼터(농촌공원), 쓰레기수거장, 옥외광고물, 운동장 및 운동시설(농구장, 축구장, 헬스장, 에어로빅 등), 노인정, 오페수처리시설
		도로·가로시설		간선도로, 마을진입로, 마을내 도로(보행자도로 포함), 자전거 도로, 각종 가로시설물(사인시설, 안내판, 버스정류장, 스트리트 퍼니처 등), 옹벽·법면, 생태이동통로
		역사문화시설		역사유적지, 당산목, 보호수
	생산공간	농지		논, 밭, 초지, 논두렁, 밭두렁, 농로
		수리시설		저수지, 제방, 용배수로, 조류서식지
		생산시설		공동창고, 공동작업장, 비닐하우스, 축사, 원예시설, 관계시설
		상·공시설		상가, 공업시설(농수산물가공 공장 등)
	자연녹지	하천		(소)하천, 호소, 습지, 각종 친수시설(어도, 연구시설, 자연탐방로, 전망데크, 낚시터 등)
		산림		산지, 구릉지, 산책로

- 어촌경관 요소를 도출한 연구를 살펴보면 농촌경관 요소를 다른 연구들과 유사하게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물리적인 요소들을 위주로 어촌경관 요소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생산공간, 생활공간, 자연환경공간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2-6]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어촌경관 요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윤상호, 2007)	연안	어촌 경관	건축물 및 배치	지붕형태, 색채, 재질, 층고규제, 대지 내 조경, 주변환경과의 조화성, 건축물의 배치 등
			어촌풍경	어부림, 죽방림, 독살, 해안방풍림, 어선, 어구 등
			역사문화	성황당, 봉수대, 봉화대, 각종 유형·무형 문화재 등
		자연 경관	육역	해안사구, 석호, 하천, 구릉지, 산, 해안식생(송림지) 등
			해역	섬·육계도, 시스택, 해안단애, 주상절리, 해식애, 일출, 일몰 등
			기수역	연안습지, 갯벌(개펄) 등
	수제부	해수 욕장 경관	주요시설	모래 해변, 유명시설, 휴식·편의시설, 관리시설, 환경시설, 교통시설
		부대시설	휴양·놀이시설, 공원시설, 숙박시설, 기타관련시설	
	친수 공간 경관	친수공간	해빈공원, 해안공원, 해안산책로, 유보도	
	수변	해안 형 도로 경관	해안도로, 철도	가로시설물, 입간판, 도로조경 등
			어항 경관	어항기능시설
		어업기반 시설		시설배치, 대지 디자인, 경계부 처리, 범선형상, 위판시설 등
방파제 횃집거리		해안산책로, 바다낚시터 횃집의 건축물, 옥외광고물, 야간조명 등		
어촌지역의 공간특성을 고려한 경관 형성 방안 연구 (김진환 외, 2011)	어촌자연 경관 Nature	육역	해안사구, 석호, 하천, 구릉지, 산, 해안식생, 산림, 방풍림, 농업지, 마을숲 등	
		해역	섬, 시스택, 해안단애, 주상절리, 해식애, 일출, 일몰 등	
		기수역	연안습지, 갯벌 등	
	어촌생활 문화경관 Culture	어업시설	선착장, 선박, 양식장, 등대, 어항, 방파제 등	
		수산업관련자원	수산업 관련 산업행위, 시장, 수산물 건조 풍경 등	
	역사문화	유형문화재: 성황당, 봉수대, 봉화대 등 무형문화재: 전통어업행위(죽방림, 독살, 잠수어업 등), 전통문화행위(풍어제, 굿 등), 마을축제		
	어촌마을 경관 Village	건축물	주택, 담장, 공공시설(마을회관, 경로당, 창고 등), 숙박시설(펜션, 민박 등), 음식점, 기타 마을시설물	
		가로	진입로, 산책로, 등산로, 마을안길, 가로시설물, 바닥포장, 가로수 등	
		외부공간	공공공간(쌈지공원, 해변공원, 조망공원 등)	



해안마을 관광 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서수정 외, 2011)	자연경관		육역-해안사구, 석호, 해안식생, 하천, 구릉지, 산림, 방풍림, 농경지, 마을숲 등
			해역 - 섬, 육계도, 해안단애, 주상절리, 갯벌, 일출, 일몰 등
			해수욕장, 모래사장, 해안산책로 등
	마을경관		주택, 담장, 스카이라인, 색채, 재질 등
			가로시설물, 가로수, 마을마당, 마을회관, 기타 마을공동시설 등
	생활문화경관		수산업관련 산업풍경, 시장, 수산물 건조풍경 등
방파제, 등대, 선착장, 어항, 어장, 어선 등 포구 시설 성황당, 봉수대, 봉화대, 마을축제 등 마을의 역사·문화자원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2002)	자연경관		해안, 섬·육계도, 암벽, 해식애, 석호, 하천, 구릉지, 산, 송림, 일출, 바다풍경 등
	정주경관		항구도시 및 주변 배후, 소규모 어촌·어항
	문화경관	역사경관	역사문화 유적지
		관광지	해수욕장, 횡집거리, 유명관광지
교통경관		국도, 지방도, 철도, 교량, 터널 등	

#### □ 기존연구에 의한 농어촌의 경관 요소 구분

- 농어촌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경관 요소를 도출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김미영의 ‘효율적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와 적용기법 연구’와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을 들 수 있음
- 내용적으로는 앞서 살펴본 농촌경관과 어촌경관의 요소를 종합한 것과 같으며, 농촌경관 요소에 어촌시설 관련 요소와 해안경관 요소들이 추가된 것임

[표 2-7] 기존 연구에서 도출한 농어촌 경관 요소

	유형	유형별 자원의 종류	
		형태별 분류	점적 자원
효율적 농어촌 마을 경관관리 지원체계와 적용기법 연구 (김미영 외, 2009)	부분별 분류	선적 자원	도로, 가로수, 농로, 수로 등
		면적 자원	취락, 농지, 숲, 하천 등
		전통역사적 자원	우물, 서낭당, 전통 건축물 등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농림수산식품부(2009)		자연생태적 자원	고수령 당산나무, 마을숲, 마을하천 등
		생활문화적 자원	돌담, 생울타리, 특색있는 농촌주택, 농수로 등
	기능공간별 분류	자연공간적 자원	여울·연못·소하천·계곡과 그 주변을 포함하는 수경관, 산림·구릉지·들판과 같은 산림녹지 경관 등을 제시하고, 일정 연장의 생태 네트워크 연결, 향토 수종 및 생물종 다양성 확보 등으로 구체화
		생활공간적 자원	(전통)주택·담장·공동시설·마을숲(대지림, 차폐림, 완충림 등)의 취락경관, 도로·교량과 같은 교통시설 경관 등을 제시하고, 저층·저밀도, 건축물 층고·형태·색채·재료의 통일성,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등으로 구체화
		생산공간적 자원	논·밭·논두렁·밭두렁 등과 같은 농지 자체가 형성되는 경관, 저수지·농수로·비닐·하우스·원두막 등과 같은 생산시설 경관 등을 제시하고, 농지와 경사면·하천부지 등 여유공간과의 조화, 투수성 자연토양상태의 농로, 야생 동식물 비오름 및 생태통로 확보 가능한 농수로 정비, 인공시설 도입시 규모·형태·색채·재료 선택 등으로 구체화
	농어업 경관	경작지경관	논, 밭, 과수원, 목초지, 염전 등 농경지
		농어업생산 시설경관	용수로, 배수로, 농로, 저수지, 소, 축사 등의 인공시설
	자연 경관	산림경관	식생과 관련된 경관림과 지형과 관련된 산지경관
		자연생태 경관	생태하천, 연못, 생태습지, 야생화 군락지, 철새 도래지 등 동·식물의 생태서식 환경은 물론이고 자연지형 포함
		하천경관	자연형 하천, 어도, 수변데크, 물놀이장, 친환경 낚시터, 조류관찰대, 교량 등 하천과 관련된 경관 요소
생활 경관	주거경관	주택을 비롯한 주택의 담장, 지붕, 벽체, 창고, 우물 등	
	가로경관	진입도로, 내부도로, 등산로 등과 가로시설물	
	건축경관	마을회관, 경로당, 농특산물판매장 등 마을의 건축물	
	외부공간 경관	마을공동쉼터, 마을마당 및 담장 등 마을 외부공간의 구성요소	
	기타시설 물경관	안내시설, 가로시설물, 조형 물등 마을에 도입되는 시설물	
	색채경관	주거, 가로, 건축, 시설물 등의 색채	

□ 농어촌 경관 특성에 따른 농어촌 경관 요소 종합

- 기존 연구에서 제시하는 농어촌 경관 요소를 종합하면 인공적인 것부터 생태자연적인 것, 유형의 것에서 무형의 것까지 농어촌 경관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종류가 다양하고 광범위함
-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의 요소는 제외하고 시각적으로 인지가 가능한 유형의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요소를 다시 생산활동,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등 활동과 공간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간특성에 따라 경관 요소들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며 다양한 경관 요소들이 한 공간 내에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또한 생산활동,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등 농어촌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공간특성들이 중첩되어 나타나 다양하고 복잡한 농어촌 경관을 형성함
- 본 연구에서는 문화, 사회, 역사 등 농어민의 생활상을 대표하는 무형의 경관 요소가 궁극적으로 물리적인 환경에 반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기존 연구들에 나타난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들 중 물리적인 요소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경관 요소를 정리함
- 자연환경과 관련된 경관, 주거 등 인간에 의해 조성된 생활환경과 관련된 경관, 생산활동과 관련된 경관, 역사·문화적 자산에 의해 형성된 경관 등 주요한 경관 특성에 따라 자연경관, 생활경관, 생산경관, 역사문화경관으로 경관 유형을 구분하고 각각의 경관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음

[표 2-8] 농어촌 경관 유형 구분 및 경관 요소

유형	요소	
자연경관	산림, 구릉지, (소)하천, 호소, 습지, 산책로, 해안(해안사구, 석호, 해안식생, 방풍림, 섬, 시스택, 해안단애, 주상절리, 해식애, 일출, 일몰) 등	
생활경관	주거시설	주택, 창고, 담장, 벽체, 지붕 등
	공공시설	도농교류시설(농촌체험시설,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등
	상업시설	상점, 음식점, 공장, 펜션 등
생산경관	농지	논, 밭, 목초지, 과수원, 마을숲, 수목 등
	농업시설	농업시설 및 설비(축사, 정미소, 비닐하우스 등), 용수로, 배수로, 농로, 저수지 등의 인공시설
	어업시설	선착장, 선박, 양식장, 등대, 어항, 방파제, 시장, 수산물 건조대 등
역사문화경관	사적, 유적, 관광시설, 마을행사 및 시설(동제, 축제, 사당, 당산목 등) 등	



[그림 2-1] 농어촌 경관의 유형 및 요소

## 2. 농어촌 지역의 일반현황

### 1) 농어촌 인구 및 가구수

#### □ 농어촌 인구 현황

- 농어촌(읍면)인구는 총 342만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 4,858만명의 7.0%를 차지함(2010년 기준)
- 농어촌 인구는 매년 약 2%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별로 보면 경상북도의 농촌인구가 가장 많고 제주도의 인구가 가장 적음

[표 2-9] 2010년도 농어촌 인구 현황

총인구			농촌인구											어촌
계 (천명)	증가율 (%)	가구당 (명)	계 (천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천명)	
48,580	-0.34	2.8	3,243	412	192	211	394	278	396	491	348	115	181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2011), 농수산식품 주요 통계지표

#### □ 농어촌 가구 현황

- 농가구수와 어가구수는 총 124만호로 우리나라 총가구수 1,757만호의 7.1%를 차지함

[표 2-10] 2010년도 농어촌 농·어가 현황

총가구 (천호)	농가				어가			
	농가구		농가인구		어가구		어가인구	
	계 (천호)	구성비 (%)	계 (천호)	구성비 (%)	계 (천호)	구성비 (%)	계 (천호)	구성비 (%)
17,574	1,177	6.8	3,063	6.3	65	0.37	171	0.35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2011), 농수산식품 주요 통계지표

## 2) 농어촌 토지이용 현황

### ① 행정구역에 의한 구분<sup>7)</sup>

#### □ 읍·면·동에 관한 일반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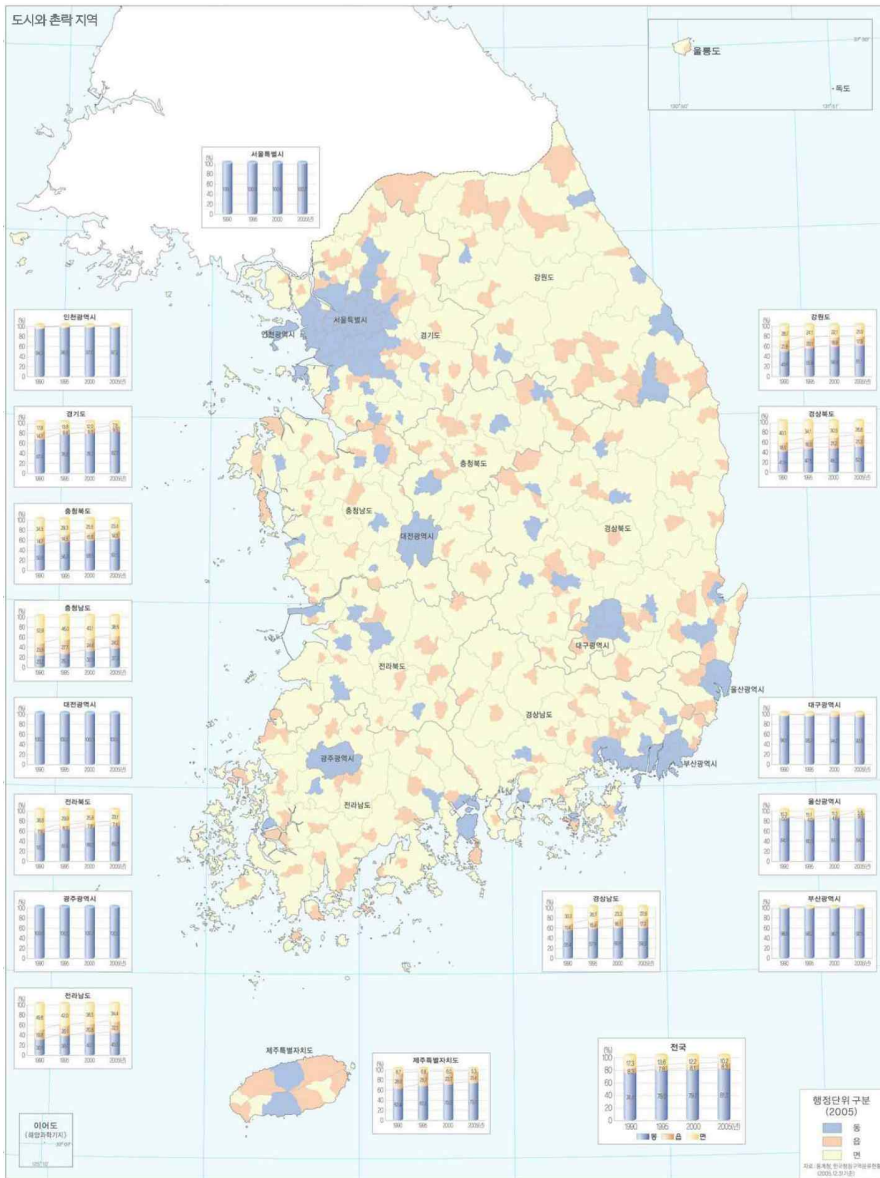
- 총 3,474개 읍·면·동 중 동은 2,058개(59%), 읍은 214개(6%), 면은 1,202개(35%)로 구분되어 있음(2005년 기준)
- 농어촌에 해당하는 읍면은 총 1,410개로 전체 읍·면·동의 40.5%임
- 읍·면에 해당하는 면적은 총 91,090.1km<sup>2</sup>로 국토면적 100,148.2km<sup>2</sup>의 91%를 차지함
- 읍·면지역의 인구는 총 342만명으로 1인당 면적은 26630m<sup>2</sup>로 동지역 1인당 면적 191.3m<sup>2</sup>에 비해 1인당 약 140배의 면적을 차지함

#### □ 읍·면·동 분포 현황

- 전국적으로 읍·면·동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동지역은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음
- 읍·면지역은 그 밖의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기성시가지를 중심으로 읍지역이 밀집되어 있음

---

7) 국토포털사이트 [www.land.go.kr](http://www.land.go.kr)



[그림 2-2] 국토의 읍·면·동 구분

출처: 국토포털사이트

## ② 국토의 용도지역에 의한 구분

### □ 용도지역에 관한 일반현황

- 국토의 용도지역별 면적을 살펴보면 도시지역은 17,559km<sup>2</sup>(국토의 16.5%), 비도시지역은 87,317km<sup>2</sup>(국토의 83%)로 구분됨
-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은 25,283km<sup>2</sup>(국토의 24%), 농림지역은 49,819km<sup>2</sup>(국토의 47.4%),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2,215km<sup>2</sup>(국토의 11.6%)로 구분됨
- 농어촌 개념에 의해 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농어촌은 용도지역 구분상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해당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일부에도 분포되어 있어 전체 국토면적의 52% 이상에 해당하여 전체 국토의 반 이상이 농어촌지역이라 할 수 있음

[표 2-11] 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 분포 (단위: km<sup>2</sup>)

도시지역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17,559	2,536	317	1,074	12,704	927
16.5%	2.4%	0.3%	1%	11.9%	0.9%

\* 출처: 국토해양부, 2010 도시계획현황('11.7)

[표 2-12] 비도시지역 용도지역별 면적 분포 (단위: k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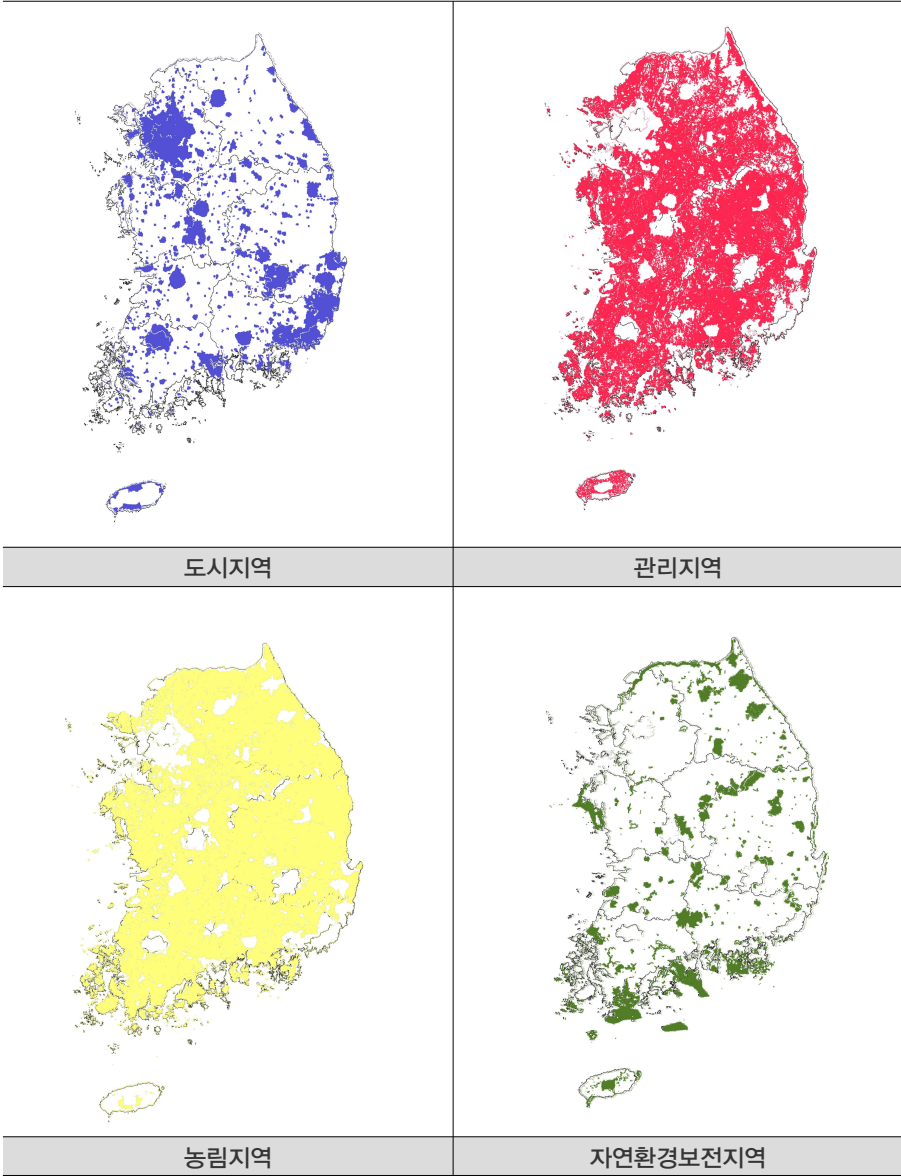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미세분		
87,317	25,283	10,753	4,025	8,393	2,113	49,819	12,215
83%	24%	10.2%	3.8%	8%	2%	47.4%	11.6%

\* 출처: 국토해양부, 2010 도시계획현황('1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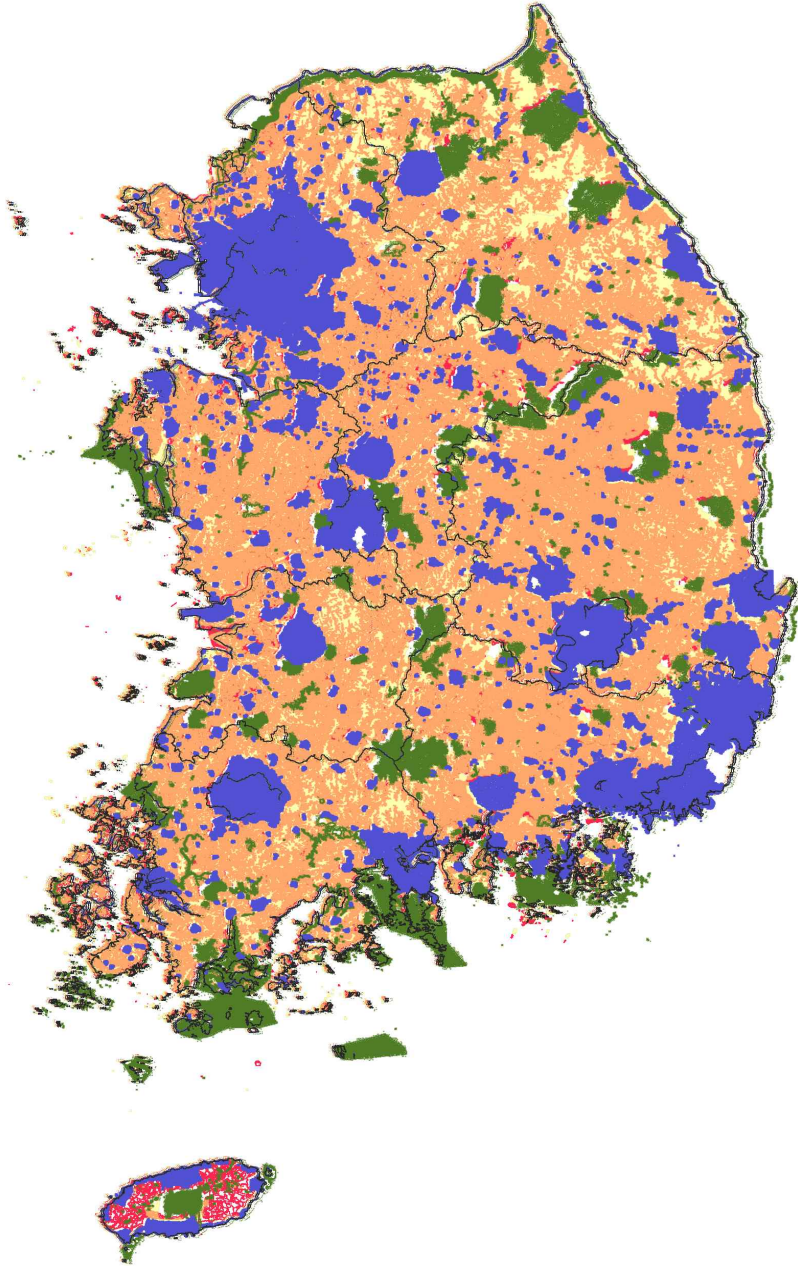
### □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 도시지역은 동지역의 분포 현황과 같이 특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어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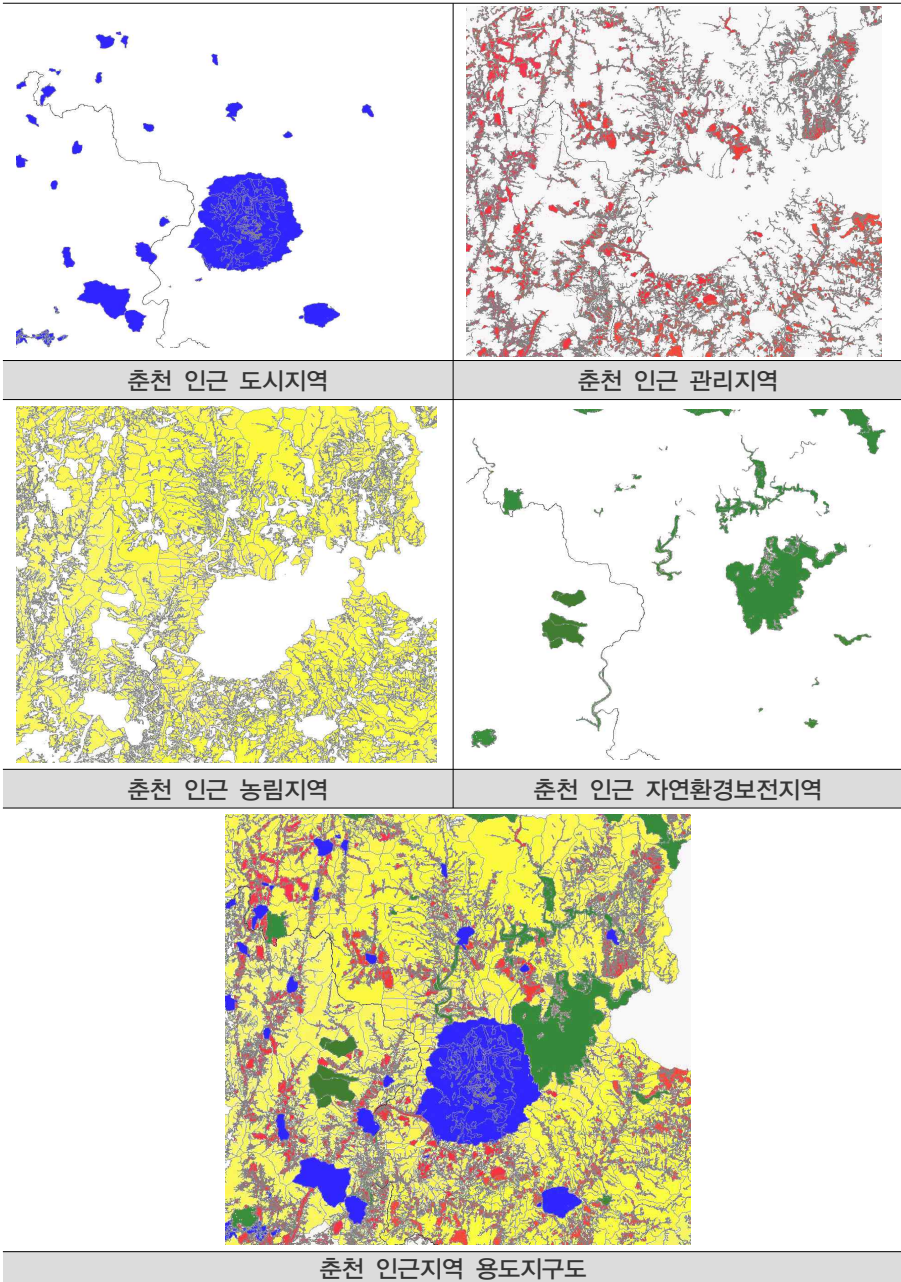




[그림 2-3]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출처: 국가정보체계에 의한 G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2-4]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종합도  
 출처 : 국가정보체계에 의한 G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2-5] 춘천 인근지역 용도지역별 분포 현황

### ③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구분

#### □ 「농지법」에 의한 농지 현황

-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총 1,715,000ha이며 국토전체 면적 10,003,000ha의 17.1%에 해당함
- 농지 중 진흥지역은 761,000ha, 보호지역은 162,000ha를 차지함
- 농지 중 논은 959,000ha, 밭은 738,000ha를 차지하고 있음

[표 2-13] 농업진흥지역현황 및 도별 경지면적

(단위: 천ha)

연도	구분	도별 농업진흥지역 현황 및 경지면적										
		소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2010	진흥구역	761	107	47	51	154	126	193	135	87	15	
	보호구역	162	55	2	7	20	15	31	18	9	5	
	논	959	98	41	49	166	141	191	138	67	33	35
	밭	738	81	68	67	67	61	113	136	60	59	26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2011), 농수산식품 주요 통계지표

- 농지전용면적은 총 19,000ha이며 이중 공공시설은 7,600ha, 주거시설은 4,400ha, 농업시설은 800ha, 기타 6,000ha임

[표 2-14] 농지전용현황

(단위:ha)

연도	총면적	공용·공공시설 및 공익시설	주택시설	광·공업시설	농·어업시설	기타
2010	18,732	7,603	4,378	2,766	768	3,217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2011), 농수산식품 주요 통계지표

####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현황

- 마을정비구역은 다양한 농어촌지역의 개발 사업을 통해 지정됨
- 총 권역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301권역,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230권역, 농어촌테마공원조성 63권역, 농어촌뉴타운조성 5권역, 전

원마을조성 128권역, 일반농산어촌개발 310권역으로, 지역에 따라 중복되는 곳이 있음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 현황

- 어촌지역 지정항수는 국가어항 109개, 지방어항 285개, 어촌정주어항 576개로, 어촌정주어항이 가장 많으며, 완공항수는 국가어항 92개, 지방어항 160개, 어촌정주어항 142개로 지방어항이 가장 많이 완공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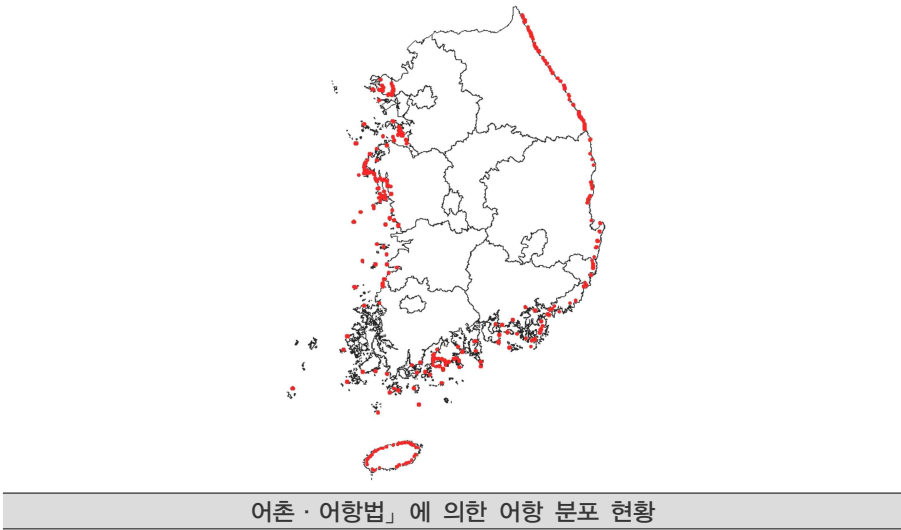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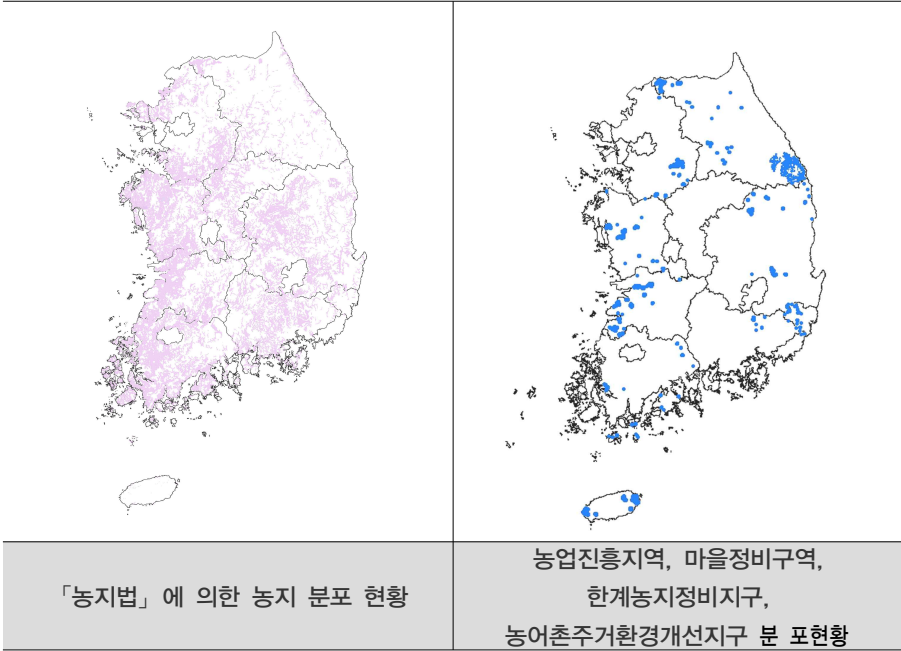
[표 2-15] 어항 지정현황

	지정항수	완공항수	완공률(%)
국가어항	109	92	84
지방어항	285	160	56
어촌정주어항	576	142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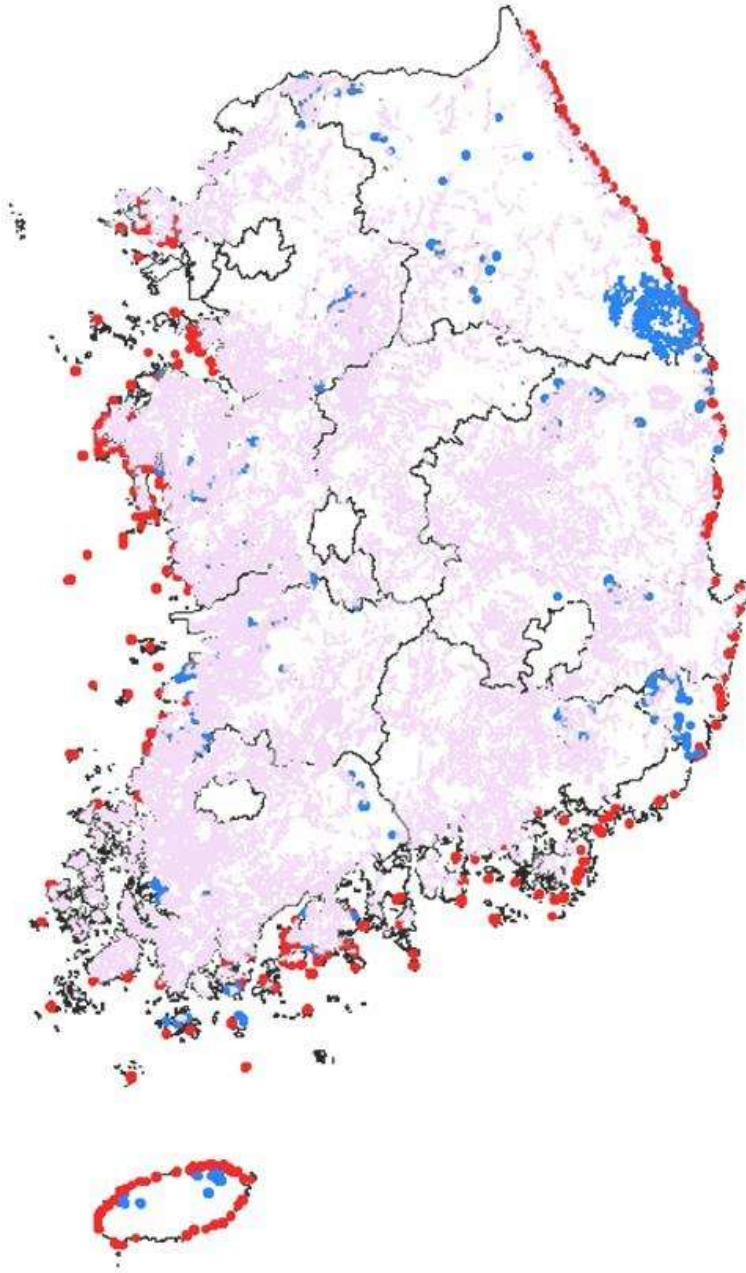
\* 출처: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통계담당관실(2011), 농수산식품 주요 통계지표

④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 분포 현황

- 「농지법」에 의한 농지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한계농지정비지구, 「농어촌주택개발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는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되어 있음
-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항은 동서남해안에 고루 분포되어 있음



[그림 2-6]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 분포 현황  
출처 : 국가정보체계에 의한 G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함



[그림 2-7]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용도지역별 현황 종합도  
 출처: 국가정보체계에 의한 GIS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함

### 3.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경관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경기도 인근, 춘천, 서산, 제주 등 전국을 대상으로 현장답사를 실시하여 농어촌 경관을 조사함
- 농어촌 경관 개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어촌 경관의 특색은 농어업에 의한 농지와 어항 등에 의한 생산경관과 생활경관이 주를 이루어 형성된 경관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농어촌 경관은 도시의 경관과는 차별적으로 산, 들, 구릉, 바다와 하천 등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전원적이고 시각적으로 탁 트인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
- 지역별로 살펴봤을 때 수도권 인근의 농어촌은 개발압력으로 인해 창고나 산업단지,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농어촌 고유의 경관적인 특징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았음
- 비수도권지역의 농어촌은 수도권에 비해 농어촌 고유의 경관적인 특징을 잘 보유하고 있었으나, 일부 저개발에 의한 노후화된 주택과 농어업시설, 과도한 규모의 공공건축물, 그리고 관광지역의 난개발 등으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는 사례가 많음

#### ① 생산경관에 기반한 마을과 자연이 어우러진 농어촌 경관

##### □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어촌

- 농어촌은 취락지가 모여있는 생활경관과 농지와 어항 등의 생산경관, 그리고 산, 들, 구릉, 바다와 하천 등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과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함





제주도



서산시



고흥군

[그림 2-8] 주변의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농촌

□ 농어촌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생산경관

- 농어촌의 생산경관은 논, 밭, 과수원, 어항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축사, 창고, 어획도구 등 생산활동에 필요한 물리적인 시설물 등 다양한 경관 요소에 의해 지역의 고유한 경관상이 형성됨



춘천시



서산시



화성시



울산시



강화군



하동군

[그림 2-9] 농어촌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는 다양한 생산경관

□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농어촌 경관

- 농어촌의 독특한 경관과 주변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은 도시민들의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도 활용되는 등 관광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농어촌 경관은 관광시설을 포함하여 또다시 새로운 경관적인 특성이 부여되기도 함



제주시



서산시



고흥군

[그림 2-10]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는 농어촌 경관

② 개발수요차에 따라 상이한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인근의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 대도시 인근의 농어촌 지역은 도시의 개발과 더불어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이 많으며, 이로 인해 도로가 확충되고 공장, 창고, 공동주택이 들어서면서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어촌 고유의 경관적인 특징이 훼손되고 있음



화성시



화성시



평택시

[그림 2-11]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인근의 농어촌 경관

- 특히 농어촌 지역은 지역 전체에 대한 미래상과 종합적인 공간계획이 부재한 상황에서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의해 창고, 공장, 나홀로 아파트, 음식점 등이 주변 경관에 대한 고려 없이 무분별하게 조성되고 있음



농림지역개발공사 (평택시)



농림지역주변창고 (평택시)



국도변 공장 (화성시)



나홀로아파트 (화성시)



나홀로아파트 (평택시)



나홀로아파트 (서산시)

[그림 2-12] 개별적인 개발행위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성된 농어촌 경관

#### □ 쇠퇴가 심화된 저개발지역 농어촌 경관의 현황과 문제점

- 지방의 농어촌 지역은 인구유출 및 노령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과소개발에서 오는 쇠퇴가 심각함
- 지방의 저개발 농어촌 지역은 기존의 시설이 노후화되거나 빈집과 폐허, 폐상점이 늘어나면서 농어촌 경관도 점진적으로 훼손되어 가고 있는 상황임



저개발마을 (고창군)



노후된창고 (고창군)



폐건물 (고창군)



폐허 (평택시)



폐건물 (평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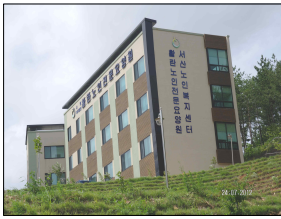
노후주택 (화성시)

[그림 2-13] 쇠퇴가 심화된 저개발지역 농어촌 경관

### ③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관 요소에 의한 문제점

#### □ 농어촌 경관훼손의 주범인 거대 공공건축물

- 전국적으로 비슷한 형태와 규모, 디자인으로 조성되는 공공건축물은 주변경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고, 밀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지역의 스케일과도 균형을 이루지 못해 시각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함
- 특히 주변의 건축물 스케일이나 지형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큰 규모로 조성되는 경우로 위압적인 경관을 형성함
- 공공건축물의 색채나 재료도 지역의 고유성을 배제하고 어느 지역에 서나 비슷하게 조성됨으로써 획일적이고 지루한 경관을 형성함



노인요양원 (평택시)



SWAT경찰특공대 (제주시)



종교시설 (화성시)



음식점 (춘천시)



어린이집 (화성시)



숙박시설 (화성시)



상가건물 (화성시)



음식점 (화성시)



음식점 및 상점 (평택시)

[그림 2-14]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농어촌지역 거대건축물들

#### □ 정리정돈과 관리 미흡으로 농어촌 경관 훼손

- 축사, 창고, 용수시설 등 농업 및 어업 관련한 시설물의 방치나 미흡한 관리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들은 농어촌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들로, 지역과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정돈되지 않은 쓰레기 하치장, 농기구 및 어획도구들의 방치, 민간의 창고이나 자동차 수리소 등에서 공공공간에 적재한 물건들은 공공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의 쾌적함을 저해하는 주요 요소임



축사 (화성시)



배수지시설 (서산시)



정미소 (서산시)



고물상 (평택시)



어획도구 (울산주전)



비닐하우스 (서산시)

[그림 2-15] 방치된 농어업 관련 시설물들

#### 4. 소결

- 농어촌 경관은 농어업을 생산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경관으로, 농어민의 생활상과 농지나 어항 등에 의한 생산경관과 마을경관, 그리고 주변의 자연경관이 함께 어우러진 경관이라 할 수 있음
-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한 경관 요소는 자연경관 요소, 생활경관 요소, 생산경관 요소, 역사문화경관 요소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연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에는 산, 하천, 바다 등이 포함되고, 생활경관 요소에는 대표적으로 주택, 도로 등이, 생산경관 요소에는 논, 밭, 항구 등이, 그리고 역사문화경관 요소에는 사적과 유적 등이 포함됨
- 농어촌 고유의 경관을 가지는 농어촌 지역을 조사한 결과, 전체 국토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 국토관리의 근간을 이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농어촌 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모두 분포되어 있음
- 특히 대부분의 농어촌지역이 분포하고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전 국토에 걸쳐 고루 분포되어 있고, 그 경계가 모호하여 관리지역내 농어촌과 농림지역 내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는 대도시주변의 관리지역과 읍지역의 관리지역에 대한 획일적인 공간관리체계로 인해 농어촌의 경관도 용도지역별 특성 없이 획일적으로 형성되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현장답사를 통해 조사한 농어촌 경관의 현황은 용도지역에 따른 차별성 보다는 개발수요차에 의한 지역적 차이가 높게 나타남. 개발수요가 높은 대도시 주변의 농어촌 지역 경관은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의해 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훼손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저개발 지역의 농어촌은 고유한 경관적 특징은 유지하고 있었으나, 공가나 노후화된 시설, 거대한 규모의 공공건축물로 인해 시각적으로 이질적인 경관이 형성됨
- 지역적인 차별성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 농어촌 경관의 문제점은 농어업시설의 노후화, 지역특성과는 무관한 디자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방치된 쓰레기 등으로 인해 정돈되지 않는 공공공간 등을 들 수 있음

## 제3장 농어촌 경관관리 실태

1.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동향
2.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3.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
4.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체계
5. 소결

### 1.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동향

#### 1) 국토해양부의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

- 농어촌 경관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는 2012년 발표한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 내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에 관련된 내용과 해안지역의 경관개선을 위해 제시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대표적이며, 이외 현재까지 농어촌 경관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은 부재한 상황임
-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2012)」
  - 국토해양부는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경관이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물론 국가 이미지와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배경 아래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SOC사업과 공공건축물의 경관수준을 높이기 위한 선도적 모델구축 방안, 우수경관 창출을 위한



지자체 및 민간을 대상으로 한 지원방안,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방안,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이 등이 제시됨

- 비도시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개별입지의 기반시설 설치부담 강화 및 공장이나 창고의 계획적인 입지 활성화 방안이 제시되어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고유의 경관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됨
- 그러나 이는 농어촌 지역 전반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난개발에 의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선적인 방침임

○ 「국토경관 종합 개선방안」, 2012

- 주요 개선방안 : 공공시설의 디자인 품격 제고, 조화롭고 개성 있는 우수 경관 창출, 경관관리의 제도적 기반 강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등
- 관련내용 :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 방지”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민간 중심의 “개별적 개발”의 편익은 줄이고, “계획적 개발”의 편익은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

- 개별입지의 기반시설 설치부담 강화<sup>1</sup>
- 개별입지에 주로 적용되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과 절차 엄격화<sup>2</sup>
- 기존 공장·창고 등을 계획적으로 재정비하는 준산업단지 조성사업과 신규로 조성되는 소규모 공장들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공장 입지유도지구 등 계획입지 활성화<sup>3</sup>

<sup>1</sup>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확대 등

<sup>2</sup> 성장관리방안 도입, 용도지역별 시설설치기준 구체화 등

<sup>3</sup> 기반시설 지원대상 기준 완화 : 준산단 10만 → 7만 m<sup>2</sup>, 유도지구 30만 → 15만 m<sup>2</sup>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2011)」

- 2011년 5월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안권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해안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2011

- 목적 :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
- 기본방향 및 원칙
  - 친환경성, 개방성, 공공성, 간결성, 지역성 등을 확보
  - 개방성: 스카이라인 형성 등 조망을 위한 통경축 확보
  - 공공성: 해안선 주변을 보행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
  - 간결성: 복잡한 디자인의 시설물 난립 방지 및 돌출 색상 지양
  - 지역성: 지역의 특색을 살린 재료 사용 및 외관의 형태 모색
- 주요내용

해안선으로부터 거리별 가이드 라인	해안권별 가이드라인	경관유형에 따른 등급별 가이드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li> <li>• 해안선 보호구역(40m) 가이드라인</li> <li>• 해안 중점관리구역(100m) 가이드라인</li> <li>• 해안 연전관리구역(500m) 가이드라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li> <li>• 동해안권(절벽•석호) 가이드라인</li> <li>• 서해안권(모래해안•갯벌) 가이드라인</li> <li>• 남해안권(리아스식 해안, 해안단구) 가이드라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사항</li> <li>• 경관평가</li> <li>• 시가지경관 가이드라인</li> <li>• 산업경관 가이드라인</li> <li>• 농어촌경관 가이드라인</li> <li>• 관광휴양경관 가이드라인</li> <li>• 역사문화경관 가이드라인</li> <li>• 자연경관 가이드라인</li> <li>• 생태경관 가이드라인</li> </ul>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2011)」

- 2011년 10월 국토해양부에서는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및 마리나항만을 조성할 때 고려해야 할 경관적인 사항을 규정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정함

○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경관 가이드라인」, 2011

- 목적 : 아름답고 쾌적한 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경관을 조성
- 기본방향
  - 이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조성

- 외관적으로 아름답게 조성
-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조성
- 관광자원으로 생동감이 넘치고 쾌적하게 조성

- 주요내용

경관자원의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자원조사(생태경관자원, 지형경관자원, 지역경관자원)</li> <li>·각종 계획 및 관련 map 활용</li> </ul>
단계별 디자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본계획</li> <li>·사업계획 및 실시계획</li> <li>·시공단계</li> </ul>
일반디자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요소 활용</li> <li>·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경관 조성</li> <li>·해안경관의 특색을 살리는 디자인</li> <li>·독특한 경관을 연출하는 디자인</li> <li>·생태계 등 환경을 고려한 디자인</li> <li>·우수한 조망경관을 확보할 수 있는 디자인</li> </ul>
주요 요소별 디자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만시설물</li> <li>·항만재개발 및 마리나항만 구역의 건축물</li> <li>·가로경관</li> <li>·색채 및 야간조명</li> </ul>

## 2)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

-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2006년부터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함
-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농어촌주택 개량에 중점을 두었던 기존의 개발방식에서 한발 나아가 계획에 기반한 개발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착시키고,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한 자율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한 것으로 농어촌 경관 향상을 위한 최초의 종합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음
- 2006년에는 계획체계 마련과 개발기준을 정립하고, 2011년에는 경관계획의 지침 마련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하여 계획을 시도하기 위해 총괄계획가 제도의 도입과 先경관계획 後 개발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시도함

- 2006년에 농촌경관개선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우수경관 등의 선정과 국민 신탁운동 활성화 방안을 실행하고, 2011년에는 이를 확대하여 공모전이나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최를 제시함
- 2006년에 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를 위해 경관보전직불제와 농촌어메니티직불제 등을 도입하고, 2011년에는 경관보전직불제 내실화와 더불어 우수경관지구 지정, 다양한 경관사업 모델 발굴 등 농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에 목적을 둔 사업을 추진함
-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관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국토전반에 분포된 농어촌지역을 모두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2006)」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해 2006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한 종합대책으로, 국내 최초의 농어촌 경관 관련 정책임

○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2006

- 비전 :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쾌적한 농촌공간 구현
- 목표 : 先농촌경관계획-後농촌개발 시스템 정착
- 세부 추진과제

<b>先 농촌경관계획 체계 마련</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경관지표 제정 및 활용</li> <li>•농촌경관맵 작성 및 활용</li> <li>•농촌경관협약 체결 및 경관계획 수립</li> </ul>
<b>親 경관적인 농촌개발기준정립</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 적용</li> <li>•농촌경관계획 수립기준 마련</li> </ul>
<b>농촌경관개선 정책사업 확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경관보전직불제 확대, 친환경적 생산기반시설 정비</li> <li>•생활:경관개선 메뉴사업 추진, 기존 마을정비사업 추진 농촌어메니티직불제 추진</li> <li>•자연:경관림 · 마을숲조성 및 관리, 산지경관 보전 방안 추진</li> </ul>
<b>농촌경관개선 사회적공감대 확산</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농촌경관 선정 및 DB구축</li> <li>•민간차원의 국민신탁운동 활성화</li> </ul>

□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 경관’ 추진대책(2011)」

- 2011년 12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06년의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보완·발전시켜 제시한 정책임

○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 경관’ 추진대책」, 2011		
- 목표 : 농촌다움 제고를 위한 五感경관 구현 -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원적 가치 제고를 위한 계획중심의 경관사업 추진</li> <li>· 교육 등 역량강화를 통해 자율적인 주민의 경관관리 유도</li> <li>· 전통과 문화, 경관의 가치 발굴 및 보전</li> </ul> - 세부 추진과제		
경관개선 제도화	교육 및 홍보	경관보전·형성·관리 관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선 경관계획 후 개발</li> <li>·총괄계획가 제도 도입</li> <li>·경관보전직불 내실화</li> <li>·문화환경, 경관사업</li> <li>·농업유산제도 도입</li> <li>·공간정보시스템 구축</li> <li>·경관관리 추진체계 구축</li> <li>·경관계획 지킴 마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전문 교육과정 신설</li> <li>·경관 우수마을 선발전 개최</li> <li>·경관개선 아이디어 공모전</li> <li>·경관 우수마을 대상 미술대회 개최, 관광 활성화</li> <li>·농어촌 경관 역사성 기록</li> <li>·어메니티 공모전 개최 및 결과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수 경관지구 지정</li> <li>·다양한 경관사업 모델 발굴</li> <li>·농촌디자인기술개발 및 사례 보급</li> <li>·마을경관계획 수립 컨설팅</li> <li>·농어촌 주택 등 건축물경관개선</li> <li>·농어촌 연계형 그린로드 구축</li> <li>·습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보급</li> </ul>

## 2.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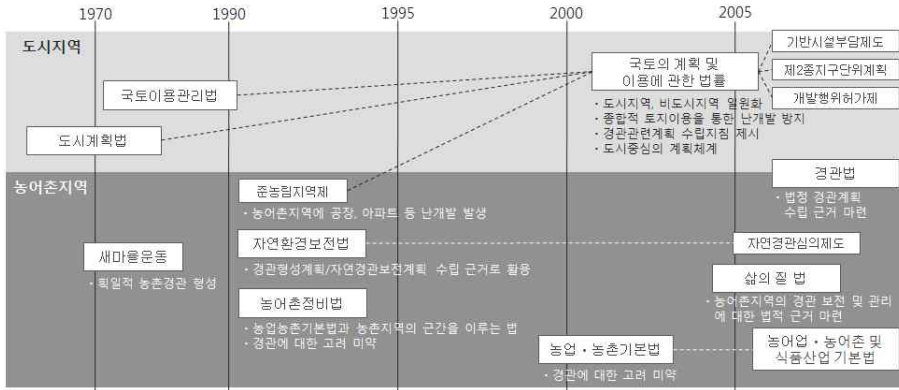
### 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의 제·개정 과정

- 70년대 : 경제개발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농어촌 경관의 파괴와 획일화
  - 경제개발 및 도시화에 중점을 둔 70년대에는 전 국토에 도로망 확충, 산업단지 개발, 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기존의 농어촌 지역이 도시로 편입되거나 개발되면서 농어촌 경관의 파괴가 진행됨
  - 낙후된 농어촌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주택개량, 도로망 설치, 공공시설 설치 등이 지역의 특성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농어촌 경관이 획일화됨
- 90년대 : 난개발에 의한 농어촌 경관 훼손
  - 90년대에는 도시화로 인해 서민주택과 공장용지 공급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림지역을 제한적으로 개발 할 수 있도록 ‘준농림지역제’가 제정됨<sup>8)</sup>
  - 이로 인해 도시주변의 농어촌 지역에 공장, 창고, 주거지 등이 종합적인 계획 없이 조성되어 농어촌지역의 난개발이라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킴
  - 한편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맞는 개발추진 방식이 도입되었으나, 이는 농어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어촌 생활환경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측면에서 기반 시설들을 확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경관관련 내용은 미흡함

---

8) 송미령 외, 2001,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pp.8~9

- 2000년대 초반 : 국토의 통합적 관리와 경관의 중요성 부각
  -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준농림지역제」 등을 통합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토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토지이용과 관리체계를 마련하였음
  - 국토경관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도시기본계획 내 부문계획으로 ‘경관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시단위에서 경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대부분의 농어촌이 포함된 군단위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농어촌지역은 경관관리 틀에서 배제됨
  
- 2000년대 후반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체계 및 농어촌사업 단위 경관계획 기반 마련
  -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되면서 경관계획 수립 및 종합적인 경관 관리에 대한 기반이 마련됨. 그러나 기존의 공간관리 수단과 연계가 미흡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과 함께 경관계획 수립지침이 도시지역 위주로 작성되어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2004년에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농어촌지역에 맞는 농어촌 경관의 보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 그러나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촌 관련 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할 때만 해당이 되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림 3-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의 재·개정 과정

[표 3-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 재·개정에 대한 주요내용

연도	법규/제도	내용
1971	새마을운동	·농촌마을 고유의 경관적 특성 파괴 및 경관의 획일화 과정 ·농촌경관자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와 경제발전 위주의 개발정책
1991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수립에 관해 명시 ·지자체에서 경관형성조례, 자연경관보전조례 등에 의거하여 경관형성계획이나 자연경관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로도 활용
1993	준농림지역제	·개발 가능성을 높여 용지수급과 지가 안정을 위해 도입 ·농어촌 지역에 공장과 나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는 등 난개발 발생
1994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지역의 종합적 정비·개발을 통해 경쟁력 향상과 생활환경개선 촉진을 위해 제정 ·당시 동법 제66조에서는 농어촌 휴양자원의 개발과 관련하여 자연경관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음
1999	농업·농촌기본법	·농어촌정비법과 함께 농어촌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법률 ·농어촌지역 전체에 대한 경관적 고려는 거의 없거나 매우 미약 ·농업·농촌발전기본계획 수립을 규정
20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 일원화 ·종합적 토지이용계획을 기초로 토지를 관리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권역인 일정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토지이용계획과 시설 및 사업계획이 하나의 계획체계 하에서 통합 수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을 진행할 때에 경관관련 계획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지침을 제시
2003	국계획 관련 제도적 수단 정비	·도시(군)계획 수립, 용도지역지구 재편 및 행위제한 강화, 기반시설부담제도 도입,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도 신설, 개발행위허가제 확대 등



2004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삶의질법)	·농어촌 경관에 초점을 두어 보전·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 ·제30조에서 농산어촌의 경관보전을 위한 시책의 추진 필요성을 명시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서는 이러한 시책 추진을 위한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계획 수립·시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2005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자연경관심의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대규모 개발사업, 보전지역 주변의 개발 사업 및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자연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도록 하는 자연경관심의제도가 도입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지방환경청 산하의 자연경관심의 위원회 등에서 자연경관 현황, 경관축, 조화성, 경관변화 분석 및 예측, 저감방안 등에 대해 검토
2007	경관법	·개별 법률들에 포함된 경관관련 규정들을 총괄 조정할 근거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7년에 제정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음 ·국제법에 의해 수립되던 경관계획이 도시경관을 중심으로 진행 된 반면에, 경관법은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농산어촌의 지역특성에 맞게 수립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경관법 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법정계획으로서 독립적인 경관계획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임
200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개정
2009	농어촌정비법 개정	·각종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시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함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제64조(농어촌 빈집정비)

## 2)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의 주요 내용

### □ 농어촌 관련 법제정 현황

- 농어촌지역의 관리에 관한 법규는 국토관리체계와 관련된 법규와 농어촌지역의 진흥 등에 관련된 법규로 구분할 수 있음
- 국토관리체계와 관련된 법규는 국토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공간관리의 틀 안에서 농어촌 지역의 공간관리 방식을 규정함
- 농어촌지역의 진흥과 관련된 법규는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종합적인 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간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내용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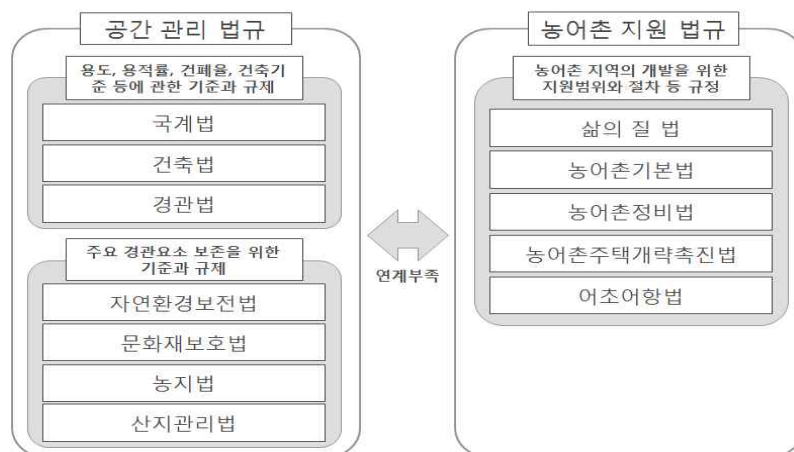
[표 3-2] 농어촌 관련 법규

관련법규		소관부처	목적	범위	주요 제도/계획/사업
국토 관리체계 관련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부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	전국토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제
	경관법	국토부	경관 형성 및 보전	전국토	경관계획,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사업
	건축법	국토부	건축물의 기준 및 용도 마련	전국토	건축심의, 특별건축구역
	문화재보호법	문광부	문화재 보존	전국토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위원회 심의
	자연환경보전법	환경부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자연환경	자연경관심의제도
	산지관리법	산림청	산지의 합리적 보전 및 이용	산지	산지관리기본계획, 산지전용지역, 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농어촌지 역 진흥 관련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림부	농어업인 등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농어촌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경관관리계획, 마을정비구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림부	농어촌 및 식품산업 육성, 농어촌 공익기능 증진	농어업 관련 산업	-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농림부	주택개량, 주거환경 향상	농어촌주택	농촌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수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부	도시와 교류촉진, 농어촌 활력 증진	농어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어촌어항법	농림부	어촌정비, 수산업 강화	어촌, 어항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농지법	농림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	경작지,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계획,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어촌어항법	농림부	어촌의 정비 및 개발,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	어촌, 어항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
-------	-----	-----------------------------	--------	---

□ 공간관리 중심과 농어촌 지원 중심으로 이원화된 법률체계

- 농어촌 관련 법규는 크게 규제 중심의 공간관리 관련 법규와 지원 중심의 농어촌 관련 법규로 이분화되어 있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과 「경관법」 등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관리 중심의 법규로 규제적 성격이 강하고, 대부분 국토해양부에서 총괄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등은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규로 지원적 성격이 강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총괄하고 있음
- 공간관리 중심의 법규에서 다루고 있는 공간관리 수단과 농어촌 지원 중심의 법규를 근간으로 하는 지역개발 사업간의 연계성은 미비한 상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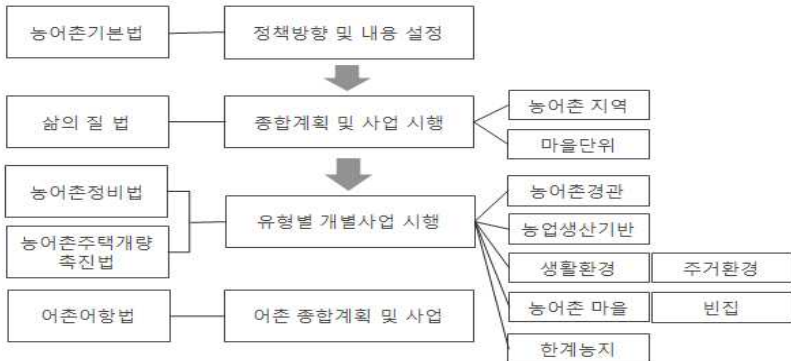
[그림 3-2] 공간관리와 농어촌 지원 중심으로 이원화된 농어촌 관련법

- 공간관리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규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은 용도지역지구제를 중심으로 지역지구지정, 지역지구별 행위규제 및 허용, 개발행위제한 등 규제 중심의 공간관리 체계라 할 수 있으며, 「경관법」은 경관계획에 기반하여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등을 통해 경관관리를 유도·지원하는 공간관리 방식임



[그림 3-3] 규제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는 법규

- 한편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등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목적으로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노후화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추진을 기반으로 하는 법규들은 사업을 통해 공간관리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이라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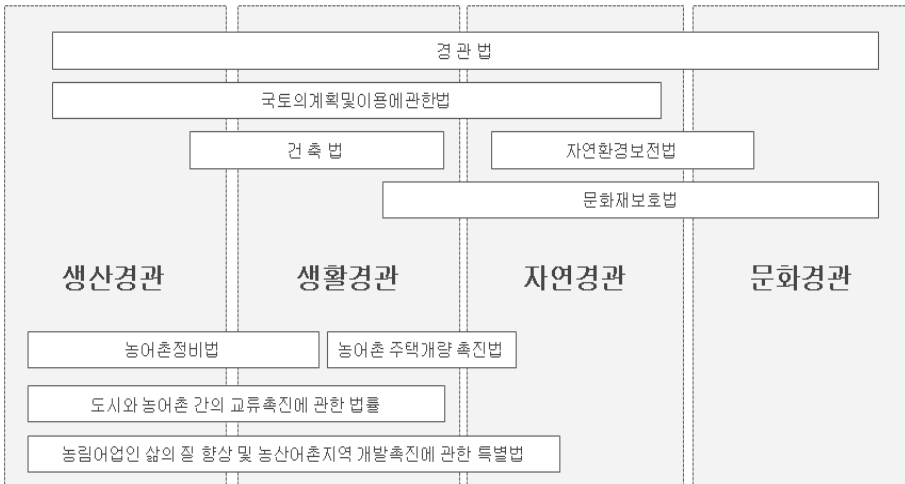


[그림 3-4] 사업중심으로 농어촌 지역을 지원하는 법규

### 3)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 내 경관관리 방식

#### ① 농어촌 경관 관련 법제도에서 관리하는 농어촌 경관 요소

- 농어촌 경관을 형성하는 주요 경관 요소는 생산경관, 생활경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경관유형별로 다양한 요소들이 있음
- 「건축법」, 「자연환경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특수경관 요소에 특화된 법규를 제외하고, 공간관리와 관련된 법규는 생산경관, 생활경관, 자연경관, 문화경관에 두루 거쳐 있으며, 농어촌 지원 관련 법규는 생산경관과 생활경관에 치중되어 있음
- 이는 공간관리 관련 법제도가 전체 국토의 공간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농어촌 지원 관련법은 생활공간으로서 농어촌지역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3-5] 관련법규별 농어촌 경관관리 대상으로서 경관 요소

- 농어촌 관련법규 상에 나타난 유형별 경관관리 대상과 경관관리 수단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3]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유형별 경관관리 대상과 수단

관련법규	농어촌경관 관리대상	경관 관리방법	주요제도/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활경관 생산경관	지구지정, 계획수립	용도지역지구 개발행위허가제
경관법	생활경관 생산경관 자연경관	계획수립, 사업시행, 협정체결	경관협정 경관심의 경관사업
건축법	생활경관 생산경관	구역지정, 심의	건축심의 특별건축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경관 생활경관	지역·지구지정, 계획수립, 협의, 심의위원회 운영	자연경관심의제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생활경관 생산경관 자연경관	협약체결, 계획수립, 조례 제정 및 지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
농어촌정비법	생산경관 생활경관	계획수립, 관련사업, 구역 지정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경관관리계획, 마을정비구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생산경관	-	-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생활경관	계획수립, 지구지정	농촌빈집정비사업, 빈집정비계획수립,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 농어촌주거환경개선종합계획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생활경관 생산경관	관련사업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어촌어항법	생활경관 생산경관 자연경관	계획수립, 관련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문화재보호법	생활경관 자연경관	지역설정, 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문화재위원회 심의
산지관리법	생산경관 자연경관	계획수립, 지역지정, 심의, 허가, 조성비 납부, 위원회 설치	산지관리기본계획,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산지관리위원회, 토석채취허가
농지법	생산경관	계획수립, 농지취득을 위한 지역 증명 농지경영 이외의 농지는 처분, 농지소유의 세분화 방지 지역지정	농업진흥지역, 농지이용계획, 농지이용증진사업,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
어촌어항법	생활경관 생산경관	계획수립, 사업진행, 구역 설정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개발사업,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설정

## ②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특성별 경관관리 수단

-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경관관리 수단은 크게 계획에 의한 관리, 용도지역지구 지정 등을 통한 규제적 관리, 그리고 심의를 통한 관리와 지원을 통한 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규제적 수단에 의한 2차원적 경관관리
  - 「국계법」과 「건축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를 규제함으로써 경관을 관리하는 수단임
  - 「국계법」의 개발행위허가제는 토지의 형질 및 형상을 변경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를 관리하여 경관형성에 간접적으로 관여함
  - 그러나 용도지역지구제, 개발행위허가제, 건축허가제는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과 건축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어촌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소규모사업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3차원적 계획 및 지침 제시를 통한 경관관리
  -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시 경관부문계획을 통해 경관형성·관리·보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으나, 계획범위가 시나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국계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건축물의 배치, 규모, 용도, 형태를 규정하기에 적합하나, 일정규모 이상의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개발압력이 낮은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경관법」은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및 관리의 법적 기반을 구축하였으나, 아직까지 농어촌 지역에 특화된 경관계획수립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공간관리수단과 연계가 미흡

하여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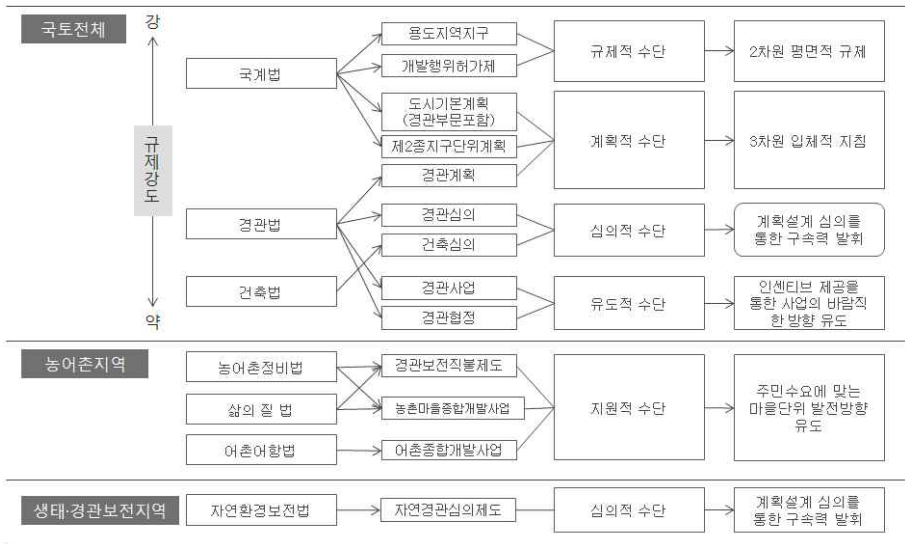
□ 심의적 수단에 의한 경관관리

- 심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이나 건축행위 등 개별법에서 정한 대상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행위로, 경관관리와 관련된 심의제도는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경관심의, 문화재심의, 자연경관심의 등 다양한 심의제도가 연관되어 있음
- 대표적으로 경관심의와 건축심의를 들 수 있는데, 최근 경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지자체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개발사업에서 공공시설물에 이르기까지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나, 중복심의 등과 심의의견 반영의 실효성 부족 등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건축심의를는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데, 농어촌에서 건축되는 4층 이하의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어 경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

□ 지원에 의한 경관사업 추진과 경관형성

- 농어촌지역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개발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삶의질법」을 통한 경관보전직불제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어촌어항법」에 의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이루어짐
- 이들 사업은 Bottom-up방식의 주민들의 자발적인 사업제안 및 협의를 통해 주민수요에 맞는 마을단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유도함
- 그러나 농어촌 주민의 생활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 사업은 단위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마을 전체에 대한 공간적 계획이 미흡한 실정임
- 경관적 측면에서도 마을 전체의 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가로정비, 농촌주택개량, 마을종합센터 건립 등 단일 경관사업에 치중되어 있고, 공간적 위계를 고려한 공간계획과 경관관리 지침 등은 부재한 상황임





[그림 3-6] 법·제도에 따른 농어촌 경관관리 체계  
 ※ 출처 : 김명수 연구위원의 자문자료(12.07.31)를 바탕으로 재작성

#### 4) 주요한 농어촌 경관관리 수단의 특성과 한계

##### □ 농어촌지역 특성에 맞지 않는 용도지역지구제의 한계

##### ○ 절대높이(층고)에 대한 규제 of 한계

- 농어촌지역은 용도지역 구분에 따라 대부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포함됨
- 농어촌지역의 경관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대형의 공장, 상업건축물, 공공건축물임
- 그러나 현재의 건축물의 높이는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층수로만 관리되고 있는 실정임. 관리지역은 4층 이하,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 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3층 이하의 농어가주택 건축이 가능하고, 층고에 대한 규제는 없는 실정임
- 그러나 공장 등 층고가 높은 대형건축물은 1층으로 구성되어도 일반건축물의 3~4층에 해당하는 높이를 가지고 있어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건축물의 절대높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

[표 3-4] 「국계법」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축규모 규제

용도지역	건축물 규제사항	건폐율	용적율
관리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	-
보전관리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20	80
생산관리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20	80
계획관리지역	· 4층 이하의 건축물	40	100
농림지역	·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주택(단독주택)	20	80
자연환경보전지역	·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않는 농어가주택(단독주택) ·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0	80

○ 용도지역별 건축물 용도에 대한 규제의 한계

-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 지역에 입지가 불가능한 건축용도는 위락, 업무시설이며, 일부지역에서 공장, 판매시설 등을 제한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 경관 훼손의 주범인 공장과 판매시설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환경오염의 영향이 크지 않으면 입지가 가능하며, 특히 규제대상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위장한 공장과 판매시설로 인해 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 모든 지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용도와 규모의 제한만으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관을 관리하기는 어려움. 따라서 지역에 맞는 공간 및 용도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경관가이드라인의 적용되어야 함

[표 3-5]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용도지역별 건축가능 용도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단독주택	●	●	●	●	▲ (농어가주택)	▲ (농어가주택)

공동주택	△	X	△ (0포인트외)	△ (0포인트외)	X	X
제1종근린생활 시설	▲△	△	▲△	▲△	▲△	△
제2종근린생활 시설	△	△	△	▲△	△	△
문화 및 집회시설	○	X	X	○	△	X
종교시설	○	△	X	○	○	○
판매시설	△	X	△	X	X	X
운수시설	○	X	X	○	X	X
의료시설	▲△	○	○	▲△	○	X
교육연구시설	▲△	▲△	▲△	▲○	▲	▲
노유자시설	●	○	○	●	X	X
수련시설	●	X	○	●	○	X
운동시설	▲△	X	▲	▲△	X	X
업무시설	X	X	X	X	X	X
숙박시설	△	X	X	△	X	X
위락시설	X	X	X	X	X	X
공장	▲△	X	△	▲△	X	X
창고시설	▲△	△	▲	▲	▲	X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	○	○	△	X
자동차 관련시설	○	X	△	○	X	X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	△	▲△	●	▲△	△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X	○	●	○	X
교정 및 군사시설	●	●	●	●	○	○
방송통신시설	●	○	○	●	○	X
발전시설	●	○	●	●	●	○
묘지관련시설	○	○	○	●	○	○
관광 휴게시설	○	X	X	○	X	X
장례식장	●	○	○	●	○	X

-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건축 가능한 건축물: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X

- 조례에 의해 건축 가능한 건축물: 가능○, 일부가능△, 불가능X

#### □ 「국계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

-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계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농어촌이 가장 많이 입지해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

가 대상은 30,000㎡ 미만으로,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 농어촌 경관에서 문제가 되는 중소 규모의 건축물은 이로 인해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농어촌지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개발행위에 대한 경관관리의 한계가 발생함

[표 3-6] 개발행위허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허가 및 심의	대상범위(면적)
미허가 대상 (국계법 시행령 53조)	- 단 높이 50m 이내 또는 깊이 50m 이내의 형질변경,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형질변경,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 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 등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계법 시행령 55조)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 개발행위허가 대상 면적 이상

□ 「건축법」에 의한 건축심의의 한계

- 신축·개축하는 건축물의 경관관리는 건축심의제도에 의해 이루어지며 다중이용 건축물 중 바닥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가 의무화되어 있음
- 그러나 농어촌 대부분의 지역에서 건축물은 4층 이하로 규제되고 있어, 건축심의 적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건축심의를 통한 경관관리는 농어촌지역에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 3.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 및 사업

#### 1) 개별법에 의한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의 내용과 시행현황

##### 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내 경관부문계획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부문계획인 경관계획은 시·군관할구역의 경관의 보호 및 형성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임
  - 부문계획으로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 내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의 다른 부문과 연계 검토하여 수립하며,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지침이 됨
  - 도시기본계획 내의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 계획범위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전체의 경관보전 및 형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경관관리 내용을 포함시키기에 한계가 있음
  - 또한 도시기본계획은 농어촌지역이 입지해 있는 군에서는 의무화된 계획이 아니므로, 농어촌지역을 위한 경관계획과는 연동이 어려움
- 경관계획의 구성 및 수립기준을 살펴보면, 지역별 경관관리의 현황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현황분석을 진행한 후, 시·군의 정체성을 고려하여 이를 기초로 경관이미지를 설정함
  - 경관관리대상은 보전대상지와 개선대상지로 이분화하여 그에 따른 경관지침을 제시하고, 5년 단위로 민간·공공부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규정
  - 다양한 경관적인 특성이 혼재되어 있는 농어촌지역을 보전대상지와 개선대상지로 단순 구분하여 경관지침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도시와 비도시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임

- 경관계획보고서 작성기준은 서론 → 현황분석 → 경관계획의 종합분석 및 과제 추출 → 기본구상 → 경관관리대상지역 선정 → 경관기본구상도 → 경관지침 → 실행계획으로 규정되어 있음
- 경관지침은 총 12가지 지침을 내포하고 있으며, 항목으로는 경관 유형별 특성화계획,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경관특성화계획, 경관중점관리지역 경관연출계획,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연출계획, 자연을 도입한 공간계획,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계획, 색채계획, 가로경관계획, 공원·녹지 경관계획, 역사문화 유적지 경관,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체계수립,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등이 있음
- 이는 대부분 도시지역에 맞는 경관계획내용으로, 농어촌지역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임

## ②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은 관할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경관계획과 관할지역 내 특정지역 또는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해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음
- 경관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관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경관지구·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 시행방안 및 경관관리에 대한 사항 등을 포함함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경관자원을 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경관자원,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의 유형으로 구분함
- 경관계획에서는 경관에 대한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 경관구조를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으로 구분하고,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방향을 제

시함. 또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방향과 중요 경관자원 및 주요 경관위해요소에 대한 관리·지원 및 정비계획을 제시함

- 구체적으로는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이는 경관권역,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경관축,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경관거점에 대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함
- 경관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지역의 미래상을 마련하고,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와 유도지침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정계획으로, 농어촌 지역에서도 특정경관계획을 활용하여 경관관리의 기본방향과 실행수단을 마련할 수 있음
-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항목은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의 6가지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음
- 경관관리 대상으로서 경관 요소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음
- 현행 「경관계획수립지침」은 도시에 특화되어 농어촌 등의 특수한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에 맞추어 계획 수립지침과 경관 요소 항목 등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③ 「농어촌정비법」,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등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경관계획

- 「농어촌정비법」과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에 의한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2009년 작성됨
- 농어촌 경관계획은 대상지를 입지적 특성에 따라 도시근교 농어촌

경관, 산간부 또는 원격지 농어촌 경관, 평야부 농어촌 경관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관유형별로는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자연경관으로 구분하였음

- 농어업경관은 경작지경관과 농어업생산시설경관으로 구분되며, 경작지경관은 농경지의 계절에 따른 변화특성을 고려하고, 농어업생산시설경관은 다양한 인공시설이 주변의 자연환경 및 농경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제시함
- 자연경관은 산림경관, 자연생태경관, 하천경관으로 구분되며, 산림경관은 식생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경관립 및 지형의 보전·관리 방안, 자연생태경관은 농어촌지역의 개발과정에서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되는 정비방안, 하천경관은 수역과 그 주변지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적·경관적 기능이 지속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 생활경관은 건축경관, 가로경관, 주거경관, 외부공간경관, 기타 시설물경관, 색채경관 등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제시함

[표 3-7]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그리고 농어촌 경관계획의 비교

구분	도시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농어촌 경관계획
기본 원칙	- 시·군관할구역의 경관의 보호 및 형성하여 지역의 이미지 개선, 경쟁력 증진 및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함	- 삶의 질을 높이고,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을 제고하며, 총체적이고 실행가능한 계획	- 농어촌지역의 생산조건이 경관과 조화되도록 고려하여 농어촌 경관 요소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함
구분 요소	- 보전대상지 - 개선대상지	- 경관구역 - 경관축 - 경관거점	- 도시근교 농어촌 경관 - 산간부 또는 원격지 농어촌 경관 - 평야부 농어촌 경관
고려 사항	- 경관유형별 특성화 - 토지이용계획 - 경관중점관리지역 - 랜드마크 형성 및 조망연출 - 자연을 도입한 공간 - 건축물 디자인과 야경 - 색채 - 가로경관 - 공원, 녹지 경관 - 역사문화 유적지 - 옥외시설물 및 광고디자인 체계 - 예술품 설치 가이드라인	- 건축물 - 옥외광고물 - 공공시설물 - 색채 - 야간	- 농어업경관 (경작지경관, 농어업생산시설경관) - 자연경관 (산림경관, 자연생태경관, 하천경관) - 생활경관 (건축, 가로, 주거, 외부공간, 기타시설물, 색채)



- 농어촌 관련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요령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자원을 세분화하고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으나, 관련법에 의한 사업추진시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전 국토에 걸친 농어촌경관을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2)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수립 사례

### ① 도시기본계획 내 경관계획 수립 사례 : 춘천시

- 춘천시는 경관유형을 산악, 평야, 수변, 도로, 자연취락지, 산업, 시가지, 가로시설물, 옥외광고물, 경관색채, 역사 문화경관 등 11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 경관유형별 관리방침

- 산악경관은 주요산지의 절대보전영역을 설정하여 보전영역 내에서의 건축 및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산지 연접부 및 완충지역에서는 경사지의 소규모 단지 건설시 바닥면적을 넓혀 저층 고밀화를 유도함
- 평야경관은 평야경관을 관통하는 도로축을 중심으로 일정폭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외관에 대한 관리를 엄격하게 함으로써 평야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한 연접부 저층개발을 유도하고, 기존지형을 살린 자연스러운 경지정리와 축사 및 창고의 색채를 주변과 조화를 통해 생산녹지 및 절대녹지 등의 보전지 확대로 시각적 개방감을 조성함
- 수변경관은 하천주변의 토지이용에 따른 하천정비, 천변건축물에 의한 차폐 완하 및 지붕선의 완하, 하천으로의 접근성 확보 측면에서 관리함
- 도로경관은 도로변 대규모 상업시설 및 건축물 정비를 통해 시각적 완화 처리하고, 자연지형을 이용해 도로경관의 녹화를 조성하며, 춘천의 진입시 상징성을 위한 진입부 및 상징가로를 조성하고, 경관을

고려한 도로변 입간판 및 간판시설의 정비를 통해 도로경관을 정비함

- 자연취락지경관은 취락지 건물들의 색채 및 외관, 건축선을 통일하고, 취락지내 국지적으로 입지하는 공장 등에 대한 경관관리를 실시하며, 취락지 내 보행도로의 정비 및 가로의 녹지화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지 내 쌈지공원조성 및 식재에 의한 자연적인 경관연출에 중점을 둠
- 산업경관은 공단 조성시 주변 환경 및 배후주거지 등을 고려한 입지 선정 및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이 가능한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함
- 시가지경관은 시가지경관, 공동주택경관, 상업지경관, 공원녹지경관, 공공시설경관으로 세분화하여 관리방침을 세움
- 가로시설물 경관의 주요색상은 주변의 시설물들과 조화하는 색상 및 형태를 선정하여 계획하고, 춘천시의 전통과 문화 모티브를 구현하며, 가로시설물에 연속성을 주도록 은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함
- 옥외광고물은 동일 재질 및 형태, 동일서체 등을 사용하여 통일성을 지향하며, 돌출간판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여 예술품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디자인 함
- 경관색채에 있어서 원경은 고층부 디자인의 단순화로 전체적 통일성과 안정감을 연출하고, 근경은 출입구 및 저층부의 변화로 보행자에게 즐거움을 부여하기 위한 색채를 사용함
- 역사문화경관은 역사문화경관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문화재 자체의 관리와 문화재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하여 관리함

□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경관유형 구분 및 관리방향의 제시

- 춘천시의 경관계획은 「국계법상」의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경관유형을 구분하여 경관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농어촌이 많은 지역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에 대한 구체적인 경관관리방향은 부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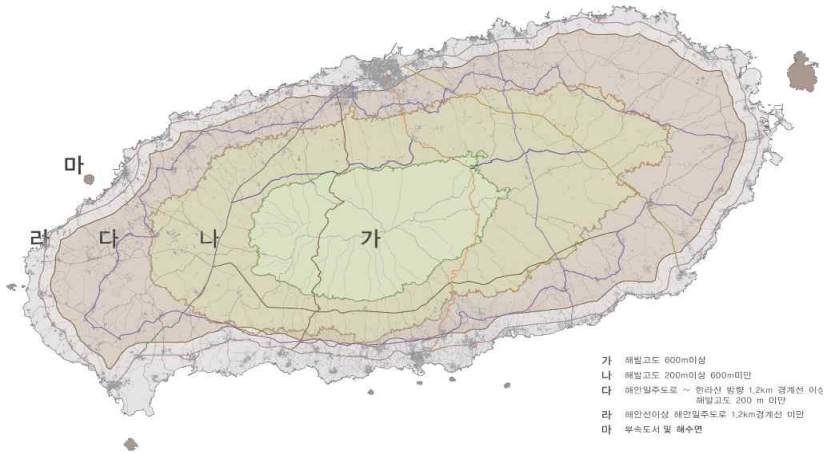
②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 사례 : 제주도

□ 제주도 경관관리계획 개요

- 제주특별자치도는 경관 및 관리계획수립을 위한 경관단위로 제주의 자연경관현황 및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기본경관단위’와 주요 경관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경관단위’로 구분함. 기본경관단위는 총 5개 단위로 분류되며, 특정경관단위는 총 4개의 단위로 분류되나 향후 여건변화에 따라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음
- 기본경관단위는 자연경관현황 및 지형적 특성에 따라 해발고도를 중심으로 구분하였는데, 제주전역을 총 5개의 경관단위로 나누었음

[표 3-8] 제주도의 기본경관단위 설정기준

경관단위	중심지역	설정기준
경관단위[가]	한라산	한라산-해발고도 600m이상
경관단위[나]	중산간	중산간-해발고도 200m이상 600m미만
경관단위[다]	도시지역	중산간·시가지-해안일주도로에서 한라산 방향 1.2km 경계선 이상 해발고도 200m미만
경관단위[라]	중산간·해안·시가지	중산간·해안·시가지-해안선으로부터 해안일주도로 1.2km 경계선
경관단위[마]	해안도시지역	부속도서 및 해수면



[그림 3-7] 기본경관단위에 따른 관리지역 구분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pp.6

□ 기본경관단위별 관리방향의 주요내용

○ 경관단위[가]

-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절대보전구역의 자연환경 보전

○ 경관단위[나]

- 제주도 고유의 자연경관 원형지로, 대상지역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곳자왈, 오름밀집지역, 목초지 등의 보존
-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훼손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자연자원 보존을 위한 경관심의대상 구역 지정
-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연경관지역으로 자연적 랜드마크인 오름 자체의 보존, 오름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자연지형, 원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높이 기준 제안
- 이용량이 높은 주요 도로 경관성 향상

○ 경관단위[다]

- 곳자왈 등 제주 특유의 자연자원 보존과 거주민의 생활관습을 배려한 양호한 생활환경과의 조화
- 해당지역 거주민 공통의 자산으로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양호한 자연경관의 보존 및 형성 필요
- 고유의 자연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건축물의 고도기준 제안 및 한라산과 해안으로의 전망을 고려한 인공구조물의 좌향, 개방정도,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마감재 사용 권장
- 주요 도로 주변 경관성 향상

○ 경관단위[라]

- 곳자왈 등 자연자원의 보존과 한라산과 해안으로의 전망을 고려한 인공구조물 좌향 권장
- 고유의 자연지형 보존을 위한 부지조성의 형상, 절성토량, 건축물

의 고도기준 제안 및 과도한 매립금지, 해안선에 연접한 자동차도로 개설 금지

- 일주도로변 식재방법 개선 등 경관성 향상

○ 경관단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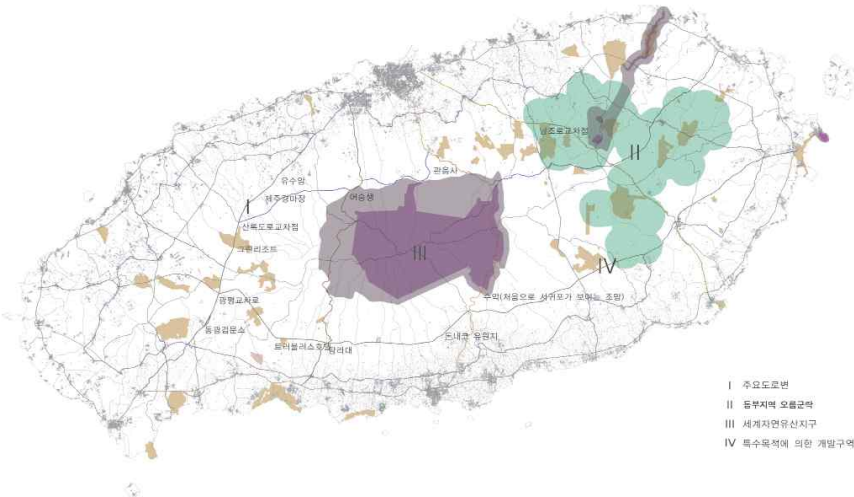
- 외부로부터의 진입 시 경관성을 고려한 고도제한, 개방, 재료, 색채, 형태 제안

- 해안마을 특성, 해안변 경관, 거주민의 주요 생업활동 등을 고려한 지침 제안

- 해수면에 축조되는 인공구조물의 경관관리

□ 지역특성별 경관단위 관리방향의 주요내용

○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형특성별 기본경관단위’와 함께 제주만의 자연경관 특성, 역사·문화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목표에 따라 ‘특정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임



[그림 3-8] 제주도의 특정경관단위 구역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pp.7

- 특정경관단위는주요 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등 4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 주요 도로변
    - 해발고도 200~600m사이의 주요간선도로-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번영로, 남조로-의 경계로부터 1.2km 구역을 경관중점관리영역으로 지정하여 조망경관을 조망유형별로 체계적으로 관리
  - 동부지역 오름군락
    - 오름 자체의 개별적 관리는 물론 오름과 오름 사이지역, 오름 주변 지역을 개발로부터 엄격히 보호하여 제주원풍경을 지속적으로 관리
  - 세계자연유산지구
    -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 등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지구의 보존·활용 세부사업 시행 및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경관관리
  -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
    - 관광사업대상지 및 대규모 선도사업 대상지, 투자유치구역의 개발에 의한 생태 및 경관훼손을 사전 방지
- 경관심의 및 경관관리지침에 의한 경관관리
- 특정경관단위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국계법」에 의거하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전에 경관심의를 진행함
  - 도시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안에서 개별 건축허가 등 축조행위는 경관심의를 제외함
  - 2차선(15미터) 이상 도로개설 및 그 부대시설에 관한 사항(가로수 식재, 교량, 옹벽설치 등), 도로확장 사업을 포함하여 경관심의 수행

[표 3-9]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등급	허용범위	비고
1등급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금지	· 해안선 주변(해안선에서 50m이내)은 농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해수욕장부지내는 탈의장, 샤워장, 화장실 등 해수욕을 위한 부대시설은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 기생화산이 아닌 지역에서의 재해복구용 및 공공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높이 5m(1층)이하 설치 허용
2등급	시설물 높이 9m(2층) 이하 시설물 길이 90m 이하	· 사찰 등 전통건축물의 높이는 12m 이하로 하되, 1층으로 제한 · 기생화산지역내에서는 경작지에 한하여 농·임·축·수산업용 시설로서 높이 5m(1층) 이하만 허용하고, 타목적으로의 토지형질 변경은 금지
3등급	시설물 높이 12m(3층) 이하 시설물 길이 12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4등급	시설물 높이 15m 이하 시설물 길이 150m 이하	· 2층 이하의 농·임·축·수산업용시설(생산물의 유통·가공시설 포함)은 시설물 길이 제한에서 제외
5등급	개별법 적용	·개별법 적용

□ 지역특성에 따른 권역구분 및 관리계획과 심의를 통한 경관관리

- 제주시는 「경관법」에 근거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경관특성 분석을 토대로 제주시만의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하였음
- 특히 관리대상을 경관특성에 기반하여 관리방법에 따라 구분하고, 「국계법」에 의한 관리계획, 「경관법」에 의한 심의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경관관리 효과를 얻고 있음

③ 농어촌정비사업 내 경관형성계획 수립 사례 : 태안, 강릉, 예산, 광양

□ 경관형성계획 수립지역별 계획개요

- 본 연구에서는 태안, 강릉, 예산, 광양 등 농어촌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경관계획을 조사함
- 조사한 대상지의 경관형성계획은 크게 경관계획의 개요, 현황조사, 기본구상, 경관형성계획 및 실행방안으로 구성됨

[표 3-10] 경관형성계획 수립 사업지역별 계획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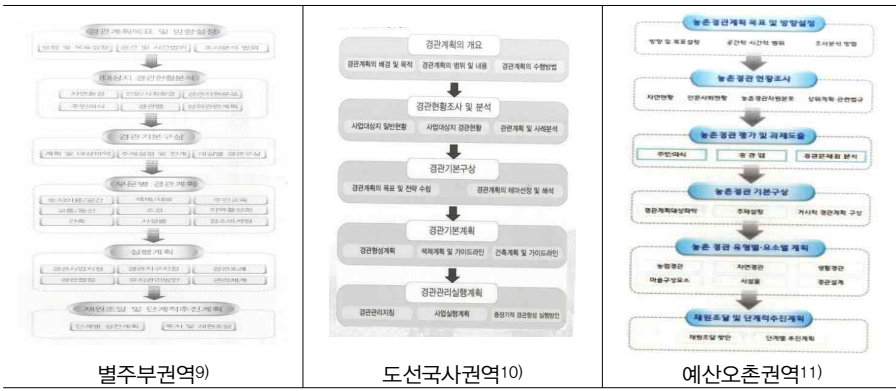
구분	태안 별주부권역 (2007)	강릉 소금강권역 (2009)	예산 오촌권역 (2012)	광양 도선국사권역 (2012)
경관계획의 개요				
배경 및 목적	●	●	●	●
범위 및 내용	●	●	●	●
접근방법	●	●	●	●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일반현황	●	●	●	●
권역 경관현황조사 및 분석	●	●	●	●
관련계획 및 사례 검토	●	●	●	●
경관기본구상				
목표 및 기본개념설정	●	●	●	●
경관기본구상	●	●	●	●
유형별 경관형성 방향	x	x	● (경관관리 단위)	●
경관형성계획				
경관형성계획의 기본방향	●	●	●	●
권역별 경관형성계획	x	x	●	●
색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	●	●	●
건축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	●	●	●
외부공간조경계획 및 가이드라인	●	●	●	●
세부사업별 경관형성계획	x	x	●	●
경관형성·관리 실행계획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	●	●	●
실행계획의 추진	●	●	●	●
단계별 경관형성 실행계획	x	x	●	●
주민참여에 의한 경관관리방안	●	●	●	●

□ 지역적 차별성이 없는 농어촌경관계획 구성과 내용

- 도시 차원의 경관 요소와 농촌경관계획에서 다루는 경관 요소간의 차별성 부재
  - 농어촌은 도시와 다른 규모와 특징적인 경관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경관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내용상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움
- 서로 비슷비슷한 구성과 내용의 경관계획 수립



- 주요한 경관 요소, 공간적 특성과 스케일이 서로 다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방식의 접근으로 지역적 차별성이 없이 비슷한 내용의 경관계획 구성 및 내용
- 일반적으로 경관형성계획의 내용은 1.경관계획목표 및 방향설적, 2. 대상지 경관현황분석, 3. 경관기본구상, 4. 경관기본계획, 5. 실행계획 등 동일한 내용으로 수립됨



[그림 3-9] 경관형성 계획의 일반적일 구성과 프로세스

- 경관계획의 미래상과 경관개념 상의 차별성을 찾기가 어려움
  - 지역 특성에 따른 명확한 미래상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부재함
  - ‘자연경관이 빼어난’, ‘전통문화가 살아있는’, ‘삶이 녹아있는’ 등의 모호하고 경관관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모호한 개념의 미래상을 제시하여, 지역간 차별성이 부족함

□ 관련 계획 및 사업에 대한 검토와 연계 부족

- 국토차원, 도차원 계획에 대한 검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권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한 검토와 상호연계는 부족한 실정임

9) 한국농어촌공사(2007) 별주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태안군, pp.9  
 10) 한국농어촌공사(2012)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광양시, pp.6  
 11) 한국농어촌공사(2012) 예산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예산군, pp.8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사업계획 초기부터 대상 권역에 대한 공간 및 경관구조 분석 및 경관형성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나, 사업계획이 완료되어 중점사업이 선정된 후 경관형성계획을 수립하여 일부사업에 대한 미관계획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함
- 경관형성사업 중심의 계획내용
- 경관형성계획의 내용은 권역 전체에 대한 경관상 정립과 경관관리방안 보다 중점사업들에 대한 경관설계가 주를 이룸
  - 주로 주민센터나 체험관의 설립 등 관광시설과 연계한 건축물과 쉼터 등의 조경시설에 대한 계획안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이때에도 권역의 경관차원에서 건물의 위치선정, 배치와 등에 대한 기본 계획은 부재한 상황임
- 종합적인 경관관리에 대한 내용 부재 및 일부 요소에 한정된 관리지침
- 지역의 특성을 대표하는 경관 요소의 도출과 보전할 부분, 관리할 부분, 정비할 부분 등에 대한 내용이 미비하며 사업시행을 통해 새롭게 형성하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그림 3-10] 권역별 건축계획

12) 한국농어촌공사(2012)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광양시, pp.190~ 191

13) 한국농어촌공사(2012) 예산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예산군, pp.135

- 실제로 농어촌의 경관적 특성을 대표하는 기존의 경관 요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미비하고, 손쉽게 실행할 수 있는 경관 요소의 보전과 활용에 대한 계획내용이 미흡함
- 기존의 경관자원에 대한 고려보다는 새로운 시설의 조성이나 형성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는 신규계획에 치중하는 실정임
- 무엇보다 공간구조, 경관구조를 고려한 공간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미흡하며 외관의 치장에 치우친 요소별 관리지침을 제시함
- 권역의 경관상 제시를 위해서는 권역의 공간구조와 경관구조에 대한 현황분석이 우선되고, 권역전체, 주요공간별, 요소별 경관관리지침이 스케일에 따라 제시되어야 하나, 권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관상 제시가 미흡함
- 전체경관에서 시각적인 요소로 색채, 건축, 조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잘 다루어지고 있으나 이것들과 연계한 권역별, 거점별, 요소별에 대한 접근은 미비함

[표 3-11] 경관형성계획 목차 및 내용

구분	별주부권역 (2007)	소금강권역 (2009)	예산오촌권역 (2012)	도선국사권역 (2012)
경관형성계획 기본방향	기본방향	기본방향	기본방향	기본방향
마을별 경관형성계획	X	X	소권역별	마을별 경관형성계획
			경관축	
			경관거점	
			경관중점관리 구역 종합	
색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색채 및 재료	색채계획	색채	색채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건축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건축경관	건축계획	건축	건축경관계획 및 가이드라인
조경계획 및 가이드라인	공간별 조경계획	외부공간 조경계획	조경	조경계획 및 가이드라인
세부사업별 경관형성계획	X	X	사업별 경관형성 계획 및 지침	세부사업별 경관형성계획

구분	내용
목적	• 건축설계시범지구 공동주택의 콘크리트외장구조(장기적 활용성 고려) • 현대적 외장구조(단열성 등)로 보강된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시면(외벽)이 수직면의 외장구조에 의해, 시면(외벽)이 수평면의 외장구조에 의해
대상	• 별도외장구조의 노출(나무 등) 부분(외장 포함)
기준	• 외장 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 환경 • 외장, 누락(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기준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기준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별주부권역(14)

구분	내용
목적	• 건축설계시범지구 공동주택의 콘크리트외장구조(장기적 활용성 고려) • 현대적 외장구조(단열성 등)로 보강된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시면(외벽)이 수직면의 외장구조에 의해, 시면(외벽)이 수평면의 외장구조에 의해
대상	• 별도외장구조의 노출(나무 등) 부분(외장 포함)
기준	• 외장 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 환경 • 외장, 누락(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기준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기준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도선국사권역(15)

구분	내용
목적	• 건축설계시범지구 공동주택의 콘크리트외장구조(장기적 활용성 고려) • 현대적 외장구조(단열성 등)로 보강된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시면(외벽)이 수직면의 외장구조에 의해, 시면(외벽)이 수평면의 외장구조에 의해
대상	• 별도외장구조의 노출(나무 등) 부분(외장 포함)
기준	• 외장 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 환경 • 외장, 누락(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기준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기준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 외장재료의 색상, 질감, 치장(재질) 사용(재료)

예산오촌권역(16)

[그림 3-11] 지침 및 가이드라인

구분	색상	색상	색상	색상
주요색	N2	N3	N4	N5
보조색	N6.5	N9.5		
중간색	2.31R4.9	3.15G.9	10.1R6.5	2.31Y.7
색상	1.4R2.4	10.1R2.2	2.31Y.2	6.1Y.3
색상	2.31R.7	3.15G.3	N6.5	N9.5
색상	10.1R6.3	10.1R6.3	2.31Y.4	3.15G.7
색상	10.1R2.5	10.1R6.7	3.15G.2	3.15G.7
색상	10.1R6.3	10.1R2.5	3.15G.2	3.15G.4

별주부권역(17)

구분	색상	색상	색상	색상
주요색	N2	N3	N4	N5
보조색	N6.5	N9.5		
중간색	2.31R4.9	3.15G.9	10.1R6.5	2.31Y.7
색상	1.4R2.4	10.1R2.2	2.31Y.2	6.1Y.3
색상	2.31R.7	3.15G.3	N6.5	N9.5
색상	10.1R6.3	10.1R6.3	2.31Y.4	3.15G.7
색상	10.1R2.5	10.1R6.7	3.15G.2	3.15G.7
색상	10.1R6.3	10.1R2.5	3.15G.2	3.15G.4

도선국사권역(18)

구분	색상	색상	색상	색상
주요색	N2	N3	N4	N5
보조색	N6.5	N9.5		
중간색	2.31R4.9	3.15G.9	10.1R6.5	2.31Y.7
색상	1.4R2.4	10.1R2.2	2.31Y.2	6.1Y.3
색상	2.31R.7	3.15G.3	N6.5	N9.5
색상	10.1R6.3	10.1R6.3	2.31Y.4	3.15G.7
색상	10.1R2.5	10.1R6.7	3.15G.2	3.15G.7
색상	10.1R6.3	10.1R2.5	3.15G.2	3.15G.4

예산오촌권역(19)

[그림 3-12] 권역별 색체계획

- 농경지 및 농업시설과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계획이 부재함
  - 농어촌 경관의 특징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농경지 및 농어업 등 생산기반시설과 관련된 시설물(비닐하우스, 축사 등)에 대한 경관관리 방향과 지침이 부재한 상황임

14) 한국농어촌공사(2007) 별주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태안군, pp.115  
 15) 한국농어촌공사(2012)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광양시, pp.194  
 16) 한국농어촌공사(2012) 예산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예산군, pp.146  
 17) 한국농어촌공사(2007) 별주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태안군, pp.134  
 18) 한국농어촌공사(2012)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광양시, pp.179  
 19) 한국농어촌공사(2012) 예산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예산군, pp.134

### 3) 농어촌 경관 관련 사업 추진현황

#### ① 농어촌 사업추진 관련 예산

##### □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식품분야 예산 비중

- 국가 전체 예산 약 325조원 중 농림수산식품분야(외청포함) 예산은 약 18조원으로 전체예산의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산은 약 15조원으로 4.7%를 차지함

[표 3-12] 농림수산부분 예산

(단위: 억원)

연도별	국가전체 예산	농림수산식품분야			
		총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2011	3,091,000	176,358	148,644	10,917	16,742
2012	3,254,000	181,322	154,083	8,724	17,951

\* 출처 : 농림수산사업정보시스템(2012.8. 기준)

##### □ 농어촌의 물리적 환경 관련 예산

-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총 예산은 약 15조 4천억원으로, 이중 사업비로 약 14조 9천억원, 기본 경비로 4천억원이 편성됨
- 사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업체질강화 18.4%, 농업생산기반조성 18.0%, 식품업 8.2%, 양곡관리 및 농산물유통 2.4%, 수산업 및 어촌 5.1%이며, 2011년 대비 총 금액은 3.5% 증가한 반면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은 2.7% 감소하고 농업생산기반은 1.5% 증가함
-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은 농업·농촌의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농업생산기반과 관련이 높으며, 수산업 및 어촌사업과 관련됨

[표 3-13] 농림수산식품 사업 및 경비

(단위: 억원)

연도	총지출 (예산+기금)	사업비									기본 경비	
		농업·농촌							수산업·어촌	식품업		기타 사업비
		총	농업 체질강화	농가소득 ·경영안정	농촌개발 ·복지증진	양곡관리 ·농산물유통	농업 생산기반	총				
11	148,644	121,980	23,209	24,763	16,536	31,130	26,342	12,988	7,133	1,951	4,593	
12	154,083	127,210	27,632	19,852	16,097	32,547	31,082	13,633	6,881	1,696	4,662	

\* 출처 : 농림수산사업정보시스템(2012.8. 기준)

- 2012년도 예산 일반지출은 약 10조 2천억원, 기금 일반지출은 4조 천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투자계정, 용자 및 유가완충계정),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지역혁신사업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양곡관리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분됨
- 농어촌 물리적인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농어촌 구조개선특별회계(농특) 약 6조 천억원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 1조 6천억원, 총 7조 7천억원이 지원되며 농특으로 경관보전 직접직불제, 농산어촌지역종합개발 등과 광특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이 지원됨
- 농산어촌개발 지원에서 지역 경관개선 관련 예산은 2011년도에는 482억원, 2012년도에는 870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일반농산어촌개발 광특지역계정으로 일반농산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기반 구축비로 9천억원 중 지역경관개선에 850억원(10%), 광특제주계정으로 200억원 중 지역경관개선에 18억원(10%)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4] 농림수산식품 예산 및 기금 (단위: 억원)

예산 일반지출			기금 일반지출		
	11예산	12예산		11예산	12예산
총	95,328	102,757	총	53,316	51,326
일반회계	16,575	7,51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5,859	25,85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4,566	61,773	농지관리기금	10,967	10,96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22	1,323	축산발전기금	6,415	6,415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17,010	16,600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기금	8,795	8,795
양곡관리특별회계	13,890	14,28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자금	4,134	4,13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866	1,255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561	1,561
-	-	-	양곡증권정리기금	6,215	6,215
-	-	-	수산발전기금	6,426	6,426

※ 출처 : 농림수산사업정보시스템(2012.8. 기준)

## ② 농어촌 관련 사업별 주요 내용

### □ 경관보전직접직불제

####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 경관보전직접직불제는 2011년도 대비 45.4%정도 예산이 감소하였으며, 사업량은 13,741ha에서 15,560ha(경관: 7,560, 준경관: 8,000)로 증가함

[표 3-15]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이후
합 계	13,750	22,363	19,840	10,827	26,971
보 조	9,640	15,679	13,903	7,579	18,880
지방비	4,110	6,684	5,937	3,248	8,091

※ 출처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 ○ 사업내용<sup>20)</sup>

- 도입목적: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경관보전직접직불제도 도입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농촌경관의 질을 일정수준으로 관리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 및 농촌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수행시기: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아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
- 근거법: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의 농업인 소득지원에 의거하여 시행되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0조에 근거를 둠
- 사업추진절차: 경관보전직불추진위원회 신청 → 전문가 의견 및 적격심사 → 협약 → 경관작물 재배관리 → 보조금 지급

#### ○ 사업대상지역 선정요건

- 농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농촌경관을 유지·개선하고, 도·농교

20) 변혜선 외, 2009,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충청개발연구원, pp.13~14

류 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 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 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선정 제외 대상: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 안의 지역으로 3년 연속 경관보전직불제 참여가 어려운 토지. 다만, 보조금 지급개시년도부터 사업기간동안 보전이 가능하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 포함 가능함
- 보조금 지급요건: ① 경관보전직불제는 1년단위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매년 신청해야함 ② 경관보전직불제 협약을 체결한 자는 사업기간동안 협약에 명시된 토지를 대상으로 경관작물을 식재하고, 성실하게 재배·관리해야 하며, 작물 수확 후 농지정비를 실시하고, 경작지 주변의 경관개선을 위한 공동작업을 수시로 시행해야 함 ③ 경관작물은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상기작물 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와 사전 협의함

□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표 3-16] 공사 참여현황

년도별 (착수기준)	대상권역		공사수탁권역				
	사업유형	권역수	기본 계획	세부 계획	사업시행		
					소계	일괄	감리
계	계	310	20	4	129	127	2
	읍면소재지	110	11	1	30	29	1
	권역단위	179	9	3	99	98	1
	신규마을	24	-	-	-	-	-
'11년	<소계>	128	10	2	51	51	-
	읍면소재지	38	4	-	6	6	-
	권역단위	90	6	2	45	45	-
'12년	<소계>	158	10	2	78	76	2
	읍면소재지	72	7	1	24	23	1
	권역단위	86	3	1	54	53	1

\* 출처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표 3-17]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09년까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안)
합 계	-	1,390,927	1,330,283	1,329,210	1,324,444
보 조	-	973,649	931,198	930,447	927,111
지방비 등	-	417,278	496,214	398,763	397,333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 (2012)

○ 사업내용<sup>21)</sup>

- 목표: 농산어촌지역 주민의 소득과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과 농산어촌의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색 있는 발전을 도모
- 근거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지역개발계정사업의 세출), 제35조의2(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 제40조(포괄보조금의 지원),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시행), 제39조(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 「농어촌정비법」 제52조(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원칙) 내지 제71조(기술지원 등) 등

○ 추진방향

- 자연마을↔소생활권↔읍·면소재지↔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주민 정주체계를 감안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종합적·체계적 정비
- 농어촌 서비스 기준 등을 감안한 지역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 추진
- 지역의 발전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네트워킹 지원 강화, 마을단위 등 소규모 소득지원사업 확대 및 도시와 농어촌을 연계한 통합적인 개발과 기존시설의 활용도 제고
- 거점권역 집중개발 등을 통해 사업효과 제고 및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유사사업 통합 추진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

21) 농림수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2011),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2)

○ 주요사업

- 기초생활기반 확충: 도로, 상하수도, 주택 등의 인프라 구축, 주거환경정비, 운동휴양시설 등
- 지역소득 증대: 농특산물 유통가공시설, 생태학습장 등의 농산어촌체험시설, 농어업기반시설 등
- 지역경관 개선: 지붕담장정비, 경관수목 식재, 마을 보호수 정비, 경관주택 등의 인프라 시설 등
-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훈련, 홍보·마케팅, 귀농P/G지원, 기본계획수립비 등의 부대비 및 S/W 사업 등

□ 농촌마을종합개발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

[표 3-18] 사업 추진 현황

년도별 (착수기준)	기본계획	세부설계	사업시행			비고
			합계	公社위탁	시·군시행	
계	292권역	257권역	301권역	224권역	77권역	
'05년	36권역	33권역	36권역	17권역	19권역	'09년 준공
'06년	20권역	15권역	20권역	12권역	8권역	'10년 준공
'07년	40권역	36권역	40권역	27권역	13권역	'11년 준공
'08년	40권역	34권역	40권역	31권역	9권역	'12년 준공 예정
'09년	40권역	34권역	40권역	31권역	9권역	
'10년	45권역	37권역	45권역	39권역	6권역	
'11년	71권역	68권역	80권역	67권역	13권역	

※ 출처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표 3-19]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09년이후
합 계	141,075	89,798	163,845	245,692	5,430,291
국 비	115,520	73,068	132,271	174,017	3,829,553
지방비	25,555	16,730	31,574	71,675	1,600,738
기본계획 등	13,300	6,150	5,975	6,775	94,500
- 국 비(농특)	13,300	6,150	5,975	6,775	94,500
사업시행	127,775	83,648	157,870	238,917	5,335,791
- 국 비(균특)	102,220	66,918	126,296	167,242	3,735,053
- 지방비	25,555	16,730	31,574	71,675	1,600,738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2)

○ 사업내용<sup>22)</sup>

- 도입목적: 동질성을 갖는 인근 마을을 소규모 권역단위로 연계하여 생산·전원주거·휴양·환경 관광활동 등 다원적 기능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행시기: 농림수산식품부의 주관아래, 2004년부터 향후 10년간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1,000개 소권역을 우선 지원
- 근거법: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8조에 근거를 둠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 작성 및 사업신청 → 예비타당성조사 → 대상지선정 → 기본계획수립 → 시행계획수립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정산

○ 사업대상지역 선정요건

- 「농어촌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 대상범위내의 지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농지법」, 「산림법」, 「자연공원법」 등 타법에 의하여 개발에 제약요인이 없는 지역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 등으로 지역주민간 동질성과 유대감을 가지며, 인근 마을간 연계로 소규모의 권역을 이룰 수 있는 지역
- 주민의 개발의지가 높고, 마을개발에 대한 주민자체 결의가 이루어진 지역
- 자연환경이 수려하고, 환경·생태자원 보존이 잘되어 있어 농촌 고유의 어메니티 보존·유지가 가능한 지역
- 인근지역에 파급효과가 커 향후 지역발전의 주도적 역할이 예상되는 지역

---

22) 변혜선 외, 2009,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충청개발연구원, pp.22~23

○ 주요사업

- 지역설정에 따라 기초생활시설, 소득확충 및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는 소권역별 특성화시설 설치를 지원
- 소득확충사업 : 특산물판매장, 관람기초시설, 체험시설 등
- 권역특성사업 : 마을소공원, 관광안내소, 공동활용시설 등
- 기초생활시설 :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
- 소권역별 잠재재원을 발굴·활용하여 향후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정비 추진
- 기본유형을 토대로 다양한 개발유형을 복합적으로 선택 추진
- 기본유형 : 전통보전, 친환경육성, 자연상태보전, 기초경관정비
- 복합유형 : 농촌관광기반, 지역특성화, 기초생활복지

□ 농어촌 경관계획

○ 사업현황

[표 3-20]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연도별 경관계획 시행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계
농촌마을 총 권역 수	76	20	40	40	45	80	301
경관계획반영 권역	3	1	16	12	10	18	60
시행 주체	공사	3	1	16	12	6	56
	민간	-	-	-	-	4	4

\* 출처 :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www.ekr.or.kr)

○ 사업내용<sup>23)</sup>

- 추진방향 : 농업, 자연, 생활경관 등을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하기 위함, 농촌다움과 쾌적성을 보전 유지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 근거법 : 「경관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15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23) 한국농어촌공사, <http://www.ekr.or.kr/>

- 사업내용 : 일반환경조사 및 농어촌 경관자원 분포조사, 경관주제 설정, 경관유형에 대한 경관계획, 마을구성요소 경관계획, 시설물·건축물·색채계획, 농어촌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경관협약의 적용 및 운영방안 제시

□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 사업현황 및 예산

[표 3-21] 참여현황

구 분	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사업량(마을)	850	190	84	90	78	408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2)

[표 3-22] 사업현황

계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15	-	-	4	4	50	87	34	8	68	56	59	60	13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2)

[표 3-23]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계	255,200	38,000	16,700	18,100	15,600	166,800
보 조	127,600	19,050	8,362	9,030	7,840	83,318
응 자	-	-	-	-	-	-
지방비	127,600	18,950	8,338	9,070	7,760	83,482
자부담	-	-	-	-	-	-

※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2012)

○ 사업내용<sup>24)</sup>

- 사업목적 :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외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증진 도모,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 가치를 증진시키고 농촌지역 공동체 형성 및 복원,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거점으로 활용

24) 변혜선 외, 2009,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충청개발연구원, pp.64~65

- 근거법: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등

○ 주요사업

- 농촌체험기반시설 : 체험농장조성, 산책로, 캠핑장 등
- 생활편의시설 : 마을안길정비, 마을회관개보수, 민박, 정자, 주차장 등
- 마을경관조성 : 화단꽃길, 흙담·돌담조성, 빈집정비 등
- 기타S/W관련분야 : 컨설팅, 설계비, 주민교육훈련, 홍보물제작 등

□ 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현황 및 예산

[표 3-24] 어촌개발사업현황 (단위 : 권역수(완공권역수))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30 (160)	3(2)	7(6)	4(3)	4(2)	17 (13)	13 (10)	10 (7)	87 (57)	22 (15)	47 (32)	16 (13)

\* 출처 :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연구

\* 160개 완공권역에는 '08완공예정 8개권역 포함

[표 3-25] 어촌개발사업 총 사업권역

구분	총	합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량(권역)	232	176	152	(17)	24	(20)

\* 출처 :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연구

\* 주1) ( )내는 계속사업 권역수인 주2) 2007년도 24권역 중 1단계 미착수권역은 8개소임

[표 3-26] 어촌개발사업 년차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합계	2005년까지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비	879,531	601,070	487,885	38,646	35,750	38,789
국고	540,408	345,485	254,937	30,917	28,600	31,031
지방비	300,444	230,829	209,901	7,315	6,718	6,895
자담	38,679	24,756	23,047	414	432	863

\* 출처 :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연구

○ 사업내용<sup>25)</sup>

- 도입목적: 어촌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시설을 개선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소득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어가소득을 도시근로자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근거법: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농어촌정비법」 제66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 사업추진절차: 지원대상 마을 신청 → 지원대상 마을 선정 및 전문가 공고·선정 → 마을별 전문가 지정·협약 체결 → 전문가 지원 활동 실시 → 활동보고서 제출 → 활동 모니터링 실시 및 간담회

○ 주요사업

- 생산기반시설 : 어선계류시설, 해안시설
- 소득기반시설 : 육상수산시설, 유통시설, 어촌관광기반시설
-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시설 : 어촌환경시설, 복지시설

□ 포괄보조금사업<sup>26)</sup>

○ 개념

- 재원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시도별로 부여된 한도 내에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
- 종전 지역계정의 200여개 세부사업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포괄보조금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지자체 자율적으로 발

25) 제주발전연구원(2009) 어촌종합개발사업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pp.7~10

26)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pp.1~15

굴·예산신청 가능

○ 사업추진절차

-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 계획수립 → 계획집행, 사업관리, 자율평가 → 평가

○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포괄보조금사업 현황

-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13개)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농어촌테마공원조성, 농공단지조성, 어촌어항관광개발, 복합남시공원조성, 완전미브랜드파워 현대화시설설치, 한우명품화, FTA대비 축산경쟁력제고,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건립, 향토산업육성, 특화품목육성, 김육상채묘 및 냉도망보관, 고효율 어류사료생산 공장건립
- 농어업기반정비(13개) : 발기반정비, 대구획경지정리, 농업생산기반종합정비, 농업사관학교건립, 전북실용농업교육센터건립, 씨감자생산기반조성, 소형어선인양기설치, 지방어항,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양식어장관리, 인공어초, 수산종묘관리, 내수면어업생산시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5개) : 소도읍육성, 전원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 거점면소재지 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 산촌생태마을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기계화정작로 확포장, 지표수보강개발, 소규모 용수개발, 신활력지역지원, 주거환경개선, 개축지구지원, 살기좋은지역·도시만들기

○ 포괄보조금사업별 세부계획

[표 3-27] 포괄보조금 세부계획

구분	목적	기본방향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주민 소득 및 고용기회 증대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li> <li>• 산업역량 S/W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정책수단을 효과적으로 연계</li> <li>• 농어촌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 지원체계 구축</li> <li>• 지역 R&amp;D 및 식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국가 전체적인 R&amp;D, 식품시스템 등과 연계 강화</li> </ul>



<p>농어업 기반 정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개방화시대에 대외경쟁력 있는 고품질 농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 인프라기반을 구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역개발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업 생산기반정비 확충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개선계획에 따라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추진</li> <li>-지자체별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농어업 발전비전 및 목표에 따라 농어업기반정비계획을 수립 추진</li> <li>• 농어업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하여 사업효과가 조기에 달성되도록 추진</li> <li>-단위사업으로 추진한 발기반정비, 대구환경지정리 등의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수계 또는 권역단위로 지역실정에 맞게 package화하여 연계 추진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li> <li>-종자저장시설 신축 및 현대화하여 종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 및 저장관리 효율성을 증대</li> <li>-어항기반시설 정비는 완공위주의 집중투자로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분산투자에 따른 예산낭비 방지</li> <li>• 농어업 생산기반정비 관련 사업간 연계 추진으로 사업 효율화</li> </ul>
<p>일반 농산 어촌 개발 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농 산 어촌 지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 살기 좋은 농산어촌 공간을 조성하여 농어업인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의 균형 발전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농산어촌지역 공간을 종합적·체계적 정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역량강화</li> <li>-기반정비는 마을 -소생활권 -읍면소재지 -인근도시 등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li> <li>-삶의질 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기초생활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진</li> <li>-지역주체의 역량강화 및 시·군의 기획기능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확충</li> <li>• 기존의 계속사업지구는 기존의 계획에 따라 추진</li> <li>-주거환경개선, 개발촉진지구, 살고싶은지역만들기 등 지구지정을 받은 사업 등</li> <li>• 사업의 통합효과가 큰 분야에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추진</li> </ul>

□ 고창 경관농업특구사업<sup>27)</sup>

○ 일반현황

- 특구의 명칭: 고창경관농업특구(Gochang Scenic Agricultural Area)
- 특구의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공음면 선동리·예전리·용수리 일원 (선동리 925-1번지 외 3,889필지)

27) <http://www.mke.go.kr/sezone/szhtml/cf0003.htm>

- 특구의 면적: 6.8km<sup>2</sup>(207만평)

○ 사업예산

[표 3-28] 고창경관농업지특구예산

(단위 : 억원)

구분	총사업비	국비	도비	군비	농가부담
경관농업지구조성*	115	23	20	42	30
청정농산물 브랜드사업**	2	0.4	0.4	0.7	0.5
관광안내 시설물조성사업*	1.1	-	-	1.1	-
경관지구 축제활성화 사업*	21.5	4.2	3.8	7.9	5.6

\*사업시행기간 : 2005 ~ 2009년(5개년)

\*\*사업시행기간 : 2005년(1년)

※ 출처 : <http://www.mke.go.kr>

○ 경관농업특구 지정을 위한 특별법

- 「농지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자 특구지정 신청

○ 사업내용

- 경관농업지구 조성사업 : 계절별로 농업경관조성에 특성을 지닌 작목(보리, 메밀 등)을 선택하여 경관 농업탐방루트에 적정하게 조성하여 경관농업의 다원화, 복합화 추진

- 청정농산물 브랜드화사업 : 친환경 청정농산물 가공제품 상품 인증 표시제 도입

- 관광안내시설물사업 : 특구관광안내 조감도 설치 및 경관탐방 도로표지, 차로 관광객의 편의 도모

- 경관지구 축제활성화 사업 : 열기구를 이용한 경관농업조망시 설설치 등 4계절 관광자원화 추진으로 경관농업 이벤트를 확대발전

○ 모니터링 현황

- 사업완료 후인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청보리밭 축제를 개최하여 지역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있음

- 민간과 관이 협력하여 각종 볼거리, 먹을거리, 놀거리 등을 계획
- 관광객에 의해 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축제기간동안 고창군청의 인력이 동원되어 관리함

#### 4.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체계

##### 1) 중앙부처 및 공기업

######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에서 농어촌 경관과 관련되는 부서는 건축문화경관팀, 해양환경정책과, 도시정책과가 있음
  - 건축문화경관팀의 주요업무는 건축기본법, 경관법, 건축정책기본계획, 야간경관, 수변경관, DMZ경관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경관법, 건축정책기본계획 등 이며,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해양환경정책과는 해양환경정책업무를 총괄하며, 도시정책과는 국토계획법령 및 타 법령 협의 총괄,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국토계획법령(용도지역·지구·구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관한 사항을 주요업무로 함

###### □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어촌 경관과 관련되는 부서는 농어촌 정책국 내의 농어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어촌 산업팀가 있음
  - 농어촌정책과의 주요업무는 농어촌정책방향 수립,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 농어촌 정지법의 운용으로 활기찬 농어촌만들기 운동, 우리농어촌 운동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개발과의 주요업무는 농산어촌 개발 지원, 농어촌 뉴타운 조

성,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 농어촌 경관개선 종합대책으로 농어촌 마을 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경관보전직불제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농어촌 산업팀의 주요업무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협의,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도농교류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에서 농산어촌 지역과 관련되는 부서는 지역발전정책국의 지역경제과, 지역발전과, 지역녹색성장과가 있음
  - 지역경제과의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지원, 마을기업의 육성 추진, 지역플뿌리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이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발전과의 주요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정책 개발·연구,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수립, 도서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도로 수해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국가균형발전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지역녹색성장과의 주요업무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총괄지원, 명품 녹색길의 선정·인증 및 관련 종합정보망의 구축,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의 발굴·지원 및 지역 기획역량 강화의 지원 등이며, 녹색마을 조성사업,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 환경부

- 환경부에서 농산어촌 지역과 관련되는 부서는 녹색협력과, 자연정책과가 있음
  - 녹색협력과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와 지원을 주요업무로 함
  - 자연정책과의 주요업무는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 등 임

□ 기타

- 그 외 농촌진흥청의 국립농원과학원 농업환경부와 농어촌공사의 농어촌개발처에서 농산어촌 경관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농촌진흥청 농업환경부의 주요업무는 주요 강 유역 농촌어메니티 자원 발굴 및 수변공간 조성기술 개발, 농촌마을 어메니티 계획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연구, 농촌경관 보전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한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 농촌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환경자원 보전 및 활용 연구, 농촌체류 관광 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사업 경영전략 개발,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 농촌어메니티 특성화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현장기반 조성 연구 등 임
  - 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의 주요업무는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업무,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총괄 및 지도, 경관테마클러스터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평가,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계획수립 지원 등 임. 특히 농어촌개발처의 어촌개발과에서 농산어촌의 경관관련사업 등을 총괄하고 있음

## 2)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는 국토개발, 도시개발, 경관디자인에 관련된 각종 계획을 세우는 부서와 농산어촌 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
-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도시과 혹은 건축도시과의 경우 광역개발계획, 시군종합개발계획, 도시관리계획, 지역개발계획 및 경관형성 또는 공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반면, 농어업 정책과 혹은 농촌개발과는 농어촌발전계획,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농지전용 관련, 농정시책의 개발 및 조정과 같은 농어촌 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음
- 각 기초자치단체의 경관과 및 도시과 등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계획, 공공디자인 수립 등에 관련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나 농어촌의 경관 관련된 부분은 별도의 부서에서 다루지 않으며,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위한 사업 시행 및 수행은 주로 농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표 3-29] 지자체별 관련부서 및 업무내용(강원도와 춘천시를 예로)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자치단체	강원도		춘천시	
관련부서	건설방재국 지역도시과	농정산림국 농어업정책과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li> <li>•강원도광역권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li> <li>•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li> <li>•시군 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항</li> <li>•비도시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어업·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li> <li>•특화품목·향토산업 육성사업</li> <li>•강원농어업인대상제 운영</li> <li>•농정시책의 개발, 조정 및 총괄</li> <li>•농림수산부 소관 일반, 농특회계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과]</li> <li>•경관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li>•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li> <li>•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운영</li> <li>•공공디자인 시책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과]</li> <li>•도시기본계획 및</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관리 업무총괄, 전용허가, 협의, 신고, 일시사용, 용도변경승인(남면, 남산면),</li> <li>•농업진흥지역 관리</li> <li>•전용허가, 협의, 일시사용</li> <li>•용도변경승인</li> <li>•각종 농촌개발사업 시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지역개발계획에 관한 협의</li> <li>•경관형성사업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관리계획 수립</li> <li>•지구단위계획 수립</li> <li>•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li> <li>•택지개발사업 계획시행</li> <li>•공영개발사업 계획수립</li> </ul>	
자치단체	충청남도		서산시	
관련부서	건설교통항만국 건축도시과	농수산국 농촌개발과	건설도시국 도시과	주민지원국 농정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디자인 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li> <li>•공공디자인 조례 제정 및 운영</li> <li>•공공디자인 제도 개선</li> <li>•공공디자인심사위원회 운영</li> <li>•옥외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도시경관디자인 개발 업무</li> <li>•시·군 경관계획 승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보전 및 이용 계획 수립</li> <li>•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관리</li> <li>•농지전용 허가</li> <li>•농업기반시설 국·공유 재산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li> <li>•지구단위계획</li> <li>•개발행위(비도시지역)</li> <li>•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읍내, 석남지구/해미지구)</li> <li>•공공디자인, 경관 업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관리, 농지소유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li> <li>•농업진흥지역관리</li> <li>•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li> <li>•조건불리지역직불제 추진</li> <li>•경관보전직불제 추진</li> </ul>
자치단체	제주도			
관련부서	도시디자인본부 도시디자인단		농축산식품국 친환경농정과	
업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관리 및 심의</li> <li>•경관협정사업 발굴 및 추진</li> <li>•도시디자인 정책 수립</li> <li>•도시디자인사업 추진 및 자문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림축수산업발전계획 수립</li> <li>•농지 및 포괄보조사업 총괄</li> <li>•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발기반, 배수개선 등)</li> </ul>	

## 5. 소결

- 공간관리 법제도와 지원 중심의 법제도의 이원화 및 연계 부족으로 농어촌 경관관리의 한계
  - 농어촌 경관과 관련된 법제도는 규제 중심의 실행수단을 가지고 있는 공간관리 법제도와 농어촌 지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비 지원 중심의 농어촌 관련 법제도로 구분할 수 있음
  - 공간 관련 법제도는 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제도가 제정되어 있어 농어촌의 특성에 맞는 규제 수단의 보완이 필요하며, 농어촌 지원 중심의 법제도는 개발사업이 지원되는 일부 권역에만 해당되어 국토 전체의 농어촌 지역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 공간관리와 사업의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개별법에 의한 경관관리 수단의 한계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 : 농어촌 특성에 맞는 관련 기준이 미흡하고, 농지와 농업시설 등이 포함된 생산경관에 대한 관리방안이 미비함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한계 : 농어촌 경관의 특성을 고려한 지침이 부재하고, 관리수단과 연계한 실행력 확보가 어려움
    - 「건축법」에 의한 건축행위 및 건축물 관리의 한계 : 농어촌지역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경관사업의 한계 : 농가주택 및 공공시설, 공장, 도로 등이 포함되는 생활경관을 중심으로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어촌의 공간구조를 고려하여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력 확보가 어려움
- 농어촌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수립 지침의 부재와 종합적인 공간계획의 미비로 경관 관련 계획 수립의 한계



-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 기본경관계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 수립되는 경관형성계획 등 관련 계획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며, 「국계법」, 「건축법」 등 공간관리체계와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관 관련 계획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어려움
  -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에서는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방향만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확보하기 어려움
  - 「경관법」에 의한 기본경관계획 및 특정경관계획은 농어촌지역에 특화된 경관상을 정립하고 경관 요소 도출 및 종합적인 경관계획수단으로는 가장 적합하나,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국계법」상의 공간관리체계와 연동되지 않아 실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단계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며, 사업추진시 사업단위의 경관설계안을 제시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마을 전체를 고려한 종합적인 공간계획과 관리수단 제시가 미흡하여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어려움
-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경관사업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관관리의 한계
- 농어촌지역에서 추진되는 사업은 주로 소득기반 확충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관 관련 사업은 주로 가로수 식재, 관광수요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조성, 직불제에 의한 경관경작지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종합적인 경관구조의 설정과 공간전략이 부재한 상황에서 수행되고 있음
  - 한편 사업지원 후 지속적인 관리 부재, 인센티브 부여 후 관리부실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미비하여 기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최근에는 주민교육을 포함하고, 지역주민을 주축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주민의 인식개선을 통한 경관협정 체결 등의 노력이 필요함
- 공간관리 및 사업추진 부서간 협업이 어려운 행정체계의 한계
  - 농어촌지역의 정비 및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농어촌 관련 사업만을 관리하고 있으며, 토지이용, 개발행위허가, 건축심의 및 허가, 경관심의 등 공간관리와 관련된 담당부서에서는 농어촌지역에 대한 경관관리업무를 담당하지 않음
  - 농촌진흥청, 농어촌공사, 농업기술센터 등 농어촌지역의 개발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및 지원조직은 확보되어 있으나 지자체 내 경관담당부서는 설치가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도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 경관 향상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 쇠퇴하는 농어촌 지역에서는 소득 향상이 최우선시 되어 주민들의 경관 향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 한편 농어촌지역에서는 마을단위의 커뮤니티가 도시지역에 비해 잘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의 연령대가 높아 적극적인 사업 참여나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립적인 의지가 부족함
- 기타 특례법에 의한 종합적 계획 수립과 경관관리 사례의 시사점
  - 특례법을 통해 지역상황에 맞는 지침을 개발·적용하는 사례를 통해 지역에 맞는 경관관리 수단 마련이 시급함
    - 제주도는 행정과 지역에 대한 특례가 주어짐으로써 제주도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자체적인 경관관리가 가능함
    - 고창군은 특구법을 기본으로 조례에 의한 규제 완화로 경관농업특구 지정과 특화사업이 가능함

## 제4장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1. 현행 농어촌 경관 특성과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2.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 1. 현행 농어촌 경관 특성과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 1) 농어촌 경관의 특성

- 지형, 주요 생산자원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촌 경관 존재
  - 농어촌은 자연적인 여건, 생산기반 산업 등에 따라 다양한 경관이 존재함
  - 그러나 각 지역의 차별적인 경관자원과 여건을 반영한 농어촌 경관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



[그림 4-1] 지형, 주요 생산자원 등에 따른 다양한 농어촌 경관

□ 개발수요 등 주변지역의 영향에 따른 농어촌 경관 문제점 상이

-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주변의 농어촌과 인구유출, 산업변화 등으로 쇠퇴과정을 겪고 있는 지방의 농어촌의 경관적 문제점이 서로 다름
- 개발수요가 있는 농어촌은 주변맥락과 어울리지 않는 공장, 창고, 숙박시설 등의 난립으로 경관이 훼손되는 반면, 저개발이 심화된 농어촌은 폐가, 노후화된 기반시설 등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함
- 따라서 개발수요가 높은 농어촌은 규제를 통해 주요한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저개발이 문제인 농어촌은 재생차원에서 접근하여 지원하고 유도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그림 4-2] 개발수요가 높은 지역의 농어촌 경관

□ 농어촌 경관의 보전과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 현재까지 농어촌 경관개선 관련 사업은 지역주민에 대한 고려보다는 방문객을 유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새로운 관광시설의 도입 등에 많은 비용을 투자함
- 지역의 고유한 경관을 보전하고 가꾸는 것이 지역의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측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그리고 지역주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함

## 2) 현행 농어촌 경관관리체계의 한계

- 지역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다양한 농어촌 경관상에 대한 논의 부족
  - 우리나라의 농어촌 경관은 자연환경, 생산기반, 개발수요 등의 차이에 의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별성을 전제로 농어촌 경관의 관리가 논의되어야 함
  - 따라서 현재까지와 같이 농어촌 경관의 문제를 난개발, 획일적인 농어촌 주택, 조악한 비닐하우스, 거대한 규모의 창고 등 단편적인 부분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폭넓은 경관상의 발굴과 종합적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함
  - 그리고 지역특성을 대표하는 고유의 경관자원 발굴 및 경관관리 대상 선정, 다양한 관리방식의 발굴과 적용, 개발압력이 높은 대도시 주변의 농어촌과 저개발로 인한 쇠퇴 현상이 심화된 지역 등 지역 특성에 따른 경관관리 방안의 차별화가 필요함
- 경관향유 주체에 대한 고려 미흡
  - 현행 경관계획과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고유의 경관자원을 보전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보다는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어 경관사업을 통한 경관 개선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는 떨어짐
  - 경관을 향유하는 주체 중심의 경관관리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지역 고유의 경관을 보전하고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경관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하여 경관 사업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함
- 경관관리의 대상으로서 농어촌지역을 구분하는 경계 모호
  - 농어촌지역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관리대상으로서 법적 정의가 혼재되어 있음.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행정단위로

서 동을 제외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계법」에서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 농어촌지역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실질적인 농어촌은 행정적 경계인 동지역, 그리고 국계법상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따라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관리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개념에 부합하도록 법제도상에서 대상 관리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를 설정이 필요함

□ 농어촌지역의 경관비전, 공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경관계획 부재

- 현행 농어촌 경관 관련 계획은 크게 「국계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 내 부문계획으로서 경관계획,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내 경관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들 계획 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함. 도시기본계획상 경관계획부문에서는 도시전체에 대한 경관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농어촌에 대한 명확한 상이나 관리방향 설정이 부재하고, 경관계획은 관리방안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실행수단으로서 공간관리체계와 연동되어 있지 않아 실행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 수행시 수립하는 경관계획은 전반적인 농어촌마을에 대한 공간계획을 수반하지 않은 채 사업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수준임
- 따라서 경관상 설정, 경관관리지역 선정 및 구체적인 관리수단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경관을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규제, 유도, 지원수단 간 연계 부족
  - 공간계획을 실행하는 관리수단은 규제, 유도, 지원 등의 수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규제적인 성격이 강한 「국계법」 상의 지역지구제나 개발행위허가 기준, 그리고 「건축법」 과 「경관법」 상의 심의제도는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지원사업 성격의 각종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은 사업이 완료된 후 대상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수단과 연동되지 않고,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제도가 미비하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함
  - 따라서 지역 특성별로 규제, 유도, 지원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을 할 경우 규제나 유도수단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속적인 관리를 담보해야 함
  
- 경관관리 실행체계로서 공무원, 전문가, 주민의 역할분담 미흡
  - 현행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체계는 공간을 담당하는 업무부서와 농어촌의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분화 되어 있는데, 공간담당부서는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농어촌담당부서는 공간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임
  - 최근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농어촌지역 관련 공공기관에 경관 관련 부서가 신설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농어촌 경관관련 인식이 바뀌고 사업 추진시 전문성이 확보되고 있음
  - 농어촌 주민의 경우 경관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지역에 대한 애착심이 높아 교육이 이루어지면 경관 보전에 대한 의식이 강해지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주민의 연령대가 높아 현실적으로 교육과 참여에 한계가 있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원으로 인해 공공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립적 의지가 부족함
  - 농어촌 경관개선의 구심점은 주민이어야 하나 인식전환과 교육에 오

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장기적으로 교육과 주민 중심의 협정체결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고, 단기적으로 각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및 관련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과 실행전략

### 1) 기본방향

-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개선하는 주된 목적은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유도·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한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경관관리방안의 확보, 개별법에 의한 관리수단간 연계성 강화, 그리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각 주체별 역할의 정립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그림 4-3]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기본방향



- 장기적인 비전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상 설정
  - 비전, 공간계획, 관리수단 제시
-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수단 적용
  - 개발수요에 따라 지역을 구분하여 규제, 유도, 지원 방식을 차별적으로 적용
- 규제, 유도, 지원 등 관리수단간 연계 강화
  - 계획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규제와 사업 간의 연계 강화
  - 저개발되고 있는 지방의 농어촌지역에서 사업을 통해 지원할 경우,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담보하기 위해 지구지정, 심의, 협정 등 규제와 유도수단 등을 적절히 활용
- 공무원, 전문가, 주민 등 관련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
  - 관련 주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전문가 양성
  - 행정 담당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 공공기관 활용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증대

## 2) 실행전략

- ① ‘선계획 후실행’ 을 위한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 실행력 있는 경관관리를 위해서 경관관리의 목표와 비전, 공간계획 및 구체적인 관리수단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
  - 농어촌지역 고유의 경관상 마련 및 목표 설정
    -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 생산경관 및 마을경관을 고려한 지역별 경관상 마련

- 개발수요에 따른 대상지역별 경관관리 목표 설정
-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유도
  -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을 활용하여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선정하고 관리수단을 제시하는 방안
  -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 추진시 수립하는 경관계획을 활용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방안 및 이를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같음하는 방안
-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방안

**개선방안 1**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시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농어촌지역 경관계획 수립지침 보완

**개선방안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계획 수립시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개선방안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경관계획 수립지침을 보완하고, 「경관법」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같음

## ②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 수단 적용

- 경관 관리대상으로서 농어촌의 범위 설정 필요
  - 「국계법」상 지역지구 구분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만을 포함할 것인지, 행정구역으로 구분하여 읍면지역을 포함할 것인지 검토
- 개발수요에 따른 지역을 구분하여 농어촌 경관 유형 구분 및 규제, 유도, 지원 방식의 차별적인 적용방안 마련
  - 개발수요가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대도시 주변의 농어촌과 저개발

발로 인한 쇠퇴현상이 심각한 지방의 농어촌을 구분하여 관리방식 제안하고 규제적, 유도적, 지원적 성격으로 구분하여 농어촌 경관 관리수단 세분화

- 규제 : 농어촌 경관의 특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계법」 및 「건축법」 등에 의한 관리방안과 연계
- 유도 :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경관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사업 활용
- 지원 : 경관향상 및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농어촌 관련 개발사업, 경관보전직불제 등을 활용
- 경관관리수단 개선을 위한 방안

**개선방안 1** 계획대상 범위를 「국계법」에 의한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행정구분상 및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검토

**개선방안 2** 「국계법」에 의한 지역지구제와 타법에 의한 규제적수단, 유도적수단, 지원적 수단을 활용한 보완 체계 마련 및 세부지침 보완

- ☞ 농촌지구(가칭) 신설을 통한 관리대상 세분화 및 용도 및 건축물 허가기준 세분화
- ☞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농촌경관 특성을 고려한 지침 보완
- ☞ 경관심의, 자연경관심의 등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고려한 심의기준 보완

### ③ 규제, 유도, 지원 등 관리수단간 연계 강화

- 경관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관관리 수단과 실질적인 연계
- 「국계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제를 기본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사업단위에서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한 규제적, 유도적, 사업적 수단을 강화



[그림 4-4] 농어촌 경관 관련 관리수단 구분(안)

- 관리수단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개선방안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지역,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지역 등을 농촌지구(가칭)으로 지정하여 지속적 관리 유도

**개선방안 2**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 시 주민협약에 관한 사항을 경관협정으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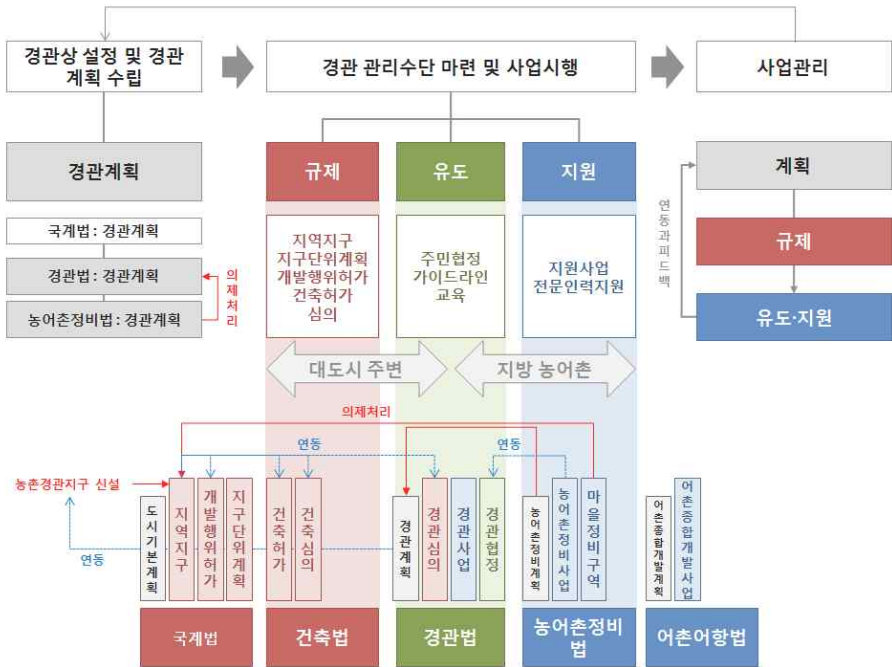
**개선방안 3** 지원사업 추진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협정 미이행지역, 관리미약지역 등에 대한 사업비 상환제도 마련

#### ④ 경관관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주체의 역량 강화

- 공무원, 전문가, 주민에 대한 경관교육 실시 및 전문가 양성
- 각 주체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역량강화
  - 공무원 : 행정적으로 경관관리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체

로서 공간관리와 농어촌사업의 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필요. 공간담당부서 공무원과 농어촌 담당부서 공무원은 각각 농어촌 특성에 관한 교육과 공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 관련 담당부서간 협업체계 강화

- 전문가 :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등 기존의 공공기관 활용을 통한 사업추진 효과 증대. 교육업무,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노하우 및 인력 지원
- 지역주민 : 경관협정의 이행, 지원사업의 주체적 시행자로서의 역량 강화



[그림 4-5] 농어촌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안)

- 관리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

**개선방안 1** 'Best practice'보급 등 주제별 경관관련 교육 실시

**개선방안 2**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관련 담당부서간 협업체계 강화

### 3) 실행전략별 추진방안

- 농어촌 경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간중심의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체계가 보완되어야 하며, 둘째 규제, 유도, 지원을 고려한 다양한 경관관리수단이 마련되고, 마지막으로 농어촌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위한 실천과제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수립지침 구체화 및 농어촌 경관 요소별 가이드라인 수립지침 마련
  - 개발사업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 개발사업시 수립한 경관계획을 경관법에 의한 경관계획으로 인정
- 다양한 경관관리수단 마련을 위한 실천과제
  - 농촌경관지구(안) 신설 및 행위규제안 마련, 농어촌정비사업 추진 지역을 농촌경관지구로 인정
  - 경관심의, 자연경관심의 등에 농어촌 관련 내용 보완
  -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개발행위허가 지침 보완
  - 개발사업과 연계한 경관협정 활성화
  - 공공기관의 경관담당 전담부서 설치
  - 경관계획과 관리수단간 연계강화를 위한 담당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 'Best practice' 보급 등 교육 실시

- 농어촌 경관전문가 양성
- 농어촌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사업 추진 후 관리·운영에 대한 평가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사업실적 저조지역 등에 대한 사업비 상환제도 도입



[그림 4-6]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실행전략(안)

- 실천과제별 추진방안

[표 4-1] 실천과제별 추진방안

실천과제	관련 법제도	실행부서	중장기 계획
경관계획수립지침 구체화	국계법, 경관법	국토부	단기
개발사업의 경관계획의 법정계획 인정	경관법	국토부	단기
개발사업의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단기
농촌경관지구(안) 신설	국계법	국토부	중장기
농어촌 특성을 고려한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국토부	단기
	경관법 조례	지자체	중장기

개발행위허가 지침 보완	국계법	국토부	단기
경관협정 활성화	농어촌정비법	농림부	단기
	경관법 조례	지자체	중장기
공공기관의 경관담당 전담부서 설치		농림부	중장기
담당부서간 협업체계 구축		지자체	중장기
'Best practice' 보급 등 교육실시		농림부	중장기
농어촌 경관전문가 양성		농림부	장기
평가기준 마련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농어촌정지법	농림부	단기
사업비 상환제도 도입	농어촌정지법	농림부	단기



## 참고문헌

- 강영은 등(2010), “경관농업지 경관계획 기준연구”, 『농촌계획』, v16(3), pp.134~157.
- 강영은 등(2011), “농촌개발정책이 농촌경관 변화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v39(6), pp.21~35.
- 강영은(2012), 「한국 농촌경관 변천 특성 연구 -1950년대 이후 농촌개발사업의 경관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학위논문.
- 김광임 외(2005), 「농촌의 경관가치 평가와 관리방안: 심리적·경제적 가치와 환경정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김나영(2002), 「부산의 해안경관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공학석사학위논문.
- 김미영 외(2009), “경관보전직불제사업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지도와 개발』, v16(4), pp.837~867.
- 김미영 외(2009), 「효율적 농어촌마을 경관관리 지원체제와 적용기법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 김삼능(200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안마을단위 리조트 개발방향- 강원 동해안 해안마을을 중심으로-”, 『농촌건축학회』, v5(3), pp.8~21.
- 김상범 외(2006), “농촌경관계획을 위한 공간별 주요경관요소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12(3), pp.13~18.
- 김상범 외(2009), “농촌경관의 보전과 경관관리를 위한 농촌경관계획 수립 및 적용방안 관한 기초연구 -예산군을 사례로-”, 『농촌계획』, v15(4), pp.161~172.
- 김성근 외(1999), “시각적 선호요인 분석을 통한 농촌소하천 경관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2(1), pp.35~44.

- 김성귀 외(2007), 「어촌종합개발사업기본계획조사용역-고흥군 지죽권역-」, 해양수산부.
- 김성학 외(2009), “농촌마을 경관을 고려한 지역경관계획 수립 방안 연구-완도군 약선권역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 v37(3), pp.82~90.
- 김중철(2007),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농촌자원과 생활」, 봄호, pp.68~77.
- 김주석 외(2007),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관리기법 및 지원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 김진환 외(2011), 「어촌지역의 공간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김충식 외(2009),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경관형성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15(3), pp.11~22.
- 노영란 외(2008), “해안경관계획을 위한 물리적 구성요소 개선순위 선정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 v10(4), pp.167~174.
- 노영희 외(2008),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 및 평가모델 개발」, 문화체육관광부.
- 농림수산식품부(2004), 「농촌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05), 「경관보전직불제 2005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07), 「농촌경관평가지표, 농촌경관맵 및 경관보전협약의 현장 적용성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08),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관리 업무편람」,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어촌 경관계획 수립요령」,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09), 「농산어촌 지역개발 분야포괄보조사업 계획수립 가이드라인」,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1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매뉴얼」,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2012), 「2012 농림수산업시행지침서」, 농림수산식품부.
- 농촌진흥청(2006), 「어메니티 창조를 위한 농촌 경관관리지침연구」,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08), 「농촌경관 보전정책 수립을 위한 관리 기준 운용에 대한 연구」, 농촌진흥청.
- 박동규 외(2004), 「중장기 직접지불제 확충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용하 외(2007), “농촌경관관리의 인식 및 농촌경관관리 발전방안”, 「농촌계획」,

v13(3), pp.103~110.

박윤희 외(2004),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계획수립 지침 개발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변병설(2004), 「도시주변 농촌경관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응전략」, 「한국사회학연구」, v6, pp.102~126.

변혜선 외(2009), 「경관법에 의한 경관사업과 타법에 의한 관련사업의 연계방안」, 충청개발연구원.

서수정 외(2011), 「해안마을 관광자원화를 위한 경관형성 방안 연구」, 국토해양부.

서주환 외(2004), 「지역자원활용을 고려한 농촌경관평가모델 작성 및 계획기법 개발」,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성주인(2005), 「농촌의 경관관리 실태와 정책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외(2007), 「농촌경관 관리 및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외(2009), 「농어촌 경관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 외(2001),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른 농촌계획의 위상과 방향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새국토연구협의회.

송미령 외(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학회」, v28(3), pp.121~137.

신지훈(2010), 「농촌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경관사업의 도입 방안 연구」, 「농촌계획」, v16(4), pp.77~86.

엄대호 외(2004),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엄대호 외(2006),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 수립 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온영태 외(2002), 「어촌마을 공간특성을 고려한 경관형성방안 연구」, 해양수산부.

유장호(2000), 「도시근교경관의 유형과 그 평가 : 서울~이천 국도변 경관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상호(2007), 「해안지역의 경관관리방안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v20(3), pp.51~75.

윤상호 외(2003), 「연안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진옥 외(2005),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 경관 보전 및 관리방안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 윤진옥 외(2009), 「농어촌 경관계획수립 대가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 이동근 외(2005),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경관자원분류 및 평가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 v11(2), pp.21~34.
- 이병기(2009), “농촌계획제도의 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21(3), pp.23~41.
- 이상문(1991), 「서울근교 목현리마을의 취락경관변화에 관한 연구-1960년대 이후 경관변화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이순혁(1977), 「한국농촌경관의 시각분석 및 개선방안 : 경기도 시범부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논문.
- 이승우 외(2008),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어촌관광개발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이승우 외(2009), 「어촌개발사업 모니터링 조사용역-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농림수산식품부.
- 이정원 외(2008), 「경관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의한 농촌지역개발 활성화 방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 이진형 외(2009), 「어촌관광 성공 조건과 체험마을 운영사례 연구」, 전남발전연구원.
- 임승빈 외(1986), 「한국농촌경관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새마을운동종합연구」, v6(1), pp.21~38.
- 장효선 외(2007),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사례 분석 및 개선방안: 봉화군, 청원군, 홍성군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v13(4), pp.69~77.
- 정호현 외(2010), “농촌경관자원 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 2008 농촌어메니티 100선을 중심으로”, 「농촌계획」, v16(4), pp.171~178.
- 제주발전연구원(2009), 「어촌종합개발사업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주신하(2008),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제안 연구”, 「농촌계획」, v14(4), pp.77~86.
- 주신하 외(2008), “농촌경관계획수립 기준 정립연구”, 「농촌계획」, v14(4), pp.69~76.
- 채해성 외(2006),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농촌계획」, v12(4), pp.115~123.

최현상(1998),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농촌경관 선호예측모델 설정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농어촌공사(2007), 「별주부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태안군.

한국농어촌공사(2007), 「춘천시 솔바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춘천시.

한국농어촌공사(2008), 「춘천시 소양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춘천시.

한국농어촌공사(2009), 「강릉소금강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강릉시.

한국농어촌공사(2009), 「춘천시 아침별봉황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서」, 춘천시.

한국농어촌공사(2010), 「춘천시 농촌개발 증장기 발전계획」, 춘천시.

한국농어촌공사(2012), 「예산오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예산군.

한국농어촌공사(2012), 「도선국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경관형성계획」, 광양시.

홍찬선 외(2004), 「농촌계획 수립을 위한 경관가치의 평가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농림부·농업기반공사농어촌연구원.

OECD(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Methods and Results”, v3, OECD.



## The Policy Directions for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Improvement

Tchah, Chu Young  
Lee, Sang Min

Recently, both a social request to improve quality of life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nd interests in landscape in the communities are on the increase. For this reason,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mphasized on preventing unplanned land development in rural area, and provided 「Management Guideline for Coastal Landscape」 as a part of 「General Plan for Territorial Landscape Improvement」 .

Improvement and management policies of rural area landscape are increased by various attempts like 「General Measure to improve rural landscape」 in 2006 and 「Five Senses Landscape Promoting Measure to improve Farming Village」 in 2011 that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roposed.

However, a comprehensive landscape management system containing Plan-Project-Management at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is still slight, so an arrangement of continuous and systematic management system as the management of national territory is urgent. A specific plan that both achieves continuous landscape management and overcomes limitations of rural area landscape management scheme should be prepared for long-term and systematic approach to rural landscape that occupies the most ratio of the territory. Therefore, this research draws out current

problems of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as part of national territory landscape management, and suggests basic direction for comprehensive landscape management system that reflects characteristics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he research contains four chapters. Introduction, the first chapter, suggests a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a spatial scope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a textual scope of the research, and difference between the research and advanced researches by examination. The second chapter investigates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nd analyzes current landscape condition of the space. To do that, the research investigates the concept of farming and fishing village, and suggests landscape characteristics of the village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a landscape type and landscape composition elements of the village. To analyze current landscape condition of the space, the research investigates population, the number of households, current situation of land use, current landscape-related project as normal situation of the village, and figures out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landscape in the village. In addition, the research analyzes problems that are represented in the overall village landscape, law and plan, and the village-related projects through reviewing advanced researches that show landscape problems of the spaces.

The third chapter examines and analyzes the current landscape management situation in the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The study examines policies made by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bout rural areas landscape, and suggests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law policies that includes regulations and support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by analyzing the law policies and codes associated with rural areas landscape. In addition, the research examines contexts and implemented conditions of plan, and contexts and promoting status of project to analyze plans and



projects that are regard to rural area landscape. At last, the research examines administration system of central ministries,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governments to understand condition of the administration system that is related to rural area landscape.

The forth chapter draws out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rural area landscape based on the second and third chapter, and suggests basic direc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to establish management system of rural area landscape accordingly. Diverse landscape is appeared by geographical features and major productions in farming and fishing area, and problems of landscape are appeared differently by influence of surrounding regions like development demand. These days, however, recognition about necessity to preserve and improve rural area landscape is considerably insufficient. As a result, discussion about blueprint of various rural area landscape that reflects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region is also insufficient. A lot of problems related with rural area landscape contain that insufficiency to consideration about principal agent who enjoy landscape, ambiguity of boundary that classifies rural area, absentness of general landscape plan that includes space management plan and landscape vision of rural area, lack of connectivity among regulations, inducements and support methods as landscape management measures, inadequacy of role sharing among public officials, experts and residents as action system for landscape management.

The research draws out a basic direction and an action strategy to improve rural area landscape management system based on appeared problems. The basic direction contains that establishing a general plan to realize a long-term vision, application of landscape management measures suitable for conditions of the region, reinforcement of connectivity with the management measures like regulations, inducements and support methods, and makes clear the role sharing among the related principal agents who are public officials, experts and residents.

Also, the action strategy and improvement measure include following things. First, it supplements a guideline of landscape plan, and makes mandatory for establishing the plan based on 「Scenic Conservation Act」 and 「Special Act on Improving the Quality of Lives of Farmers and Fishermen and Rural Development Promotion」 to establish the general landscape plan for ‘Plan-First Action-After’. Second, it makes clear a scope of targets to apply landscape management measures that are appropriate to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s, and builds supplement system utilizing regulatory measure, derivational measure and supporting measure by another laws related with zoning in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then supplements a detailed guideline. Third, it induces continuous management as designating farming zone to intensify connectivity among management measures including regulation, inducement and support. Also, it acknowledges community agreement as landscape agreement, and establishes a monitoring system for aid projects in designated regions, then arranges repayment system for working expenses at executor regions of the agreement and weak-managing regions. Forth, it carries out landscape-related education like dissemination of ‘best practice’ for major participants to intensify capability of the participants together with securing effectiveness of landscape management, and reinforces cooperation system among right sections when establishing plan and pushing forward projects.

The study regards it meaningful to suggest the basic direction of improving rural area landscape management at national landscape enhancement through figuring out current condition of landscape management in the regions closely. Especially the research considers efficiency of rural area landscape policies, and tries to intensify connectivity between action laws and a law associated with national territory system in the view of whole country through complementing insufficient landscape management system. This anticipates to establish

implement measure of rural area landscape management that has effectiveness in long-term, and to contribute developing high-quality rural area landscape.

**Keyword : rural landscape, rural landscape management, rural landscape management system**



## 부록 1. 농어촌 경관 관련 법규

1. 농어촌 지원 관련법
2. 농어촌 규제 관련법
3. 농어촌 특례 관련법

### 1. 농어촌 지원 관련법

####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촌기본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의 정의(제3조5항)
  - 읍·면의 지역
  - 읍·면의 지역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어업, 농어업 관련 산업, 농어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농어촌 관련 최상위법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역지구 설정

- 없음

□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경관관련 계획 및 사업 없음
- 심의회 설치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심의를 갈음함

**제15조(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① 농림수산식품부에 중앙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 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수산 분야 등의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관관련 조항

**제10조(지역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생활·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어촌 경관 및 어촌의 해안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이 의료, 교육, 주택,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4조(농어촌의 자연환경·수산자원·어장환경 및 경관 보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수산자원·어장을 보전하고 농어촌 경관, 해안의 형성·보전·관리 및 농어업 생태계 보전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법규 특징

- 농어촌경관과 관련된 직접적인 계획 및 사업은 없음
- 하지만 농어촌 관련 최상위법으로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
  - 제10조와 제44조에서 농어촌경관의 방향 설정
- 농어촌의 범위를 읍·면지역으로 설정
  - 「삶의질법」, 「농어촌정비법」에서 「농어촌기본법」의 농어촌 범위로 같음
- 경관 및 농어촌경관에 대한 정의가 없음
- 농어촌 관련 최상위법에도 불구하고 「국계법」과의 연계성에 대한 언급이 없음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의 정의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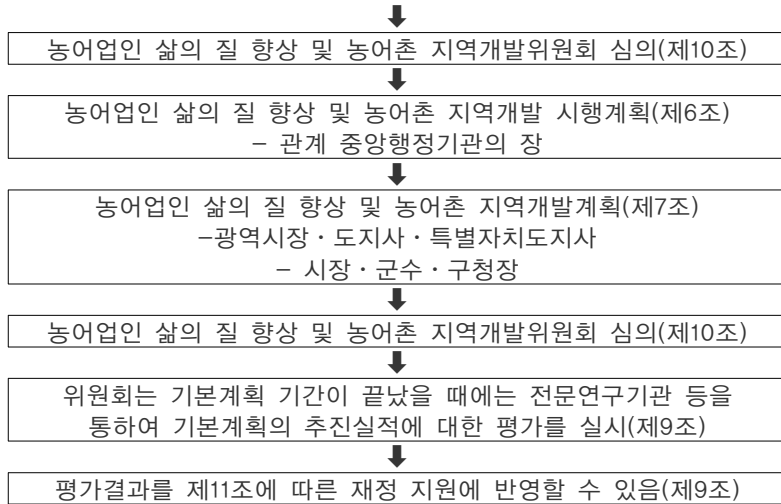
□ 지역지구 설정

- 없음

□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 복지증진, 교육여건개선 및 지역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5년마다 수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제5조) -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포함 - 정부가 수립
--



○ 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근거조항)

-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해 마을권역단위로 수립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으로 지역종합개발계획 수립(제38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수립  
 - 농어촌의 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포함  
 -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함  
 - 가급적 「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음(제38조)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제38조의2)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함

정부는 시행되는 사업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로 조성된 재원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함(제41조)

정부는 기본계획을 세운 경우에는 3월 31일까지,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및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대하여는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제42조)



□ 경관 관련 조항

**법령 제30조(농어촌 경관의 보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이 보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농어촌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관련제도

○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제30조)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제43조)

**법령 제43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농어촌이 아닌 지역으로서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농어촌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 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 법규 특징

- 농어촌 경관과 관련하여 비교적 종합적인 계획수립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농어촌 경관 조항이 포함된 계획수립 및 사업진행의 근거를 제시
- 「농어촌기본법」이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면, 「삶의질 법」은 실질적인 계획과 사업의 내용과 근거를 제시함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진다면 어떤 사업 명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함
- 마을단위경관보전협약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확인 필요

3) 농어촌정비법(농림수산식품부)

□ 농어촌의 정의

- "농어촌"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함

□ 지역지구 설정

○ 마을정비구역(제101조)

- 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제111조)

**제111조(마을정비구역 등에서의 행위 등의 제한)**

- ① 지역·지구등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지역·지구등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개발행위허가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제94조)

- 영농조건이 불리하고 생산성이 낮은 농지의 정비를 위함
- 지정요건(시행령 제75조)

**시행령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제2조에 따른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의 토지를 포함하여 그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하인 지역으로서 한계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15 이상이고, 한계농지를 제외한 농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
2.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 행위제한사항은 없음 → 지원을 위한 지구지정임

□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제5조)

**법령 제5조(농어촌경관의 보전관리)**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어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경관의 보전·형성·관리(이하 "농어촌경관관리"라 한다)를 위한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할 수 있다.
- ②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할 수 있다.
- ③ 농어촌 지역주민 또는 이해관계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에게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으며, 그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④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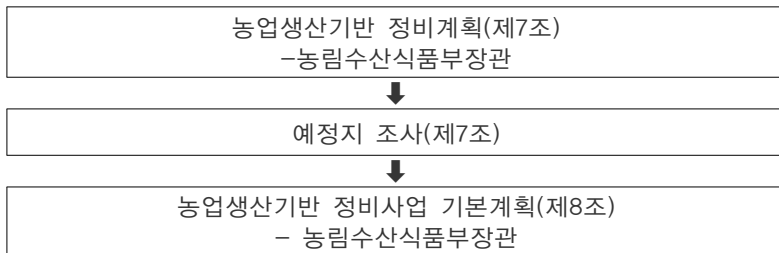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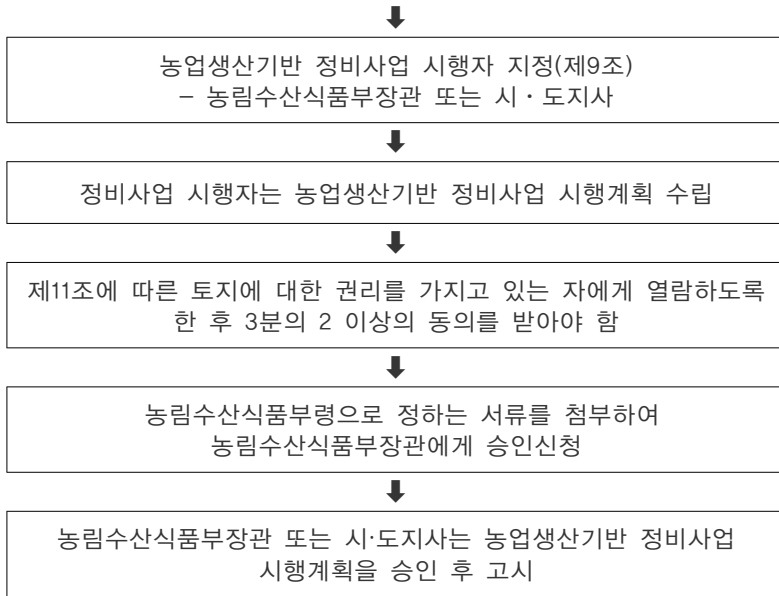
1.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목표 및 방향
2. 농어촌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 농어업경관, 생활경관 등 농어촌경관의 유형별 관리에 관한 사항
4.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한 행정 체계,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제8조, 제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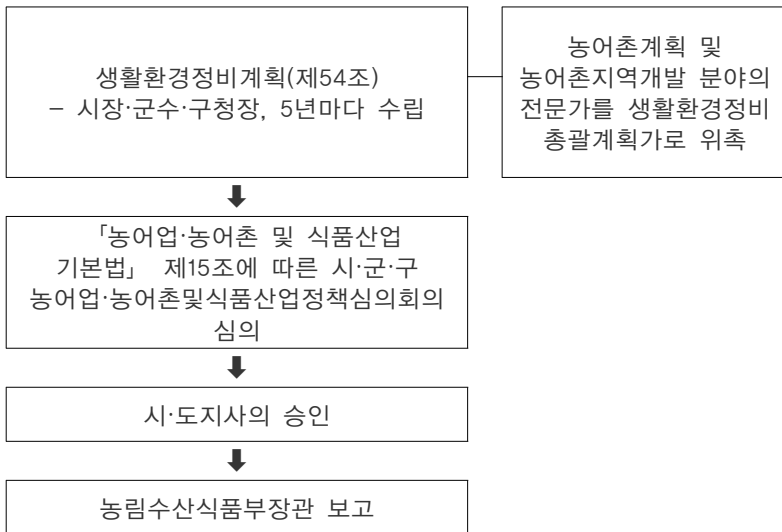
- 농지, 농어촌용수 등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함

- 제6조3항 경제성 및 농어촌경관을 고려하여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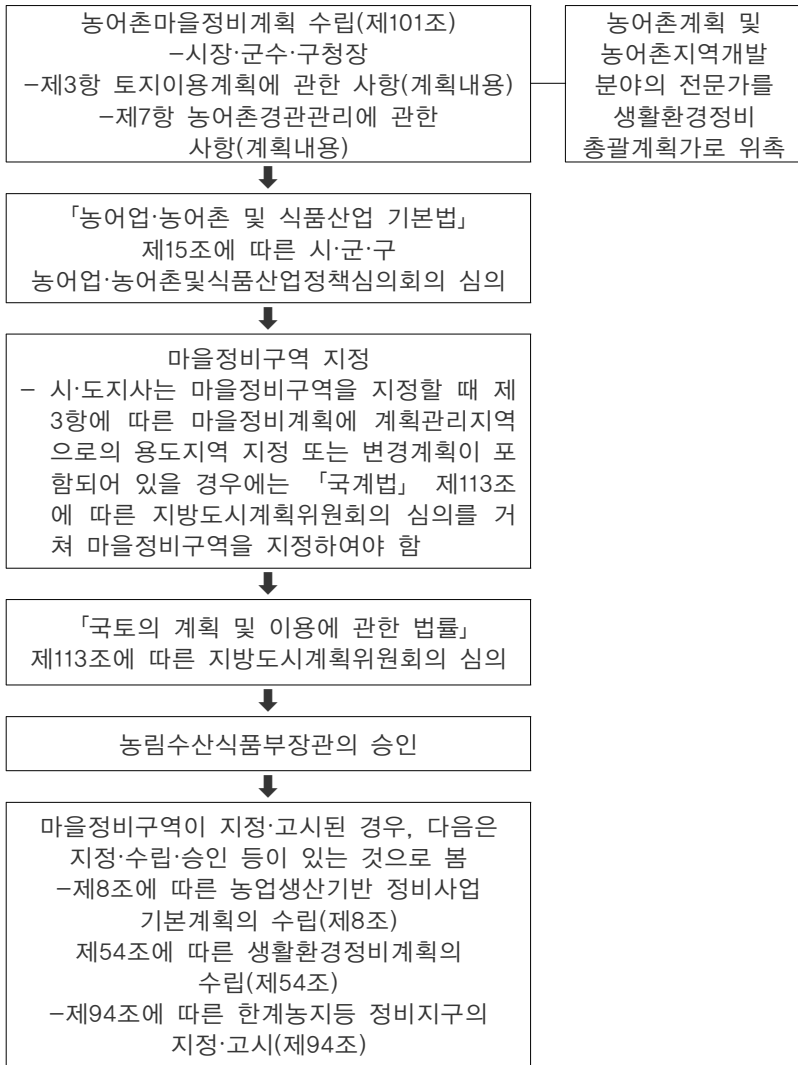


○ 생활환경정비계획(제5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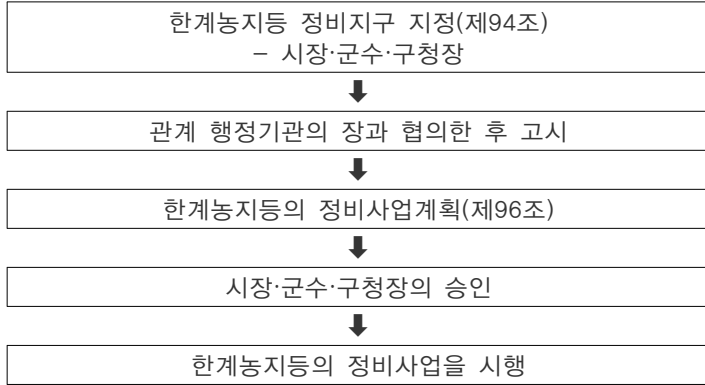


○ 농어촌마을정비계획 및 마을정비구역 지정(제101조)

- 마을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국계법」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한계농지 등의 정비(제94조, 제95조)



#### □ 법규 특징

- 마을정비구역은 제외하고 「국계법」과 같은 경우가 없음
  - 마을정비구역에서 제111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국계법」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봄
- 농어촌정비사업 대상지역에서 농어촌경관관리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시함
- 농어촌의 다각적인 범위에서 정비를 지원함
  -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 정비, 마을정비, 한계농지 정비로 나누어 계획수립
  - 직·간접적으로 농어촌경관에 영향을 끼침
- 다양한 범위에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통합적인 계획이 아닌 단일사업에 의해 농어촌개발(혹은 농어촌경관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 문제점이 발생
- 농어촌 관련법에서 총괄계획가의 위촉에 관한 조항을 처음 언급
  - 전문가를 계획 및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음

#### 4)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 □ 농어촌의 정의

- "농어촌주택"이라 함은 읍·면지역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광역시 및 시에 소재하는 동지역중 동법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함
- 타 농어촌관련법과는 다르게 농어촌지역을 「국계법」에 의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라 정의함

##### □ 지역지구 설정

- 농어촌주거환경개선 지구(제4조)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주거환경이 나쁜 지역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음
- 개선지구는 하나의 마을을 하나의 개선지구로 함(효과적이라 인정하는 경우 2이상의 마을도 가능)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종 시책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선지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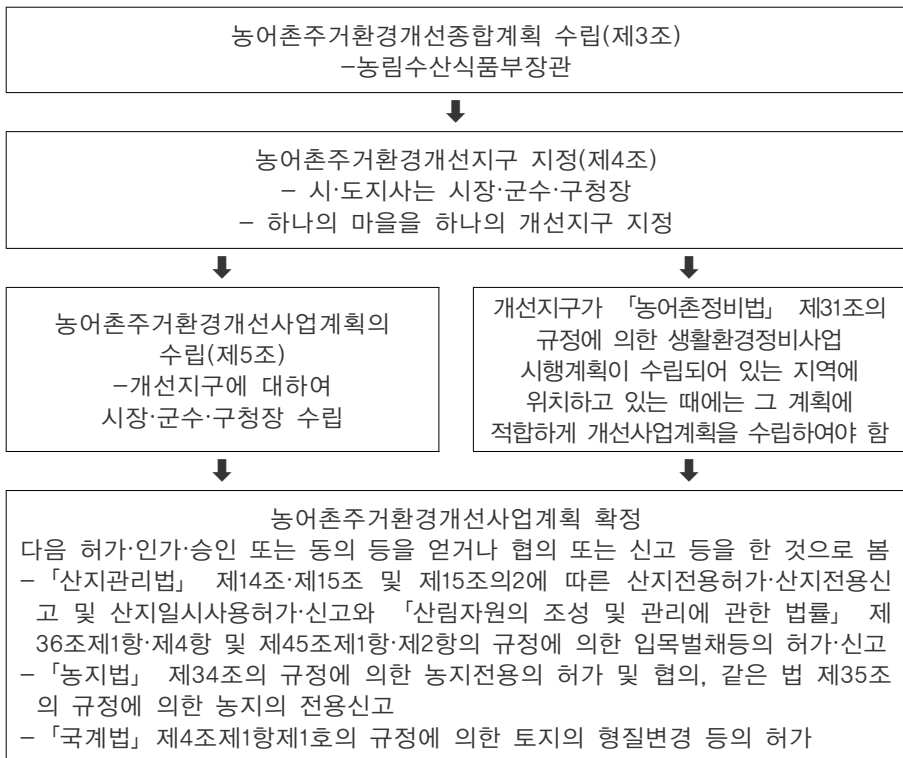
### 시행령 제3조(개선지구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라 함은 20가 구이상이 상주하고 있고 장래에도 계속 상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을을 말한다. <개정 1999.2.5>

1.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마을
2. 자연공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취락지구에 위치한 마을
3. 수해·산사태·해일등 재해가 우려되어 이주가 불가피한 마을
4. 관광지·사적지 또는 주요도로변등에 위치한 마을로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마을
5. 노후·불량한 주택이 주택총수의 3분의 1이상이고 세대주의 3분의 2이상이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이하 "개선지구"라 한다)지정을 희망하는 마을

#### □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제3조)



↓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 개선지구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시행  
- 마을토지의 이용에 관한 사항, 마을조경계획 등을 포함

- 빈집정비사업(제12조, 제13조)

빈집정비계획을 수립(제12조)  
-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매년 9월 30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건축위원회 심의(건축법 제4조)를 통해 빈집의 조치내용 결정(제13조)

↓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

#### □ 법규 특징

- 「건축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빈집정비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함
- 「농어촌정비법」이 지역단위의 계획 및 사업이었다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은 농어촌주택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함
- 농어촌주택정비 촉진을 위한 계획 및 사업과 같은 법적 지원내용을 명시함
- 농어촌주택을 중심으로 마을토지이용, 녹지공간 및 마을조경계획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농어촌주택의 형태, 색채 등과 같은 경관적인 측면의 내용이 부족함

## 5) 어촌어항법(농림수산식품부)

### □ 정의

- “어촌”이란 하천·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함
  - 읍·면의 전 지역
  -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주거지역, 녹지지역)
- “어항”이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그 종류는 다음과 같음
  - 국가어항: 이용 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지방어항: 이용 범위가 지역적이고 연안어업에 대한 지원의 근거지가 되는 어항
  -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 어촌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 어항

### □ 지역지구 설정

-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 필요)

### □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어촌종합개발계획

#### 제6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수립)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어촌종합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촌종합개발의 기본구상 및 개발방향
  2.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의 선정 현황
  3. 어촌종합개발사업의 권역별 개발 및 투자 계획
  4.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과 및 전망
  5. 어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6. 그 밖에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추진절차 및 사후관리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에 대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전국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등의 이유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항에 관하여 직접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해당 사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배후어촌개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어촌종합개발사업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 ①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촌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시설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

-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의 주요내용 및 변경내용을 함

#### 제4조(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어촌의 소득증대와 어촌·어항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5년마다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어촌·어항의 종합적·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기·장기 정책방향
  - 2. 어촌·어항의 연도별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3.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4. 어항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5. 다른 법률에 따른 어촌지역 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 법규 특징

- 계획 및 사업의 내용에서 경관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촌·어항의 정비 및 개발에 초점을 둠
- 계획 및 사업과정에서 별다른 심의기구 및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음

- 인허가, 준공, 공사감리, 국유지·공유지 양여, 관리, 운영권 등 어촌·어항 개발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음

## 2. 농어촌 규제 관련법

### 1) 농지법(농림수산식품부)

#### □ 범위

-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2조)
-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제2조)

#### □ 지역지구 설정

- 농업진흥지역(제28조)
  - 지정대상 및 지정절차(제28~30조)

#### **제28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 ①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농업진흥구역: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 가.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인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농업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2.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제29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 **제30조(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 ① 시·도지사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도 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

- 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는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 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 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위제한(제32조)

-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



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 농어촌경관 관련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농지이용계획(제14조)

□ 기타제도

- 농지취득자격증명서(제8조)
  -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함
- 농지전용허가(제34조)
  - 허가 및 협의(제34조)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제44조)

#### 법령 제37조(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시행령 제44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 ③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제3호나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에 한한다)·나목·사목(이 영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29조제7항제3호·제4호의 시설을 제외한다)·차목, 제5호, 제8호, 제10호다목·라목·바목, 제14호, 제15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4조제1항에 따른 1천제곱미터 이하의 휴양펜션업 시설을 제외한다)·제16호, 제20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및 제27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제3호가목·다목부터 바목까지·차목, 제4호가목(일반음식점을 제외한다)·다목부터 바목까지·아목·자목·카목·타목, 제6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9호, 제20호가목·사목·아목 및 제26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천제곱

미터를 초과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가목·나목, 제17호, 제18호에 해당하는 시설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나목에 따른 관광농원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다만, 그 시설이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도시·군계획시설,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설치하는 시설, 「도로법」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 중 고속국도관리청이 설치하는 고속국도의 도로부속물 시설,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골프장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의 조례로 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 농지보전부담금(제38조)

#### 제38조(농지보전부담금)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를 전용하려는 자
  - 2의2. 제34조제2항제1호의2에 따라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거친 구역 예정지에 있는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3.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4.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5. 제35조나 제43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 □ 법규 특징

- 농어촌경관 가운데 생산경관과 깊은 관계가 있음
- 지역지구 설정(농업진흥지역)에 따른 규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전용허가, 농지보전부담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농지의 보전을 이루고자 함

## 2) 산지관리법(산림청)

### □ 범위

#### ○ 산지의 범위

- 입목(立木)·죽(竹)이 집단적으로 생육(生育)하고 있는 토지
-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 임도(林道), 작업로 등 산길
- 토지에 있는 암석지(巖石地) 및 소택지(沼澤地)

### □ 지역지구 설정

#### ○ 보전산지(제4조, 시행령 제4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산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다목에 따른 자연경관지구 및 문화자원보존지구·생태계보존지구의 산지

####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 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제9조)

- 산림청장은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제10조(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2.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매장문화재의 발굴(지표조사를 포함한다), 문화재와 전통사찰의 복원·보수·이전 및 그 보존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 문화재·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가. 발전·송전시설 등 전력시설
  - 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
8.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탐사·시추시설의 설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
9.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 가. 진입로
  - 나. 현장사무소
  - 다. 지질·토양의 조사·탐사시설
  -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 농어촌 관련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산지관리기본계획

□ 기타제도

- 산지전용허가(제14조)

-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법규 특징

- 산림청에서 제정한 「산지관리법」은 구역지정 및 범위설정에서 「국계법」의 지역·지구 및 구역과 다수 연계하고 있음

### 3) 문화재보호법(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 □ 관련 정의

##### ○ 보호구역

-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함

##### ○ 보호물

-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물이나 시설물을 말함

##### ○ 역사문화환경

-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함

#### □ 지역지구 설정

#####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 ①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 ② 건설공사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예술적·학문적·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 다만,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



□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문화재위원회

- 건축, 도시계획 전문가도 포함

<p><b>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b></p> <p>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li><li>2.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li><li>3. 국가지정문화재의 <u>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u></li><li>4.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li><li>5.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li><li>6. 국가지정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관한 사항</li><li>7.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li><li>8. 문화재의 등록 및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li><li>9. 매장문화재 발굴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li>10.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li>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li></ol> <p>②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li><li>2.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li><li>3. <u>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u></li></ol> <p>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p> <p>⑤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회의일시 및 장소</li><li>2. 출석위원</li><li>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li></ol> <p>⑥ 제5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⑦ 문화재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합동분과위원회의 조직, 분장사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⑧ 문화재위원회에는 문화재청장이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 및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⑨ 문화재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의 수와 임기, 전문위원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시·도문화재위원회

□ 기타제도

- 등록문화재의 건폐율·용적률 특례

**시행령 제35조(등록문화재의 건폐율과 용적률 등**

- ① 법 제57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도지역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등록문화재의 구조, 특성 및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150퍼센트 안에서 정하되, 그 세부적인 비율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의 특례를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한 날부터 15일 안에 해당 허가 내용을 문화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법규 특징

- 경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 및 사업은 없음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 및 건폐율·용적률의 조정이 이루어짐
- 문화재위원회에 건축·도시계획 전문가를 포함함으로써 문화재보호를 위해 공간적 측면에서 전문성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됨

### 3. 농어촌 특례 관련법

#### 1)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지식경제부)

##### □ 정의

##### ○ 지역특화발전특구

-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

##### 법령 제9조(특구의 지정 등)

-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협의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를 지정한다.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규제특례

-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에 규정된 사항

#####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 ○ 특구토지이용계획

- 특화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 ○ 특화사업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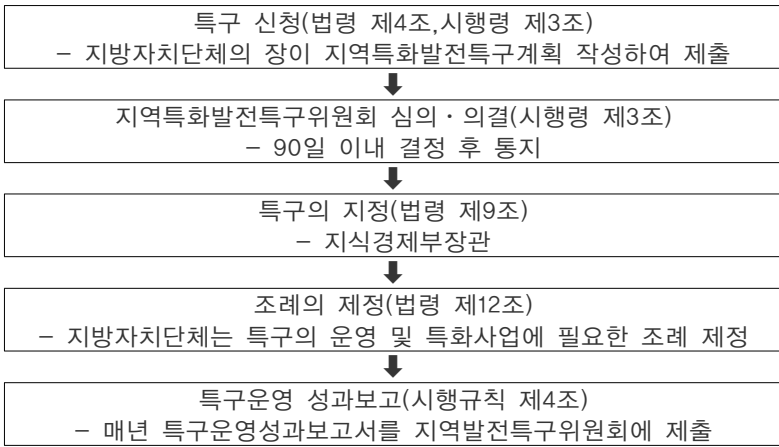
○ 특화사업자

-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

□ 지역지구 설정

○ 지역발전특구(제9조)

- 지역의 특화발전을 위하여 설정된 구역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과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됨
- 특구지정 절차



- 농어촌경관 관련 규제특례사항

**제21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 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하는 특화사업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 및 경계, 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25조(「농어촌정비법」에 관한 특례)**

-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농어촌정비법」 제17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관

리자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농어촌정비법」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 61조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정비법」 제 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으로 하는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농어촌정비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고시 된 지역에서는 같은 법 제92조 각 호의 시설 외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25조의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26조(「농지법」에 관한 특례)**

- ① 농지소유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 ②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할 수 있다.
- ③ 특화사업자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3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 용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⑤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지법」 제 37조에도 불구하고 농지의 전용(轉用)을 허가할 수 있다

**제27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①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에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林道)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의 타당성 평가는 산림청장이 제9조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 한다.
-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임도를 설치한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지관리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2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① 도시·군관리계획안이 포함된 특구계획에 관하여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 등을 들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각각 들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1. 특구계획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특구토지이용계획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수립면적이 같은 법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
-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3항과 제4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세부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 경우 특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해당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되어야 한다.

**제33조(「도로법」에 관한 특례)** 도로관리청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제34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① 삭제 <2011.5.24>
- ②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③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를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를 점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한 공익시설로 한정한다.

**제35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36조의2(국유·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화사업에 필요한

- 토지는 특구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 ②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자에게 국유·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③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화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법령 제7조, 시행령 제5조)

- 특구계획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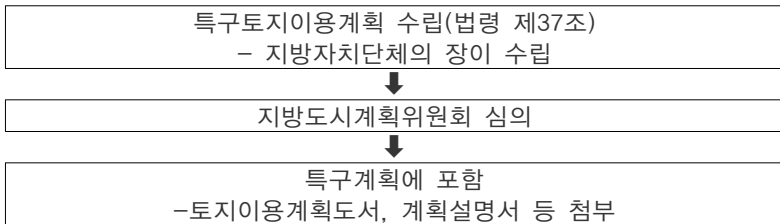
- 법령 제7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① 특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5.24>
    - 1. 특구의 명칭·위치·면적 및 대외적 표시방법
    - 2. 특구지정의 필요성
    - 3. 특화사업 및 특화사업자
    - 4. 특구토지이용계획(제39조제1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 5. 규제특례사항(이 법에 규정된 규제특례 중에서 해당 특구 또는 특화사업자에게 적용될 규제특례를 말한다)과 그 필요성 및 적용범위
    - 6. 자원조달방법
    - 7. 특구 및 인근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방안
    - 8. 제21조제2항, 제32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및 제44조의3에 따라 특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9. 특화사업으로 조성될 시설의 회원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그 모집에 관한 계획
    - 10. 그 밖에 특구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때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기 어려우면 특구지정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특구토지이용계획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특구토지이용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구"는 "특구토지이용계획"으로, "지정"은 "승인"으로 본다.
- 시행령 제5조(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 ① 법 제7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사업의 종료 시점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기재를 생

략할 수 있다)

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특구지역이 표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적도(「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제16조의3제3항, 법 제17조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3항·제4항, 제3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6조의11 및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주요 내용
-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그 관할구역의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구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보완하거나 추가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지자체 장이 특구를 신청할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특구 신청

- 특구토지이용계획(법령 제37조)



- 특화사업

#### □ 법규 특징

- 지역특화사업을 위해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
- 특구토지이용계획을 통해 공간적인 계획이 함께 이루어짐



##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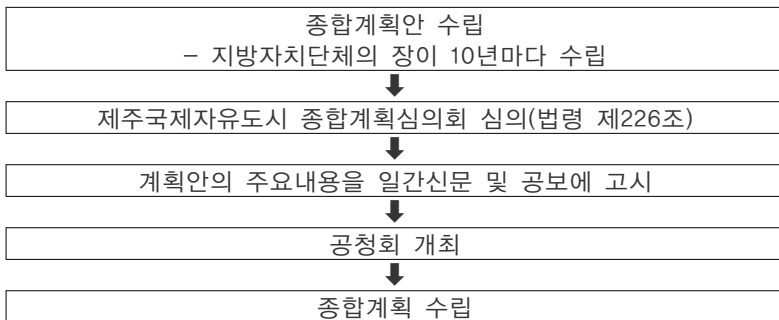
- 국제자유도시(법령 제2조)
  -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 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적 단위
- 농어촌지역(법령 제203조)
  - 읍·면의 전지역
  - 동의 지역 중 「국제법」에 의해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지역지구 설정

- 보전지역의 설정
  - 절대보전지역(법령 제292조)
  - 상대보전지역(법령 제293조)
  - 관리보전지역(법령 제294조)
  - 관리보전지역 내에서의 행위제한(법령 제295조)

### □ 계획, 사업 및 심의 과정

-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법령 제222조)



□ 기타제도

- 휴양펜션산업의 등록(법령 제174조) 및 휴양펜션산업시설의 건축제한(시행령 제26조)
  - 휴양펜션업을 하기 위해선 사업계획에 대한 도지사의 승인이 이루어진 후, 도지사에게 등록을 해야 함
  - 「국계법」의 용도지역·지구의 시설에 대해서는 동법 제76조 제1항 및 제5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않음
  - 용도지역은 「국계법」의 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로 함

법규	법령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1항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밖의 시설에 대한 제한	제47조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제5항 취락지구, 농공단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제한	제7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특례사항
  - 농어촌지역의 지정에 관한 특례(법령 제203조)
  - 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법령 제203조의2)
  -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제203조의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법령 제243조)
  -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용적률 특례(시행령 제46조)
  - 건축에 대한 특례(법령 제243조의2)
  - 산지관리에 관한 특례(법령 제244조)
  -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법령 제252조)
  - 택지개발에 관한 특례(법령 제253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특례(법령 제253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특례(법령 제253조의3)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법령 제255조)
- 도시경관의 관리에 관한 특례(법령 제256조)
- 도건축위원회 심의
  - 법령 제309조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를 근거로 함
  - 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함
  -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또한 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함

#### □ 법규 특징

- 행정과 지역에 대한 특례가 주어짐으로써 제주도 자체의 경관관리가 가능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법령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법령을 적용하는 등 행정적인 특례를 제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농어촌지역, 건축, 산지, 도시개발, 택지개발 등 지역의 전반적인 특례가 주어짐

## 부록 2. 농어촌 경관 관련 사업 현황조사

### 1) 춘천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① 솔바우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사업개요 및 특성

- 위 치 :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송암리, 인람리, 고탄리, 고성1·2리
- 면 적 : 5073ha(농경지 457ha, 임야 4186ha, 기타 430ha)
- 사업기간 : 2008년 ~ 2012년(5개년)
- 가구,인구 : 492호(농가:279호, 어가:15호, 비농가:198호), 인구(1,298명)
- 지역자원
  - 자연자원 : 춘천호, 용화산, 사평천
  - 생활환경자원 : 고탄전원마을, 전원마을예정지, 충효정
  - 농어업자원 : 친환경농법단지(오리농법), 상골미 시험재배, 농특산 물직거래농가(CSA)

- 관광자원 : 고탄낚시터, 고탄눈썰매장, 체험프로그램 운영경험, 용화산 자연휴양림

○ 지역특성

- 춘천시내에서 20분 거리에 위치하여 접근성 매우 양호
- 춘천호는 낚시터로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으며, 특히 동절기 얼음낚시로 유명
- 산천어축제기간 중 화천을 방문하는 방문객의 상당수가 권역을 통과
- 새농어촌건설운동, 1사 1촌, 산촌테마마을, 정보화마을 등 다양한 지역개발사업 유치 경험
- 일부 오리농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화산친환경작목반을 중심으로 친환경 재배 및 농특산물 직거래(CSA)를 시행하고 있음

○ 세부사업

- 기초생활 : 공동 농기계 수리센터, 농산물가공단지 진입로 개설
- 문화복지 : 커뮤니티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 소득기반 : 친환경 완전미 가공시설, 농산물 급냉시설, 친환경 퇴비장, 병버섯 배지 생산시설, 산촌민박
- 농촌관광 : 지역축제장 조성, 지역축제 운영지원, 지역축제 기획 컨설팅
- 경관조성 : 소나무 가로경관 조성, 빈집철거, 친환경 오리막사
- 운동휴양 : 사평천 물놀이장, 야영장

○ 경관관련 기본방향

- 어메니티 농촌경관 조성
- 불량경관을 제거하고 풍요로운 농촌경관 형성으로 농촌다움 극대화
-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특화 경관지역 육성

- 지역민의 생활경관과 도시민의 관광 경관의 상호연계

□ 현장조사 결과

○ 마을전경

- 산 밑에 단층 주택들이 입지하고 있으며 평지에 논밭이 조성됨
- 주택형태 및 색채가 비교적 다양함
- 전봇대 및 전선을 제외하고 별다른 위협적인 경관 요소가 존재하지 않음
- 원경의 거리에서는 주변 자연환경과 잘 어우러지는 모습을 보임



○ 농업 및 마을시설물

- 목재로 이루어진 버스정류장이 주변과 잘 어우러짐
- 농업시설물의 정돈이 필요하나 규모나 형태면에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음



○ 주거시설

- 아침별봉황권역과 비교해서 2~3층의 높은 주택들이 입지함
- 규모는 비슷하나 다양한 형태와 색채로 이루어져 시각적으로 잘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임

- 근경에서 주택의 높이와 색채가 문제시됨



○ 상업시설

- 정돈되지 않은 옥외광고물과 어울리지 않는 형태와 규모를 가진 상업시설이 난립함

- 저수지 주변은 비교적 잘 정돈되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임



## ② 아침별봉황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사업개요 및 특성

- 위 치 : 춘천시 동산면 조양1·2·3·4리, 봉명1·2리
- 규 모 : 법정리 2, 행정리 6, 자연마을 23
- 면 적 : 3,668ha(농경지 405, 임야 3,257, 기타 6)
- 사업기간 : 2010년 ~ 2014년(5개년)
- 가구 및 인구 : 297호(농가 250, 비농가 47), 671명(남341, 여330)
- 권역 종합개발사업 중 경관관련 부분 - 경관마을 꾸미기
  - 기본방향 - 환경과 주민의 삶이 조화된 경관마을 꾸미기

- 도농교류센터 주변 경관 만들기
- 권역만의 고급화된 문화상품 개발
- 경관저해시설 제거 등 주거환경 개선
- 주민이 자부심을 갖고 살고, 도시민이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 세부계획

- 조양2리에 위치하여 굴지천 일대 독방길을 권역주민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미관상 좋지 않으며 상태가 불량하여 정비가 필요
- 현 조양2리 게이트볼장 입구에서 조양초등학교까지 굴지천 일대 독방길로 약 700m의 거리로 산책로정비 및 주변 경관 조성 계획수립
- 야간활동을 위해 가로등을 설치하되, 최대한 경관과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태양열 에너지를 이용한 가로등 설치
- 현재 조양4리에는 고가 고속도로 교각과 같은 구조물로 인해 농촌마을로써의 경관을 많이 훼손하고 있으며, 조양IC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민은 물론 외부인에게도 좋지 않은 인상을 줌
- 이에 따라 이미지 개선과 경관정비를 위해 꽃길 조성 및 구조물의 경관정비가 절실한 상태임
- 현 조양4리 마을진입로에서 움터골천을 따라 약 600m 야생화 식재
- 고속도로 교각 주변에 야생화 혹은 경관 작물을 식재하고 교각에 마을의 상징적인 그림을 그려 홍보 및 이미지 개선 계획 수립

□ 현장조사 결과

○ 마을전경

- 도로를 경계로 굴지천 방향으로 논농사와 반대편은 밭농사로 나누어지며, 도로에 인접하여 주거시설과 일부 상업시설이 입지함
- 마을 주변으로 춘천동홍천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가 교차하며 지나감
- 수변 자연경관이 수려하며, 비교적 잘 정돈된 모습을 보임





○ 농업 및 마을시설물

- 밭작물로는 주로 뽕잎 및 오디농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농산물 집하장, 농산물 원종장 등의 가설건축물이 위치함
- 농업시설물은 규모와 형태, 색채가 통일성을 가지고 정돈되어 있음
- 논밭 주변으로 전봇대와 전선을 제외하곤 위협적인 경관 요소는 없음



○ 주거시설

- 대부분 농가주택으로 박공지붕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일부 원색계열의 지붕이 주변 경관과 부조화를 이룸

- 형태와 규모면에서는 단층 높이와 비슷한 건축물들이 어우러짐



○ 공공시설

- 비교적 경사가 높은 구릉지에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유치원이나 교회(원색의 색채와 주변보다 거대한 규모)가 입지
- 농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커뮤니티센터가 건설 중이며, 게이트볼장이 입지
- 디자인적으로 뛰어나진 않지만 적절한 규모와 형태를 가짐



○ 주변 기반시설

- 마을 주변에 거대한 토목구조물(고속도로)이 지나감
- 통행량이 늘어날 경우 소음과 진동이 예상됨
- 마을내부는 도로와 농수시설을 제외하고 별다른 기반시설이 없음



## 2) 제주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① 녹고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사업개요 및 특성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소길리, 유수암리 일원
- 사업기간 : 2010. 1. ~ 2014. 12. 31
- 사업의 목적
  - 녹고외권역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도모
- 사업내용
  - 소득기반시설 : 녹고외 전통맛골 조성, 친환경공동축사
  - 농촌관광시설 : 방문자센터 조성, 생태체험장(리모델링), 권역종합 안내관, 풋감체험관(리모델링) 및 체험농장 조성
  - 경관시설 : 마을탐방로(쉐길)
  - 환경시설 : 생태연못정비(2개소), 유수암천 주변정비
  - 운동휴양시설 : 오름탐방로 조성, 녹고외 공동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주민 및 리더교육, 선진지 견학, 워크숍체험상품 개발 및 컨설팅, 홍보마케팅, 권역 정보화구축, 마을경영지원
- 사업내용 및 진행
  - 예비계획서 작성시 3개 마을이 합쳐서 시행함(이장들이 의기투합하여 실시)
  - 일반주민들이 반대하기도 하지만 회의와 설득을 통하여 실시함
  - 주민세를 모아서 진행하고 지역출신회사(컨설팅-어메니티)에서 도

## 와중

- 50개가 넘는 사업들이 신청되어서 사후관리와 투자효과를 고려해 집중시킬만한 사업 13-14개로 축소함
- 사업 축소 시 문제와 갈등이 많았음, 추진위원장 및 각 마을 이장들의 지속적인 사업의 관심이 필요함
- 리모델링 사업이 마을공동소유였던 건물들을 용도를 바꿈 (저장고에서 생태체험장, 창고에서 시설 등)
- 사업의 문제점
  - 제주도 풍경이 좋지만 일부 특권층(공공기관)이 망치는 경우가 많음
  - 법에 의해서 들어오면 안되는 지역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 경찰특공대, 요양시설 등이 공공기관에서 특허로 허가를 주어 문제가 생김
  - 바닷가 주변의 상업숙박시설과 카페등도 문제임
  - 일반관광객들의 쓰레기 처리가 문제임
  - 양돈장의 악취가 문제임
- 운영 및 관리
  - 각 마을에 운영위원들이 배정되어 있어 마을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문제시 위원장에게 올라옴, 관리가 편리한 편임
  - 부녀회원들이 센터 옆 식당을 시작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함
  -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매년 다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연계 하여 사업에 활용됨 (해설프로그램, 요리프로그램 등)
  - 자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계획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함
  - 향후 사업 끝난 후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경관관련계획
  - 경관관련 관심은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음

- 센터도 주변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아님, 컨셉들만 들어감 (말굽모양, 오름분화구 등)

#### □ 현장조사 결과

##### ○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및 청소년 공부방

- 장전리 노인복지회관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고미권역 사무국이 위치함
- 한국농어촌공사, 마을대표, 컨설팅업체가 상주함
- 마을회관, 노인복지회관, 청소년 공부방 등이 함께 입지함



##### ○ 마을전경

- 다른 권역과 다르게 음식점 등의 상업시설과 민간경마장이 들어서 있음
- 주택들은 제주도 특유의 양식이 아닌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음
- 산중턱에 위치한 경찰특공대는 경관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격, 폭파훈련 등으로 인한 소음문제가 발생함

##### ○ 방문자센터

- 오름에 위치하여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제주시에서 접근이 용이함
- 강당과 회의장이 들어선 센터는 완공이 되었으나 식당 등의 편의 시설은 현재 공사중임
- 주변에 제주경마공원, 향몽유적지, 오름 등의 관광자원이 위치해 있어 관광객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됨



#### □ 자문회의 결과

##### ○ 사업내용 및 진행

- 예비계획서 작성시 3개 마을의 이장들이 의기투합하여 추진함
- 일반주민들의 반대도 있었지만 회의와 설득을 통하여 진행함
- 주민세를 모아서 진행하고 지역출신회사(컨설팅-어메니티)에서 도와줌
- 50개가 넘는 사업들이 접수되어 사후관리와 투자효과를 고려해 집중시킬만한 사업 13-14개로 축소함

- 사업 축소사 문제와 갈등이 많았음. 이럴 경우 추진위원장 및 각 마을 이장들의 지속적인 사업의 관심이 필요함
- 리모델링 사업이 마을공동소유였던 건물들을 용도를 바꿈(저장고에서 생태체험장, 창고에서 시설 등)
- 사업의 문제점
  - 제주도 풍경이 좋지만 일부 특권층(공공기관)이 망치는 경우가 많음
  - 법에 의해서 들어오면 안되는 지역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음
  - 경찰특공대, 요양시설 등이 공공기관에서 특허로 허가를 주어 문제가 생김
  - 바닷가 주변의 상업숙박시설과 카페등도 문제임
  - 일반관광객들의 쓰레기 처리가 문제임
  - 양돈장의 악취가 문제임
- 운영 및 관리
  - 각 마을에 운영위원들이 배정되어 있어 마을마다 사업을 진행하고 나중에 문제시 위원장에게 올라옴, 관리가 편리한 편임
  - 부년회원들이 센터 옆 식당을 시작하여 수익사업을 실시함
  -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매년 다른 커리큘럼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연계하여 사업에 활용됨(해설프로그램, 요리프로그램 등)
  - 자체적으로 교육에 관한 내용을 계획하고 주민들이 참여를 함
  - 향후 사업 끝난 후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경관관련계획
  - 경관관련 관심은 있지만 잘 진행되지 않음
  - 센터도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접근한 것이 아니라 설계 개념만 고려한 것임(말굽모양, 오름분화구 등)

- 농촌관광체험마을(or 녹색농촌체험마을)
  - 기간이 짧고 예산이 적었음(1회실시)
  - 시설에 투자를 하지 않았음
  - 센터가 완공되면 연계하여 진행할수 있음
  - 사업이 끝난후에도 지속적인 보고를 하고 있음
- 주거환경개선
  - 지역적인 부분의 혜택들이 더 상위에 있어서 개인 주택을 개선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함
  - 농가주택 개량할 때, 표준모델이 있음(마을옆집사람처럼해달라기도 하고, 표준모델을 따르기도 하고 다름)
  - 육지와 제주는 환경이 달라서 정주권사업도 다름(사람밀도의 차이가 큼)
  - 마을별 청소를 한 달에 한번 실시함, 청정클린센터를 운영(재활용 및 폐기물 등)하여 나온 소득을 마을에 활용함.
  - 농가소득이 높고 부지런한 편임(특히 여자들이 소득의 상당부분을 차지함)

## ② 옷뜨르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사업개요 및 특성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저지리, 청수리, 산양리
- 사업목적 : 저지, 청수, 산양, 낙천리(옷뜨르권역)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도모



- 권역면적: 3,595ha (농지 1,542, 임야 1,692, 기타 361)
- 가구·인구: 873호 (농가: 715호, 비농가: 158호)•2,354명
- 자원현황
  - 권역 내: 오름, 곳자왈, 아홉굿(물통), 분재예술원, 평화박물관, 저지문화예술인마을, 수컷돌거북이박물관 등
  - 권역 외: 차귀도, 한림공원, 협재해수욕장, 금능해수욕장, 절부암, 수월봉, 나비레전시관, 소인국테마파크 등
- 주요사업계획

구분	저지리	청수리	낙천리	산양리
	마을경관개선	자연생태체험	전통문화체험	노인복지공간
주요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회관리모델링</li> <li>•돌담, 산책로 정비</li> <li>•농산물 판매장</li> <li>•녹색농촌체험</li> <li>•쉼터, 어린이놀이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곳자왈, 승마체험장</li> <li>•다목적 회관</li> <li>•체험프로그램</li> <li>•주차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목적 회관</li> <li>•야외소공연장</li> <li>•산책로 정비</li> <li>•농산물 수확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마을연못정비</li> <li>•복지회관리모델링</li> <li>•장수음식체험</li> <li>•게이트볼장</li> </ul>

- 사업의 장점·단점
  - 장점: 관광객들의 주말체험 가능, 마을활성화, 땅값 상승, 주민들이 편안해짐
  - 단점: 지침서(메뉴얼)은 잘 만들었으나 결국엔 유지 및 관리가 안됨
  - 적극적인 리더가 필요함, 5-6년간 교육을 받다가 결국에는 안됨
  - 마을 이장직도 4년이상 하지 못함, 이장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 교육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 마을 간의 합의도 문제임
- 운영 및 관리
  - 사업의 내용들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함, 주민들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줌
  - 부담을 통해 법인을 허가해주어 소득사업을 진행함, 법인들이 각

기 사업들을 진행하며 관리함

- 공공시설은 도에서 관리함

- 현재 4개 마을 운영협의회를 통해 최종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인 (농어촌마을기업)쪽으로 유도함

- 2009년에 끝난 농촌종합개발사업들이 나오면서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됨

- 리드 2-3명 만으로도 운영이 잘되며 마을기업대표 선정이 필요함

○ 경관관련계획

- 김녕애권역은 경관형성계획(1억)을 수립하였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음

- 공공건물의 건축심의회가 유도가 아닌 제재라고 생각함, 획일적 경관을 형성함

○ 보완될 부분

- 운영 및 관리 측면의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함

- 추후에 농어촌공사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함

- 평가를 통해 추후 2-3년간의 관리가 필요함

- 포괄보조금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함

□ 현장조사 결과

○ 마을 주요시설

- 옷뜨르 빛 센터, 클럽하우스, 승마체험장, 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등

- 체험관광을 통한 주민 소득기반확충

- 관광객을 상대로 체험마을을 운영함

- 본업이 있는 마을주민들이 직접 승마체험장을 관리·운영함

- 현재는 적자이지만 곧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됨



## □ 자문회의 결과

### ○ 관련법 및 계획

- 근거법은 삶의질법에 의해 예비계획서(1년차)가 수립함
- 사업시행절차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시행(5년간)이 진행되며 개별사업들이 진행됨
- 경관관련 법에 의해서 개별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 거의 경관법에 의한 것은 없음
- 국제법, 제주시계획, 중장기 계획을 다 검토하여 사업이 계획되었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음

### ○ 사업의 장점·단점

- 장점: 관광객들의 주말체험 가능, 마을활성화, 땅값 상승, 주민들이 편안해짐
- 단점: 지침서(메뉴얼)은 잘 만들었으나 결국엔 유지 및 관리가 안됨
- 적극적인 리더가 필요함, 5-6년간 교육을 받다가 결국에는 안됨
- 마을 이장직도 4년이상 하지 못함, 이장이 바뀌면서 다시 새로 교육해야하는 문제가 있음.

- 마을 간의 합의도 문제임
- 운영 및 관리
  - 사업의 내용들은 주민들이 제안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함, 주민들은 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줌
  - 주민부담을 통해 법인을 허가해주어 소득사업을 진행함, 법인들이 각기 사업들을 진행하며 관리함
  - 공공시설은 도에서 관리함
  - 현재 4개 마을 운영협의회를 통해 최종관리를 하고 있으며 법인(농어촌마을기업)쪽으로 유도함
  - 2009년에 끝난 농촌종합개발사업들이 나오면서 운영관리에 대한 문제들이 대두됨
  - 리드 2-3명 만으로도 운영이 잘되며 마을기업대표 선정이 필요함
- 경관관련계획
  - 김녕애권역은 경관형성계획(1억)을 수립함, 하지만 지자체에서 관심이 없음
  - 공공건물의 건축심의가 유도가 아닌 제재라고 생각함, 획일적 경관을 형성함
- 보완될 부분
  - 운영 및 관리 측면의 내용이 보완이 되어야 함
  - 추후에 농어촌공사도 지속적으로 교육해야함
  - 평가를 통해 추후 2-3년간의 관리가 필요함
  - 포괄보조금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예산지원이 미흡함
- 직불제
  - 경관보전직불제는 우도, 가포도에서 서귀포시 시범사업으로 진행

-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활성화되었음, 지형의 특성상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을 지원해줌
- 농촌관광체험마을(or 녹색농촌체험마을)
  - 가시리권역에서 진행됨
  - 행안부에서 우선적으로 배정해줌, 매년 평가를 함
- 마을주민협정
  - 경관이나 마을 환경정비에 관한 협정은 따로 없음
  -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주민보다는 지자체에서 관리
  - 향약이 아직 남아있음, 향약을 기본으로 계획도 수립함
  - 주민들은 경관에 크게 관심이 없음
  - 원래 제주도 전통담장은 홀담임(마을마다 향약으로 규정), 개발로 인한 담장들은 일본식 돌담임

### ③ 판포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사업개요

- 위치 : 제주시 한경면 판포권역 (판포·금등·두모·신창리 일원)
- 사업기간 : 2006~2010 (5년간)
- 사업의 목적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도모

#### □ 현장조사 결과

- 서부하수처리장, 해거름공원, 해거름전망대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한국농어촌공사, 상

하수도본부가 함께 사업비 7억2500만원을 투자해 2009년 3월에 완공됨

- 면적: 16,000m<sup>2</sup>
- 해안에 위치한 서부하수장 주위에 농구장, 축구장, 배구장, 족구장, 조깅트랙 등의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 잔디광장, 파고라, 자전거보관대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 그리고 지상2층의 해거름 전망대(무인카페 포함)을 제공함
- 지역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근처를 지나는 자전거 및 도보여행객들의 휴식공간 역할을 함
- 해거름전망대는 해안방향으로의 조망이 우수함



○ 마을 주요시설

- 마을회관, 노인회관, 게이트볼장, 해녀작업장, 멋물쌈지공원 등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의해 조성됨



○ 마을 거주지역

- 밭담, 올레길, 올레담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제주 특유의 경관이 잘 느껴짐
- 대부분 낮은 주택으로 인해 시각적인 개방감이 높음
- 가로와 주거시설, 농업시설 등이 비교적 잘 정돈되어 있음



### 3) 서산시 어촌종합개발사업

#### ① 지곡권역 어촌종합개발사업

##### □ 사업개요 및 특성

- 위 치: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연안지역
- 사업목적
  - 서산시 지곡면에 위치하고 있는 도성어촌계, 중왕어촌계 그리고 왕산어촌계의 3개 어촌마을에 대하여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함
  - 도성어촌계는 휴식과 감상을, 중왕어촌계는 생태와 교육을 그리고 왕산어촌계는 문화와 레저를 그 주제로 함
- 사업대상지
  - 서산시 지곡면 연안 지역(도성어촌계, 중왕어촌계, 왕산어촌계)
  - 어촌계를 중심으로 한 어촌마을 (협의필요)
  - 공공소유인 공유수면을 중심으로 진행
  - 해안선 연장: 9km
- 주요사업내용
  - 도성어촌계 : 바다산책길, 해안산책로 조성
  - 중왕어촌계 : 바닷길 체험장, 갯벌 체험장, 수산물가공센터, 체험장 샤워시설, 해안산책로 조성
  - 왕산어촌계 : 커뮤니티광장, 갯벌 체험장, 캠핑장, 주차지원시설, 해안산책로 조성
- 경관 및 디자인
  - 기본계획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경관 및 디자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음

- 시에서 수립한 디자인계획이 있으나 사업 대상지의 디자인 계획은 별개로 진행할 예정임
- 일부 가로시설물 정도만 시의 디자인 계획을 따를 예정임

○ 사업 진행상의 문제점

- 지역 어촌계 간의 이해관계 대립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도 마찬가지이며, 모든 지역개발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임 → 주민협회가 중요
- 주민들은 주민편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단기간 사업에만 관심이 있음
- 도로확장, 시설보수 등, 목표에 맞는 장기적인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음
- 유지·관리의 문제
- 조성 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지만 쉽지 않음
-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임 → 뚜렷한 해결책 현재 없음
- 시설이 조성되면 주민들 중심의 자체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임

□ 현황조사 결과

○ 서산시 운산면 가좌리

- 일반적인 전통농촌마을의 경관을 형성함
- 주변 자연경관과 건축물(높이, 규모, 색채측면)이 조화를 이룸
- 축사 및 비닐하우스의 정돈이 필요함
- 전경



- 주거시설



- 축사 및 비닐하우스



- 공장



○ 음암면 탑곡리 마을

- 일반적인 전통농촌마을 경관을 형성함
- 주변 자연경관과 건축물(높이, 규모, 색채측면)이 조화를 이룸

- 주택 및 건축물이 분산되어 있으며 개수가 적은 편임
- 전경



- 주거시설



- 비닐하우스 및 공공시설



○ 서산시 공공건축물

- 서산 시내에 주요한 시설물이 밀집되어 있지만 주요도로변에 병원 및 요양원 등이 들어옴
- 주변 경작지와 대조적인 큰 규모의 시설들이 들어옴

- 마을 보건 복지 주요시설



○ 어촌개발사업 예정지

- 현황



- 시설물



○ 서산시 농어촌경관 문제점

- 마을 내부에 노후화된 건물과 폐허가 있으며 정비가 되어 있지 않음

- 비닐하우스 및 축사 등 생산관련 시설들이 정비가 되지 않거나 방치되어 있음
- 공공시설(농수로, 뚝 등)이 주변 환경과 조화롭지 않으며 시설 주변 정돈이 되어 있지 않음
- 도로변 식당, 숙박시설(모텔), 나홀로 아파트 등이 들어서 있음



## 부록 3. 농어촌 경관 관련 행정조직

### □ 중앙부처

기관명	관련부서	업무내용	주요사업
농림수산물부	농어촌정책국 농어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활력창출</li> <li>• 농어촌 정책방향 수립</li> <li>• 농지은행에 관한 사항</li> <li>•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li> <li>•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li> <li>• 한국농어촌공사 감독지도</li> <li>• 농어촌정책과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운용</li> <li>• 농어촌정비법 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활기찬 농어촌만들기 운동</li> <li>• 우리 농어촌운동</li> </ul>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 개발 지원</li> <li>• 농어촌 뉴타운 조성</li> <li>• 기초생활 인프라 구축</li> <li>• 지역개발 기획 역량강화</li> <li>• 농어촌 경관개선 종합대책</li> <li>•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 제고에 관한 사항</li> <li>• 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 개발 및 보급</li> <li>• 농어촌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li> <li>• 경관보전직불제도</li> <li>• 농산어촌유산제도</li> <li>• 농어촌 어머니티</li> <li>• 다원적가치 증진사업</li> <li>• 농어촌 빈집정비사업</li> <li>• 농어촌 주택개량사업</li> <li>• 농어촌마을 리모델링 사업</li> <li>• 보전관리사업</li> <li>• 주거환경개선사업</li> </ul>

	<p>농어촌 정책국 농어촌 산업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외소득법령 제개정</li> <li>• 농어촌산업박람회</li> <li>• 농공단지 조성 운영활성화, 농촌활성화 지원</li> <li>•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협의에 관한 사항</li> <li>• 농어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li> <li>• 도농교류협력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녹색농촌체험마을</li> <li>• 향토산업육성사업</li> <li>• 농어촌티마공원조성사업</li> </ul>
<p>행정 안전 부</p>	<p>지역발 전정책 국 지역경 제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자치단체의 경제활성화 및 지방물가관리 정책의 지원</li> <li>• 지역경제의 분석 및 지역경제동향·통계와 관련된 사항</li> <li>•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창출 및 실업해소대책의 지원</li> <li>• 지방자치단체 지역특화산업 등의 육성·지원</li> <li>•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의 발굴·정비 추진</li> <li>•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및 외국인 투자촉진정책 등 지원</li> <li>•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li> <li>• 새마을금고 제도의 운영·개선 및 관련 규정 인가</li> <li>• 지역일자리사업의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마을기업의 육성 추진</li> <li>• 지역풀뿌리형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희망마을 만들기 조성사업</li> <li>•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li> </ul>
	<p>지역발 전정책 국 지역 발전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역개발계획의 기획 지원</li> <li>• 저발전 지역 등 지원 및 정책 개발·연구</li> <li>•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수립 및 연차별 계획 수립</li> <li>• 도서특성화개발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련 법령의 개정, • 도서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li> <li>• 도서진단 및 도서사업 관계 부처 합동평가단 구성·운영</li> <li>• 테마별 우수도서 콘테스트 등 도서홍보 및 마케팅</li> <li>• 남북공동 협력지구 지정 및 협력사업 추진</li> <li>• 평화벨트 구축 및 평화시범도시 도입방안 마련·시행</li> <li>• 읍면소재지 주차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시행</li> <li>•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등 개정</li> <li>• 행정안전부 소관 지방도로 수해복구·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 자전거이용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균형발전사업</li> <li>• 접경지역지원사업</li> <li>• 지방소도읍 육성사업</li> <li>• 평택 지역개발사업</li> <li>• 수변공간 자전거도로 연결사업</li> </ul>

	지역 발전 정책 국 지역 녹색성장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행정안전부 소관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및 관리</li> <li>• 녹색성장위원회의 업무 및 관련 회의 지원</li> <li>•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의 총괄지원</li> <li>• 명품 녹색길의 선정·인증 및 관련 종합 정보망의 구축</li> <li>•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의 발굴·지원 및 지역 기획역량 강화의 지원</li> <li>• 지역자원 경연대회 개최 및 우수자원의 관리·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li> <li>•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li> </ul>
국 토 해 양 부	건축물 화경관 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분양제도 개선 및 운영</li> <li>• 한옥건축 활성화</li> <li>• 건축기본법, 경관법, 건축정책기본계획 등</li> <li>• 야간경관, 수변경관, DMZ경관 가이드라인 연구용역</li> <li>• 건축문화진흥 및 행사지원</li> <li>• 경관법, 건축정책기본계획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li> <li>• 국가상징거리 조성사업</li> </ul>
	해양 환경 정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환경정책업무 총괄</li> <li>• 해양환경관리법령 총괄 운영</li> </ul>	
	도시 정 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토계획법령 및 타 법령 협의 총괄</li> <li>•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li> <li>• 국토계획법령(용도지역·지구·구역)</li> <li>• 토지이용규제 기본법</li> </ul>	
환 경 부	녹 색 협 력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li> <li>•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li> <li>• 각급 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li> <li>• 환경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li> <li>• 환경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li> <li>•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li> <li>•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li> <li>• 기업의 환경경영 및 환경정보공개 촉진에 관한 사항</li> </ul>	
	자 연 정 책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li> <li>• 전국 생태축의 구축에 관한 사항</li> <li>•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li> <li>•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li> <li>•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특정도서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및 습지보호지역 등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자연경관심의제도의 기획·총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li> <li>• 자생식물 보급 사업</li> </ul>



문화체육관광부	녹색관광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종합개발계획 수립</li> <li>•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li> <li>•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4대강 유역 관광자원 개발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4대강 유역 관광자원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li> <li>• 부내 4대강 유역 사업 총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녹색관광 개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유휴자원 관광상품화 개발</li> <li>• 생태관광 육성지원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 탐방로 사업</li> </ul>
농촌진흥청	국립농원농업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강 유역 농촌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수변공간 조성기술 개발</li> <li>• 농촌마을 어메니티 계획기술 개발 및 현장 적용 연구</li> <li>• 농촌경관 보전 및 활용기술 개발 연구</li> <li>• 4대강 유역 농업복합단지 계획 운영모델 개발</li> <li>• 농촌지역 탄소저감을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기술 개발</li> <li>• 전통지식자원을 활용한 지역디자인 활성화 방안 연구</li> <li>• 전통지식자원의 지식재산권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li> <li>• 향토자원의 생태문화가치 발굴과 활용 콘텐츠 개발</li> <li>• 농촌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환경자원 보전 및 활용 연구</li> <li>• 농촌체류 관광객 증대를 위한 농촌관광사업 경영전략 개발</li> <li>• 농촌경관계획 및 경관맵 현장적용 연구</li> <li>• 농촌어메니티 특성화 구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마을 현장기반 조성 연구</li> </ul>	

□ 광역자치단체<sup>28)</sup>

지역명	관련부서	업무내용 (공통)	주요사업 (공통)
경기도	농정국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 농어촌 정책개발 및 관련계획수립에 관한 사항</li> <li>•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li> <li>• 경관보전직불제</li> <li>• 농촌체험관광사업</li> </ul>
강원도	농정산림국농어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농업인 육성</li> <li>•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li> <li>• 경관보전직불제 추진</li> <li>• 농촌 활력증진 계획에 관한 사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원마을 조성사업</li> <li>• 농어촌 테마공원조성</li> <li>• 농어촌 뉴타운</li> <li>• 녹색농촌 체험마을</li> </ul>

28) 광역시는 도시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따로 농촌경관을 다루는 부서가 없음

충청북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후계농업인 육성 및 관리</li> <li>• 도-농교류 사업에 관한 사랑</li> <li>• 관광농업사업 활성화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경관 개선사업</li> <li>• 향토산업 육성사업</li> <li>• 농업인 정보화 사업</li> <li>• 기간정비 사업</li> <li>• 배수개선 사업</li> <li>• 수리시설 관리사업</li> <li>• 거점면소재지 중심 마을 종합개발사업</li> <li>• 지방소도읍 육성사업</li> <li>•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li> </ul>
충청남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촌체험관광개발 관련 기반 조성</li> <li>• 농촌생활환경개선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li> <li>• 농촌경관개선사업 추진</li> <li>•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li> <li>•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추진</li> <li>• 농업농촌 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li> </ul>	
전라북도	농수산국 미래농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li> <li>•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 추진</li> <li>•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도 운영</li> <li>•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 운영</li> <li>• 농지보전 및 이용계획 수립</li> </ul>	
전라남도	행정지국 행복마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농촌 관련 시책의 총괄 및 조정</li> <li>• 향토산업육성사업 추진</li> <li>• 농업인 정보화 사업</li> <li>• 귀농-귀촌 정착지원</li> </ul>	
경상북도	농수산국 농업정책과 농촌개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인 건강보험, 안전공제료, 연금보험료 지원</li> <li>•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수립</li> <li>• 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li> <li>• 농지이용계획수립 승인</li> <li>•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li> <li>•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관리</li> <li>•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li> <li>• 밭 기반정비 사업</li> <li>• 농어생산 기반시설의 풍수해 대책 및 복구</li> <li>• 배수개선 사업</li> <li>• 방조제 개보수사업</li> <li>• 농어촌 신문화공간 조성사업</li> <li>•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li> </ul>	
경상남도	농수산국 해양농업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유지관리</li> <li>•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li> <li>•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li> <li>• 농축산업 관련 제반 통계 및 자료관리</li> <li>•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li> <li>• 농업전문인력육성 추진</li> <li>• 농지원부 관리 지원</li> <li>•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li> <li>•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li> <li>• 소규모지역개발 사업</li> </ul>	

□ 기초자치단체<sup>29)</sup>

기관명	관련 부서	업무내용 (공통)	주요사업 (공통)
경기도 양평군	건설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지정리사업</li> <li>문화마을 조성사업</li> <li>정주권개발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지정리사업</li> <li>문화마을 조성사업</li> <li>정주권개발사업</li> <li>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li> <li>소도읍 육성사업</li> <li>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li> <li>면소재지종합 정비사업</li> <li>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li> <li>개간허가 및 한계농지 정비사업</li> <li>전원마을 조성사업</li> <li>영농기반확충사업</li> <li>한계농지조성사업</li> <li>문화마을 조성사업</li> </ul>
경기도 이천시	농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li> <li>농촌발전계획수립 및 진행</li> <li>지역특화산업 및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li> </ul>	
강원도 양양군	경제도 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 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 추진</li> <li>휴양자원개발 사업 육성</li> <li>농업발전기금 관리</li> </ul>	
충청북도 영동군	건설교통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지이용계획 수립</li> <li>한계농지 개발사업 전반지정.관리</li> <li>경지정리 사업추진</li> </ul>	
충청남도 청양군	건설도시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개수리시설 개보수</li> <li>밭 기반정비 업무 추진</li> <li>기계화 경작로 및 농로 확.포장업무 추진</li> </ul>	
전라북도 임실군	건설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도읍 육성사업</li> <li>명품마을 만들기 및 살기좋은 지역만들기</li> <li>디자인 관련사업 발굴 및 계획수립</li> </ul>	
전라남도 강진군	건설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수립</li> <li>농업생산기반조성 중장기 종합계획수립</li> <li>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li> </ul>	
경상북도 고령군	건설방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li> <li>개간허가 및 한계농지정비사업</li> <li>전원마을 조성사업</li> </ul>	
경상남도 남해군	생태도시디자인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기반시설 관리</li> <li>전원마을 조성사업</li> <li>일반 경지정리사업 추진</li> <li>대구회경지정리사업 추진</li> <li>기반정비사업 추진 및 관리</li> <li>개간대상지 선정 및 시행허가, 사후관리지도</li> <li>문화마을 조성사업 추진 및 관리</li> <li>산업단지 유치 및 조성, 시설관리</li> <li>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업무 전반</li> <li>마을안길 및 마을진입로 관리</li> <li>영농기반확충사업</li> <li>한계농지조성사업</li> <li>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개발</li> <li>경관조례 관련 운영</li> </ul>	

29) 각 광역지자체별로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를 선정하였음, 기준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우수단체임

□ 공기업

기관명	관련부서	업무내용	주요사업
농어촌공사	농어촌개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산어촌지역개발에 관한 업무</li> <li>• 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 총괄 및 지도</li> <li>• 경관테마클러스터사업의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li> <li>• 농공단지조성에 관한 업무</li> <li>• 지역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평가</li> <li>• 전원마을 농어촌뉴타운 계획수립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 뉴타운 조성</li> <li>• 농어촌마을종합개발사업</li> <li>• 어촌개발사업</li> <li>• 전원마을 조성사업</li> <li>• 도농교류사업</li> </ul>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사업본부 산업경제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공간계획 및 개발 계획 수립·시행</li> <li>•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및 조정가능지 정비 계획 수립·시행</li> <li>• 수탁사업 시행(산업단지, 유통, 보상수탁, 지역숙원사업 등)</li> <li>• 계획수립비용 공동부담 및 공동사업 발굴추진</li> <li>• 지역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참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개발사업</li> </ul>
경기도시공사	사업 1, 2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사업 후보지조사 및 타당성 검토</li> <li>• 신규 산업단지 발굴, 후보지 조사</li> <li>• 공공관리 대상지 선정 및 시행방안 검토</li> <li>• 주택건설관련 기획</li> <li>• 주택건설공사 공사관리</li> <li>• 계획 수립 및 인허가</li> <li>• 시설물 존치 및 민원관련 업무</li> <li>•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고명품신도시 사업</li> <li>• 고양판광문화단지 사업</li> <li>• 고양시 능곡 뉴타운</li> <li>• 광명시 광명 뉴타운</li> </ul>
김포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 업무</li> <li>•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감독 업무</li> <li>• 준공관련 업무</li> <li>• 인·허가, 공사발주, 감리 및 설계변경</li> <li>•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li> <li>• 부대시설 설치 및 부대공사 업무</li> <li>• 각종 영향평가 및 에너지 사용계획</li> <li>•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li> <li>•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업무</li> <li>• 지적공부 정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포배수지 및 송수관로 건설공사</li> <li>• 김포 한강신도시 용수공급 상수도시설 공사</li> <li>• 김포시 생태탐방로 조성사업</li> <li>• 김포시 추모공원 진입로 개설공사</li> </ul>